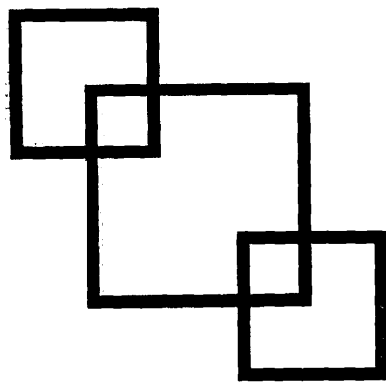


中國海峽兩岸研究會編

中國·臺灣間 交流關係資料集

— 法律與政策解說 —



統一院

- 본 자료는 지난 '91년 3월, 중국의 海峽兩岸法律研究會가 대만과의 교류에 대한 중국측의 법률 및 정책을 해설하기 위해 발간한 「海峽兩岸民間交流政策與法律」을 번역한 것입니다.
- 「海峽兩岸民間交流政策與法律」은 상편 106개, 하편 25개 등 총 131개의 법률 및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자료는 그 중 상편 106개의 법률 및 정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 통일원에서는 이미 지난 '92, '93년 대만측의 대중국 교류관계 법규를 모아 「臺灣-中國間 交流關係法規集」 제1권 및 제2권을 발간한 바 있으며, 본 자료를 추가로 번역·발간하게 됨으로써 중국·대만간의 교류관계 법률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 아무쪼록 본 자료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번역 및 편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많은 오류에 대해서도 이용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교 류 협 력 국

머 리 말

대만은 자고이래로 신성한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다. 대만해협양변의 근면하고 용감한 중국인들은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토지를 건설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대만을 침략한 네덜란드, 일본 등 국외침략자들과 용맹스런 불굴의 투쟁을 진행하였다. 1949년 국민당이 대만으로 철수함으로써 중국인들은 대만과 중국대륙으로 격리되게 되어 양변의 중국인들은 혈육이산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때문에 양변의 중국인들에게는 조국의 통일·민족의 단결을 갈망하는 심정이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화회담을 통한 조국의 통일은 중국공산당의 다년간에 걸친 일관된 주장이다. 일찌기 50년대에 모택동·주은래 등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화해는 고귀한 것」이며 「애국은 다 같은 것이다」하는 관점에서 대만당국이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북경에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기타 적당한 지점”을 선택하여 중국과 평화적으로 대만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기본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쌍방간의 군사대치와 단절국면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동시에 국방부도 금문도 등 도서에 대한 포격을 중지한

다고 선포하였다. 1981년 중국정권수립일 전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엽검영은 평화통일 9개방침을 제기하여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평등한 협상을 건의하였으며, 쌍방이 서신교환·상업무역거래·교통왕래 등을 실현하고 중국통일 후에는 대만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현행체제의 유지, 경제제도의 불변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등소평 등 중국지도부 역시 “일국양제”의 구상과 기타 일련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 국가내에서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제도를 실행하면서, 상호존중·공동번영을 꾀하는 쌍방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평화통일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구상은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기된 것으로 홍콩·마카오문제에 있어 이미 성공적인 선례를 남겼으며 국내외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1987년 10월이래 대만당국은 중국본토에 대한 친지방문을 허락하는 등 일련의 쌍방관계개선에 유익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후 대만에서는 본토방문·투자의 열기 및 학술·문화 체육교류 등이 전대미문일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경제관계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쌍방간의 무역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대만상인의 중국본토에 대한 투자와 공장설립 등이 진행되어 1990년 9월까지 본토를 방문한 대만인이 1600여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동시에 본토의 중국인 역시 문명·장래참석·견학방문을 위해 대만을 방문하는 숫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쌍방간의 대치와 격리상태가 해빙기에 접

어 들었으며 쌍방교류의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로 쌍방을 고무시키고 위안을 주는 중대한 변화이다. 현재 중국정부와 대만당국은 각기 상대측에 호응하는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며 주요한 법률을 입안하여 쌍방교류의 진일보한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부학자들도 각종 잡지·신문 등에 여하히 쌍방교류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충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장 등을 발표하여 쌍방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쌍방 각계인사들의 민간교류와 관련된 정책과 법률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해협양안민간교류의 정책과 법률》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책이 쌍방동포들의 교류에 있어 자그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본서의 편집은 9월까지의 자료들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제한·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많은 결점이 있을 것이다. 여러독자들의 적절한 질정을 바라며, 이는 쌍방교류와 조국통일사업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희망컨대 쌍방의 동포들은 서로 제휴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하루속히 조국통일의 대업과 중화민족의 진흥을 달성하길 바란다.

해협양안법률연구회

1990년 10월 1일

상해에서

目 次

I. 出入國	9
1. 중국정부는 대만동포의 본토친지방문과 여행을 열렬히 환영한다.	11
2. 대만동포의 본토정착에 관한 정책	14
3. 대만동포의 입국수속문제	17
4. 대만동포의 여행증명 처리수속과 주의사항	19
5. 대만청년의 본토 전문학교·대학교입학시험신청방법 ...	21
6. 대만청년의 본토진학·전학·청강에 관한 규정	23
7. 대만기자의 본토취재수속과 주의사항	24
8. 대만종교인사의 본토친지방문과 여행문제	26
9. 대만동포의 본토친지방문여행시의 호구신고	27
10. 대만동포의 본토친지방문여행을 위한 전문서비스기관	28
II. 稅 關	31
1. 중국의 세관 및 그 권력	33
2. 대만동포의 본토세관수속처리규정	35
3. 대만동포의 휴대수하물 출발입시 면세특혜에 관한 조치 ...	36
4. 입국하는 대만동포의 수하물물품과 개인체신물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방법	39

5. 대만동포가 준수해야 할 세관의 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에 대한 규정	41
6. 대만우편물의 전송반출입에 관한 규정	43
7. 개인휴대및 우송우편물의 반출입관리에 관한 규정	46
8. 국외구매서로 국내에서 물건을 수취하는 구체적 방법	48
9. 화교·홍콩·마카오·대만동포가 증여하는 물품의 수입 관리강화에 관한 규정	49
10. 대만동포가 받아야 하는 입출국시의 위생검역	51
Ⅲ. 外換管理	55
1. 중국외환관리의 원칙과 기구	57
2. 대만동포의 외화휴대입국에 관한 중국본토의 규정	59
3. 대만동포의 본토친지에의 송금에 관한 방법	60
4. 대만동포의 외환태환과 예금수속처리 규정	61
5. 중국은행에서 외환결제를 하는 경우의 우대조치	63
6. 외환태환권사용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규정	64
7. 인민폐의 환율과 그 종류	66
8. 인민폐여행자수표 및 그 판매·태환과 분실신고에 관한 방법	67
9. 인민폐 및 그 어음과 증권의 반출입에 관한 규정	69
10. 금은의 반출입에 관한 관리방법	70

IV. 婚姻과 家庭	73
1. 중국혼인법의 기본원칙	75
2. 결혼조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	80
3. 이혼조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	83
4. 대만으로 간 인원과 그 본토잔류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에 관한 처리	89
5. 대만과 관련된 혼인의 부부공동재산 문제	92
6. 대만으로 간 인원과 그 본토잔류자녀간의 양육·부양과 입양문제	94
7. 대만동포와 본토 동포간의 혼인신고처리에 관한 관련규정	97
V. 遺產相續	103
1. 중국상속법의 주요특징	105
2.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	108
3. 유언상속에 관한 규정	113
4. 유산범위에 관한 규정	120
5. 유산처리중의 몇 가지 문제	122
6.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의 본토내에서의 상속권 문제	125

VI. 家屋과 債務	129
1. 중국이 법률로 보호하는 사유가옥에 대한 관련규정 ...	131
2.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소유가옥의 재산권 침해분규에 관한 처리	132
3.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가옥의 대리관리에 관한 문제	134
4.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가 저당가옥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규에 관한 처리	136
5.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의 본토가옥매매에 관한 법률문제	139
6. 대만으로 이주한 인원이 대만으로 이주하기 전에 발생한 개인간의 채무청산문제	141
7. 이율발생으로 인한 대차분규에 대한 처리	143
VII. 知的 所有權	145
1. 중국이 법률로 판권을 보호하는 관련규정	147
2. 대만동포작품의 판권보호에 관한 문제	149
3. 대만에서 출판하는 본토작가작품에 관한 문제	151
4. 중국특허법의 특허신청에 관한 규정	152
5. 특허권자의 권리와 의무	154
6. 대만동포가 본토에 와서 특허를 신청하는 일에 관한 업무	156

7. 중국상표법의 상표독점권에 관한 규정	158
8. 상표독점권에 관한 법률보호	160
VIII. 通信 및 交通	163
1. 중국의 우정법과 우정기업	165
2.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유상체신서비스이용에 관한 문제	167
3. 법률의 보호를 받는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통신 자유와 통신비밀	171
4. 대만동포의 우편물발송에 관한 몇가지 법률문제	173
5. 대만동포 본토방문시의 교통지휘신호 및 교통표지의 식별	177
6. 본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만동포가 준수해야 할 관련규정	180
7. 중국정부가 본토방문 대만동포를 위해 제공하는 교통 편의시설	186
IX. 投 資	187
1. 국무원의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189
2.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대만동포를 위한 우대조치	195
3. 汕頭의 대만동포 투자장려 우대조치	196
4. 廈門의 대만기업 투자장려 특별규정	198

5. 해남도 대만투자구의 설립	200
6. 상해의 대만기업 포동신지구(浦東新地區)투자장려 관련규정	202
7. 대만기업투자에 대한 위험담보제도의 수립	212
 X. 保險과 稅收	215
1. 중국의 보험관리기구 및 업무기구	217
2. 현 중국의 주요보험종류	220
3. 대만동포를 위해 보험기관이 제공하는 보험항목	226
4. 대만동포의 보험가입 수속방법	227
5. 중국의 세금종류 및 위약에 대한 처리	228
6. 공상통일세 감면특혜에 관한 규정	232
7. 기업소득세에 관한 특혜규정	236
8.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개인소득세 납부방법	237
 XI. 文物遺蹟과 風景名勝地	239
1. 문물유적보호에 관한 중국의 관련규정	241
2. 중국의 문물유적범위와 문물보호단위	243
3. 문물반출과 개인의 문물휴대출국에 관한 문제	247
4. 문물유적보호에 대한 표창과 문물유적파괴에 대한 처벌	249
5. 중국의 주요 풍경명승지 및 그 관리	251

6. 풍경명승지보호에 대한 표창과 풍경명승지파괴에 대한 처벌	255
XII. 治安管理	257
1. 중국의 치안관리처벌조례와 치안처벌	259
2. 치안관리처벌조례가 본토의 대만동포에 대해 지니는 구속력	261
3. 치안관리처벌의 종류 및 그 운용	262
4. 치안관리 위반행위 및 그 처벌	265
5. 치안관리처벌의 절차	274
XIII. 刑法	279
1. 중국형법의 기본원칙	281
2. 형법의 효력범위	284
3. 형법의 공소시효	288
4. 대만으로 간 인원의 범죄행위 재소급에 관한 문제 ...	290
5. 본토에서의 대만동포범죄에 대한 법률적용문제	292
6. 본토에서의 대만경찰수배범처리문제	304
XIV. 訴訟節次	305
1. 중국의 법원조직체계	307
2. 중국의 소송종류	310

3. 대만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관할	313
4. 대만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시효	315
5. 본토민사소송에 참여하는 대만동포의 소송권리와 의무	316
6.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민사소송제기시 증거제시 책임문제	320
7. 대만동포가 본토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민사소송을 대리 하는 방법	324
8. 본토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대만동포의 소송권리와 의무	326
부 록	329
· 국무원의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331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의 중국에 오는 대만 동포의 친지방문여행 응대방법에 관한 통지	337

I. 出 入 國

중국정부는 대만동포의 본토친지방문과 여행을 열렬히 환영한다.

대만동포가 가리키는 범위는 아래의 각 방면의 인사를 포함한다.

1. 대만섬내에 거주하는 중국의 각종동포(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인원 포함)
2. 각 시기에 대만에서 본토로 이주하여 일하고 생활하는 자
3. 대만에서 해외로 이주하여 수년간 거주하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온 자
4. 본토에서 태어났고 대만을 가본 적이 없으나 본적이 대만에 있는 자
5. 이미 대만을 떠나서 국외에 거주하거나 홍콩에 있는 대만동포
6. 대만에서 국외로 이주하여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외국국적 화교)

본서에서 지칭하는 대만동포는 주로 1,5,6항의 인사를 가리킨다.

본토를 방문하는 대만동포에 대해 중국정부와 국민은 줄곧 열렬한 환영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찌기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발표한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에서 “장기간의 단절로 인해 중국본토와 대만동포간에는 상

호이해가 부족하여 쌍방에 각종 불편함을 야기하였다. 멀리 해외에 퍼져있는 많은 화교들도 조국방문을 하고 이산가족을 만나고 있는데 지척에 있는 본토와 대만의 동포들은 왜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러한 단절이 지속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쌍방동포가 직접 접촉하고 상호간의 소식을 교환하며, 친지·친척방문·여행·참관 등을 통해 학술·문화·체육·공예 등 방면에서 서로를 보고 배우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1981년 9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엽검영은 담화를 발표하여 “대만의 각족국민·각계인사중 본토귀환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합당한 안배를 할 것을 보장하며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한다.” “대만의 상공업계 인사가 본토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각종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 합법적인 권익과 이윤을 보장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1987년 10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사무처는 《대만동포의 본토 친지방문·관광여행 접대방법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면서 진일보하여 중국 정부는 대만동포의 본토 친지방문과 관광여행을 열렬히 환영하며,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대만동포가 비행기표·기차표·선승권 및 숙박권 등을 본토에서 구입하는 경우 본토인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음을 보장하며, 대만동포도 본토인과 마찬가지로 본토의 각지를 자유롭게 참관·여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중국정부와 국민은 자유왕래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본토의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는 대만동포를 열렬히 환영하며, 대만동포의 본토인과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하고 보살핌으로써 중국본토의 온난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동시에 본토의 대만동포에 관련된 사무처리에 있어 대만동포의 비평과 건의를 환영한다.

대만동포의 본토정착에 관한 정책

중국정부는 대만동포의 본토 친지방문 여행·참관 및 경제·문화·체육방면의 교류를 열렬히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각종 객관적 조건의 제한으로 인하여 특히 본토정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대만동포의 본토정착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 단, 본토정착을 고집하는 대만동포에 대해서는 “엄격한 진의파악 및 타당한 처리”를 원칙으로 관련기관이 우선 각종의 제한조항들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설명한 후 신중한 고려를 부탁하고 있다.

대만동포의 본토정착은 특수한 원인으로 대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외에 아래에 열거한 3가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였을 경우 그 정착을 비준할 수 있다. (1) 대만에 사고무친으로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2)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 직계친속이 있으며 이 친속이 부양할 능력이 있고 또 부양을 보증할 경우 (3) 생활비용 및 주거문제 등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을 경우

아래에 예시한 사람은 입국할 수 없으며 더우기 정착은 불가능하다. 형사도주범·경제사범 및 반국가 사회단체의 성원과 폭력조직원, 심각한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및 기타 입국·정착하기에 적합치 않은 자.

조건에 부합하여 본토정착을 허가받은 대만동포는 공안기관이 그 소지한 출입국증과 대만의 신분증을 회수한다. 정착인은

정착허가증명을 정착지의 공안기관에 제출하고 상주 호구등록 수속을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 주민신분증 수취신청을 한다. 대만동포의 정착 후 중국정부는 특수한 배려를 하지 않으며 정착금·생활비·의료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직업안배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주며 또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한다. 대만동포가 정착 후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생활의 곤란을 받을 경우에는 사회곤란가구 구제원칙에 따라 보조한다. 1990년 말 이전에 이미 정착허가를 얻었거나 중국정부의 배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다시 변경하지 아니한다.

정착허가를 얻은 대만동포는 도시에서는 주택을 자가매입할 수 있으며, 농촌에서는 자가매입하거나 신축할 수 있다. 정착하는 대만동포는 일반적으로 상주하는 호구소재지의 매입주택·신축주택을 떠날 수 없으며, 집중신축·집중배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정착하는 대만동포는 반드시 의탁하고자하는 친속의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성진(城鎮: 시·읍에 해당)에 정착하는 경우, 그 양식과 기름은 성진주민 정량공급방법에 의거 공급하며, 농촌에 정착하는 경우는 의탁친속의 여유분 양식으로 자급하며 국가가 공급하지 아니한다. 양식이 결핍된 경우에는 평가량(評價糧: 공정가격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

정착인원은 법률에 의거 국민의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를 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법

를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4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회풍기를 문란케 하거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치안을 위해하는 등의 법률저촉범은 의법처리한다.

대만동포가 정착 후, 잠시 대만방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토인의 대만방문규정에 의거해 처리한다. 대만으로 돌아가서 6개월이 지나도 귀환하지 않는 자는 호구를 취소한다. 정착 후 출국 또는 홍콩·마카오방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토국민출국에 관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만동포는 본토정착 후, 사업상·생활상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재출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유왕래의 정책에 의거 출국을 흔쾌히 허락하며 억지로 만류하지 않는다.

대만동포의 입국수속문제

국무원사무처의 《대만동포의 본토친지방문여행 처리방법에 관한 통지》에 의거하여 대만동포는 본토친지방문여행에 있어 여행증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미국·일본 또는 기타국가에서 오는 경우는 중국의 현지주재 대사관·영사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을 발급하며, 홍콩·마카오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중국 외교부 주홍콩 비자발급처에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을 신청할 수 있고 홍콩의 중국여행사에 여행증의 대리처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이미 홍콩의 중국여행사에 《대만동포여행증명》발급을 위탁해 놓고 있다.

《대만동포여행증명》은 유효기간내에 입국해안변방검사소의 검사와 검사필도장을 받은 후에는 대만동포의 본토출입국 및 본토내륙 여행시의 신분증명이 되어 중국의 대외개방항구에서의 입출국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만동포는 이 여행증명을 적절히 보존해야 하며 유실해서는 안된다. 실수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중국여행사나 출입국관리기관에 유실신고를 하여 상황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한다.

대만동포의 본토방문 편리를 도모하고 그들의 숙원을 하루속히 실현시켜주기 위하여 정부관련기관의 책임자는 “소수의 대만동포가 외국에서 직접 중국의 연해개방항구로 들어오는 여

행증 미소지자 또는 대만·펑호·금문·마조 등에서 직접 승선하여 본토에 오는 경우에도 항구변방검사소에서 《대만동포여행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이미 명확히 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변통방법은 이미 1987년 11월 20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본토의 친지방문여행을 하는 대만동포에게 홍콩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복잡한 수속을 덜어주기 위하여 복건성은 1988년 4월부터 대만동포에게 본토 비행장(대만에서 홍콩을 거쳐 본토에 도착)에서 직접 입국증명을 발급하는 “현지사증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수차에 걸쳐 본토를 입출국한 대만동포는 국무원대만사무처리실과 공안부관련규정에 의거 사상검사를 할 수 있다.

대만동포의 여행증명처리수속과 주의사항

홍콩중국여행사에서 대만동포여행증명 (증명명칭이 《대만동포여행증명》)을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그 수속과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대만동포여행증명 신청시에는 반드시 대만여권과 대만지구 출입국증 및 홍콩인민 입국사무처에서 발급한 2부의 입국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만일 1부의 홍콩입국증밖에 없을 경우에는 홍콩중국여행사가 홍콩사증을 대리처리할 수 있다.

2. 신청표 1부를 작성하고 본인이 기명날인하며 2.5인치의 최근에 촬영한 정면탈모상반신 사진 2장을 내야 한다.

3. 대만동포여행증명은 유효기간내에 1차례의 사용만이 유효하며 출국시 본토의 개항지에서 회수한다.

4. 대만동포여행증명은 이중수령·사칭수령·수정 또는 위조해서는 아니되며 이 증명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5. 동반아동과 부모가 동일증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명의 수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6. 본토친지방문 여행기간중 이 증명을 유실했을 때에는 반드시 현지 중국여행사 또는 호구관리기관에 유실신고를 해야한다.

7. 홍콩중국여행사가 대만동포여행증명을 처리하는 기간은 일

반적으로 하루를 넘지 않으며 수수비는 홍콩화 30원이다.

1987년 11월 3일 홍콩중국여행사가 대만동포여행증명발급을 시작한 이래 모든 중국내륙의 개항지는 이미 대만동포입국증명발급업무를 정지하였다. (따로 규정된 것은 제외)

대만청년의 본토 전문학교·대학교입학시험 신청방법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1987년부터 북경대학·청화대학·복단대학·중산대학·중산의과대학·화남공학원·하문대학·기남대학·화교대학 등 9개의 중국유명 중점대학은 화교·홍콩·마카오·대만학생들을 연합모집하고 있다. 이 중 대만청년의 입학시험신청방법은 아래의 몇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1. 모든 고등학교졸업이상의 문화수준을 갖추고 25세 이하의 (최대 28세를 넘지 아니한다) 미혼 화교·홍콩·마카오·대만청년은 입학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지점은 광둥성 및 복건성 하문시의 고등원교(高等院校: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총칭) 학생모집사무실·홍콩고시국·마카오중화교육국·마카오 중국 여행사가 된다.

2. 한 학생은 4개 학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 학교마다 4개과의 전공지원을 할 수 있다. 각 전공과의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다.

문사분야(文史科): 중국어·수학·영어·역사·지리

이공분야: 중국어·수학·영어·물리·화학

의학분야: 중국어·수학·영어·물리·화학·생물

이과를 신청하는 학생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문과의 과목을 더 치를 필요가 없다. 이공분야와 의학분야도 동

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의학분야의 각 전공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시험시간중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문답안지를 선택해도 된다. 각 신청지점에는 시험 《복습대강》이 준비되어 있으며, 수험생은 자유롭게 이를 수취할 수 있다.

3. 본토 기타지구의 고등원교입학을 원하는 자도 상술한 9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각 신청지에서 대리신청의 수속이 가능하다. 이들 대리수속을 하는 기관은 수험생의 성적과 관련사항을 응시학교에 전송하여야 한다.

4. 화교와 홍콩·마카오·대만학생은 입학후 학비를 받지 아니한다. 기숙비는 각 학교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수기간이 완료되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본과의 학생이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규정에 부합되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생은 졸업 후 원거주지로 돌아가 취업하며, 본토잔류를 희망하는 자는 중국정부의 주관기관이 직업안배를 책임진다.

이밖에 복건성은 1989년 상반기에 한의학전공 독학시험을 새로 개설하여 대만 한의학인사의 응시신청을 받고 있다. 응시요령과 방법은 본토응시생과 기본적으로 같으며 합격자에게는 증서를 발급한다.

대만청년의 본토진학·전학·청강에 관한 규정

본토의 보통고등학교가 요구하는 화교와 홍콩·마카오·대만청년동포의 진학·전학·청강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규정한 전문규정이 있으며 그 요점은 아래와 같다.

1. 진학·전학·청강을 신청하는 화교와 홍콩·마카오·대만청년동포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35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신청학년에 맞는 학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각 고등학교는 진학신청자에 대해 반드시 본교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전학을 신청하는 자는 중국어시험외에 전학학년보다 한 학년 낮은 학년의 기초과정과 전공과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1학년은 전학생을 받지 아니한다.

4. 청강을 신청하는 자는 학교가 그 학습수준을 고찰하여 청강능력유무를 확정한다.

대만기자의 본토취재수속과 주의사항

대만기자의 본토에서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취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무원 대만사무처 대변인은 1989년 9월 15일 신화사기자에게 발표한 담화를 통해 대만기자의 본토취재와 관련하여 필요한 수속과 주의사항을 발표하였다.

대만기자가 본토취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화사 홍콩지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재외대사관·영사관에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소속 신문기관의 정식파견서·기자이력과 취재 부문과 대상 취재지역과 체류시간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취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비준을 거쳐 입국증을 발급받는다. 대만기자는 입국취재를 허가받은 후 중국기자협회에 “취재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취재증”을 가지고 취재한다. 취재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현재는 대만신문기관의 본토 주재기자파견 또는 주재사무소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대만신문기관은 본토인원 또는 본토의 외국인·화교·홍콩·마카오동포를 특약기자 및 통신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대만기자가 대만내에서 장거리 전화로 인터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본토에서 취재활동을 하는 대만기자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국가법률·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자

신분과 부합되지 않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관련부서가 구두경고 또는 “취재증”을 회수하거나 관련기관이 의법처리한다. 친지방문·여행 등 명의로 입국한 대만기자는 어떠한 형식의 취재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만종교인사의 본토친지방문과 여행문제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중국공산당의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다. 중국은 대만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 “상호존중·상호불예속·상호불간섭”의 기본원칙과 대만동포의 종교신앙에 대한 존중과 불차별·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의 직업종교인사와 신도가 본토친지방문과 여행을 할 경우 중국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개인용 종교경전을 휴대할 수 있으나, 기타 종교선전물은 일률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이들은 본토체류기간중 개방적인 교회·사원 등에서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나 선교·신도확대 및 교회를 건립하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만일 선교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의 중지를 계속 권고하면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과 관련법규를 설명해 준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대만회도문(대만의 종교결사 단체)인사도 본토의 친지방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들의 개인신앙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하나 이들 단체의 경서·간행물·도구 등의 휴대반입은 일절 허가하지 아니하며 선교 또는 구성원확대·교리회복·조직건립 등도 허락하지 아니한다.

대만동포의 본토친지방문여행시의 호구신고

호구등록은 중국정부의 중요한 호구관리제도이다. 중국의 호구 관리는 《호구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실행된다. 호구등록에는 상주 호구등록·체류호구등록·출생등록·사망등록·전출입등록과 변경·개정등록이 포함된다. 호구등록은 각급 공안기관이 주관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과 《중국공민의 개인적인 일에 의한 홍콩지구 혹은 마카오지구 왕래에 관한 임시관리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홍콩·마카오동포와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이 단기간에 걸친 본토방문 또는 귀국을 할 경우에는 호구관리규정에 의거 임시거류호구등록(통상 ‘임시호구신고’라 칭한다)을 하여야 한다. 영빈관·호텔·여관·초대소·학교 등의 기업·사업단위 또는 기관·단체 및 기타 기관내에 투숙하는 자는 반드시 임시투숙등록표를 작성해야 하며, 친지집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친지가 24시간내에(농촌은 72시간 내도 가능) 현지의 공안파출소 또는 호적사무실에 임시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본토친지방문여행을 하는 대만동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대만동포는 등록수속시에 현지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은 전심전력하여 도와주고 협조하여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대만동포는 본토를 떠날 때에는 떠나기 전 호구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대만동포의 본토친지방문여행을 위한 전문서비스기관

중국여행사(약칭 중여사)는 화교·홍콩·마카오동포·대만동포와 외국국적화교의 본토친지 방문여행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구이다. 이 여행사는 1973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를 북경에 두고 있다. 현재 중국본토 각성·자치구·직할시 및 주요 개방도시 유명관광구, 광둥·북건·절강·강소성 등 화교고향지구의 시와 현에 지사나 사무기구가 설립되어 있어 일련의 접대체계망과 기지가 기본적인나마 형성되어 있다.

홍콩의 중국여행사는 중국정부관련기관의 위탁을 받아 대만동포여행증서를 처리하는 외에 대만동포를 위해 아래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 (1) 본토를 왕래하는 비행기·기차·여객선표의 처리와 각 지역간의 연계수송처리
- (2) 홍콩 및 본토의 호텔(영빈관)의 대리예약
- (3) 수하물의 탁송 및 입출국자를 위한 공항출영및 전송
- (4) 대만동포가 귀향을 위해 구매하는 가전용품과 면세물품 판매
- (5) 대만동포의 귀향방문단 조직
- (6) 대만동포의 본토친지조직

현재 홍콩의 중국여행사(중환총사)및 14개 지사·사무소 등은 대만동포를 위해 상술한 각 항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홍콩

의 중국여행사와 본토각지의 중국여행사는 밀접한 업무연계를 맺고 있어 내외간의 연계에 있어 상호협력의 일사불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만동포는 이러한 기구들을 충분히 이용하여 입국과 관련된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본토친지방문여행을 하길 바란다.

이 밖에 홍콩의 중국여행사는 미국(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영국·태국·필리핀·싱가폴·호주·캐나다 등지에 해외지사가 설립되어 있어 대만동포의 홍콩방문 또는 홍콩을 경유하는 본토친지 방문여행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II. 稅 關

중국의 세관 및 그 권력

1987년 1월22일의 국가주석령 제51호로 공포(동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국가의 진출관 (약칭 출반입)을 감독관리하는 기관이다. 세관은 본법과 기타 관련법률·법규에 따라 운수도구·화물·수하물·채신물품과 기타 물품의 출반입을 감독관리하며 관세와 기타세·비용을 징수하고 밀수를 적발하며 세관통계를 편제하고 기타 세관업무를 처리한다.

국무원은 세관총서(海關總署 : 우리의 관세청에 해당)를 설립하여 전국 세관을 통일관리한다. 국가는 대외개방 개항지와 세관감독관리업무가 집중된 지점에 세관을 설치한다. 세관은 예속관계에 있어 행정구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세관총서에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은 아래의 권력을 행사한다.

1. 출반입되는 운수도구를 검사하며 출반입화물·물품을 검색한다. 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관련법률·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억류할 수 있다.
2. 입출국인원의 증명서를 검사하며, 본법 또는 기타 관련법률·법규를 위반한 혐의자를 색출하고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3. 출반입하는 운송도구·화물·물품과 관련된 계약·영수증·장

부·증명·기록·문서·업무통신·녹음녹화제품과 기타자료의 복제 여부를 검색하여, 이 중 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관련법률·법규를 위반한 출반입운수도구·화물·물품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억류할 수 있다.

4. 세관감독관리구역과 세관부근 연해연변 규정지구에서 밀수 혐의가 있는 운수도구와 밀수화물·물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서 밀수혐의자의 인신을 조사하며, 밀수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비준을 거쳐 억류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억류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수상황하에서는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출반입운수도구 또는 개인이 세관의 감독관리에 대항하여 도피한 경우에 세관은 세관감독구역과 세관부근 연해연변규정 지구 밖까지 연속추격하여 원지역으로 데리고 돌아와 처리할 수 있다.

6. 세관은 직책의 이행을 위해 무기를 구비할 수 있다. 세관 업무인원의 무기패용과 사용규칙은 세관총서가 국무원 공안기관과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대만동포의 본토세관수속처리규정

여행증명(「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 또는 「대만동포여행증명」을 가지고 본토 친지방문여행을 하는 대만동포가 중국을 입출국할 시에는 반드시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통과하여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장소내에서 세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대만동포는 세관수속시 반드시 우선 세관의 “여객화물물품신고서”를 상세히 기록 작성해야 하며, 신고한 물품과 본인이 휴대하여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분리해서 운송하는 수하물의 반입시에는 반드시 신고서내에 정확한 수량을 밝히고 세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탁 반입하는 물품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분리운송 수하물이 도착하면 물품확인서 1식2부를 작성하여 기존의 《여객화물물품신고서》와 함께 세관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통관된 수하물과 병합계산하여 검수한다.

세관의 수하물검사시, 대만동포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려 하거나 세관검사를 피하는 경우에는 밀수사범으로 처리한다. 대만동포의 입국을 돕기 위해 수하물의 검색에 있어 세관은 이미 수속간소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만동포는 세관수속을 마친 후, 《여객화물물품신고서》의 두 번째 장에 세관검사 도장을 필한 후 스스로가 보관하며, 출국시 이를 근거로 출국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대만동포의 휴대수하물 출발입시 면세특혜에 관한 조치

본토 친지방문여행을 하는 대만동포를 우대하고 이들의 합리적인 수요를 배려하기 위하여 세관총서는 대만동포가 휴대하는 수하물물품에 대해 개인의 합리적 사용수량범위내에서 면세특혜를 주고 있다. 1987년 10월13일 세관총서가 선포한 《세관의 대만동포 입출국수하물물품에 대한 관리규정》에 의거한 구체적인 우대조치는 아래와 같다.

1. 세관은 대만동포가 매 일서기력내에 (약칭 ‘일년내’) 매번 입국시 휴대하는 수하물물품중 식품, 의복재료, 의복과 인민폐 50원이하의 생활용품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량범위내의 것은 모두 면세통관시키며, 매 입국시 술 2병(한병당 750ml이내) 담배 30갑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2. 대만동포가 휴대하는 고급내구소비재, 예를 들면 T.V, 냉장고, 비디오, 녹음기(건축, 콤포넌트음향기기 포함), 카메라, 세탁기, 소형계산기 (메인 기계와 전용부속포함), 오토바이 및 기타 인민폐200원이상 1000원이하의 학습, 생활용품 등은 매년 제1차 입국시 이 중의 한 가지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1949년이후 처음으로 본토친지를 방문하는 대만동포에 대해서 세관은 특별배려를 하여 이 중 3가지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동일품목의 중

복도 가능하나 총 수량이 3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만동포가 입국시 휴대하는 일반내구소비재, 예를 들면 시계, 자전거, 재봉틀, 선풍기, 보통전자울겐, 타자기(전동포함), 전기오븐, 열수기와 기타 인민폐 200원이하 50원이상의 학습, 생활용품 등은 매년 제1차 입국시 이중 5종의 물품(동일품목의 중복이 가능하나 총 수량이 5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한 해에 수 차례 입국하는 대만동포는 제2차 입국부터 상술한 내구재를 더 이상 면세로 반입할 수 없다.

4. 대만동포가 본토에 정착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의 휴대수하물물품은 개인의 합리적 사용수량범위내에서 관련기관이 발행한 《대만동포정착증명》을 근거로 면세통관시키며, 본 규정에 명시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자가용 소형승용차는 매 호당 1대에 한해 징세 통관한다.

5. 대만동포가 휴대출국하는 수하물물품은 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합리적 사용수량범위내에서 반출을 허가한다.

이 밖에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본토에서 1년이상 학습하는 화교, 홍콩, 마카오동포, 대만동포, 외국국적 화교학생이 입국할 시, 세관은 학교입학통지서 또는 화교업무기관의 증명에 근거하여 《귀국 또는 본토학습학생 휴대중점물품 등록수책》을 발급한다. 학생은 이 수책에 근거하여 학습기간동안 개인용시

계, 카메라, 8mm영화촬영기,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녹음기, 손잡이형 라디오 녹음기, VCR, 타자기, 계산기, T.V, 자전거 각 1대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학생이 휴대하는 일반 학습생활용품은 개인의 합리적 사용범위내에서 면세통관한다.

입국하는 대만동포의 수하물물품과 개인체신 물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방법

대만동포가 본토로 반입하는 수하물물품중 세관면세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사용범주에 속하더라도 세관의 허가를 거쳐 징세반입한다. 개인사용범위이외의 것은 반입되지 아니한다.

중국정부의 《입국여객수하물물품과 개인체신화물에 대한 수입세 부과방법》(1978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무역부가 공포·시행)에 보면 여객(대만동포포함)이 반입하는 수하물 개인체신화물과 기타 수입물품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포함하는 수입세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수입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다.

1. 곡류와 곡류분말, 의료기재, 과학측량기구, 전자계산기는 20%를 부과한다.
2. 약품, 향료, 재봉틀, 타자기, 영인기, 녹음기, T.V, 수공도구, 수공농기구, 체육용품, 악기는 50%를 부과한다.
3. 식품과 음료, 녹용, 사향, 인삼, 마면직 옷감재료와 의복, 라디오, 전축, 자전거, 오토바이,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디셔너, 진공청소기, 문구용품, 금속제품, 가전제품은 100%를 부과한다.
4. 모(毛), 사(絲), 합성섬유방직품과 의류용품, 카메라, 카메라기재, 비디오와 이들 부속및 부품은 150%를 부과한다.

5. 바다제비집, 상어지느러미, 해삼, 고래, 말린 조개살, 생선의 복부, 아가미, 술, 담배, 화장품, 손목시계와 회중시계 및 이들 부속과 부품은 200%를 부과한다.

6. 면세물품에는 수입허가된 서적, 신문, 잡지, 전문교육용 영화, 환등필름, 언어녹음테이프와 피임용구, 피임약품 및 금은과 그 제품이 있다.

중국세관은 과세물품에 대해 규정된 수입세율과 과세후 가격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수입세부과증명서에 기재한다. 대만동포는 과세증명에 열거된 세율에 따라 납부한다. 세관은 여객을 검사하는 현장에서 통상 세관원이 직접 과세액을 접수하거나 은행이 대신 수납한다. 대만동포가 이 부과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선 먼저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납세일 익일부터 14일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대만동포가 준수해야 할 세관의 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에 대한 규정

1987년 1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는 《출반입 금지품목표》와 《출반입 제한품목표》를 공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반출금지품목

- (1) 각종무기, 탄약 및 폭발물
- (2) 위조화폐 및 위조한 유가증권
- (3)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에 유해한 인쇄품, 필름, 사진, 음반, 영화필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컴퓨터디스크 및 기타물품
- (4) 각종 맹독성 독약
- (5) 아편, 몰핀, 헤로인, 대마 및 기타 습관성마약과 향정신성 약품
- (6) 위험성 병원,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을 보유한 동물, 식물 및 그 생산물
- (7) 사람, 가축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전염병지역 및 기타 질병을 전염시키는 식품, 약품 또는 기타물품
- (8) 인민폐(화폐관리규정에 의거한 것은 제외하며 인민폐의 외환태환권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반출금지품목

- (1) 출반입금지범위에 열거된 모든 물품

(2) 국가기밀과 관련된 수기원고, 인쇄품, 필름, 사진, 음반, 영화필름, 레이저디스크, 컴퓨터디스크 및 기타물품

(3) 진귀한 문화재 및 기타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4)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진귀한 동·식물(표본포함) 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

3. 반출제한품목

(1) 무전라디오 및 통신보안기기

(2) 술, 담배

(3)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진귀한 동·식물(표본포함) 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

(4) 세관이 수량을 제한하는 기타물품

4. 반입제한품목

(1) 금은 등 귀금속 및 그 제품

(2) 외환 및 그 유가증권

(3) 무전라디오 및 통신보안기기

(4) 귀중한 한약재 및 약품

(5) 일반 문화재

(6) 세관이 수량을 제한하는 기타 물품

상술한 세관총서의 규정을 본토친지방문여행과 경제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오는 대만동포는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세관통관을 하여야 한다. 만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그 법률적 책임을 묻는다.

대만우편물의 전송 반출입에 관한 규정

해협양안 쌍방동포간의 상호 선물증정과 기념품교환의 필요에 대한 배려와 각지 세관의 검색척도를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중국세관은 1988년 4월1일부터 대만우편물의 전송출반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마카오지구를 통해 전송반입되거나 전송되는 대만의 개인 우편물은 세관의 자기송달우편 혹은 홍콩·마카오로 송달하는 개인 우편물 감독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외국을 거쳐 반입되거나 전송되는 대만의 개인우편물은 세관의 출반입우편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간단히 말해, 홍콩·마카오를 거쳐 자기에게 송달하거나 대만으로 부치는 우편물은 자기송달 또는 홍콩·마카오로 부치는 우편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외국에서 자기에게 부치거나 대만으로 부치는 우편물은 자기송달 또는 국외송달 우편물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 구체적 규정(송달가능품목, 한도액, 세액과 송달금지품목 포함)은 중국세관의 《개인우편물 출반입에 대한 규정》과 같다.

대만동포와 독자에게 이 방면에 관한 이해를 돕기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1988년 1월부터 시행)

1. 반입우편물의 품목, 세액과 한도액

외국이나 홍콩·마카오지구로부터 반입된 개인소포는 친지, 친구 상호간의 증송품이어야 하며 개인의 합리적인 사용수량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국외에서 송달된 소포는 매회 가치가 인민폐 200원 이내로써 내장된 물품의 물품세액이 50원 이내인 것은 면세통관한다. 그러나 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홍콩·마카오지구로부터 송달된 우편물중 매회 가치가 인민폐 100원 이내, 내장 물품의 물품세액이 인민폐 10원 이내의 것은 면세 통관되며, 1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녹음테이프, 우표, 인삼, 비디오테이프의 우편반입한도는 녹음테이프 10개, 우표 200장, 인삼 100g, 비디오테이프 1개(세금부과)이며, 홍콩·마카오지구에서 반입되는 경우에는 녹음테이프 5개, 우표 100장, 인삼 50g, 비디오테이프 1개(세금부과)이다.

2. 반출우편물의 품종과 한도액

국외로 송달하는 우편물은 친지·친구 상호간의 증송품이어야 하며 개인의 합리적인 사용수량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국외로 송달하는 우편물의 매회 가치는 인민폐 200원 이내이며, 홍콩·마카오지구로 송달하는 우편물의 매회 가치는 인민폐 50원 이내이다.

국외로 송달하는 한약, 한약약초는 그 가치가 인민폐 100원 이내로 제한되며 소량의 개인용이어야 한다. 홍콩·마카오지구로 송달하는 경우는 50원 이내이다.

약을 송달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우편으로 반출하는 수집용 우표, 녹음테이프와 인삼 등 3개 품목은 매회 가치한도(국제우편물 200원, 홍콩, 마카오 우편물 1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송달이 가능하다.

1949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문화재가치가 있는 물품, 서적 등은 문화재관리기관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세관은 문화재관리기관이 발급한 반출허가증명과 봉랍에 의거 검수를 한다.

개인이 외국에서 구매한 용품(전기제품 등)의 고장으로 국외로 송달하여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발행의 《임시반출 물품허가서》를 작성하고, 물품상면에 물품의 명칭, 사이즈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이 물품이 6개월내에 우편으로 반입되는 때 수취인은 앞의 허가서를 근거로 면세로 수취할 수 있다.

3. 우편을 통한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품목

우편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 물품은 세관이 수입을 금지한 물품 외에 헌 옷가지와 헌 침구용품이 있다.

우편 반출이 허가되지 않는 물품에는 문화재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수집용 우표, “외환구매” 송장이 없는 금은 및 그 제품, 본토에서 공개발행되지 않은 인쇄품, 허가없이 우편수출하는 원고, 그림, 사향, 섬소, 피임약품과 도구 등이 있다.

개인휴대및 우송우편물 반출입관리에 관한 규정

중국세관은 1988년 6월 15일부터 개인휴대와 우편인쇄물 반출입관리문제에 대해 약간의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에서 가리키는 “인쇄물”은 각종 인쇄물, 촬영필름과 사진 인쇄지형, 회화, 스크랩, 수기원고, 복사본, 필사본 등을 가리킨다.

2. 반입되는 인쇄물은 개인의 합리적인 사용수량원칙에 따라 통관하며 아래의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입되지 아니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관련규정을 공격하거나, 국가의 현행 정책을 멸시하고 중국공산당과 국가지도자비방,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복을 꾀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며 “두개의 중국” 또는 “대만독립”고취를 선동하는 것

(2)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3) 국외의 종교단체, 기구 혹은 개인명의로 중국에 뿌리는 종교인쇄물

(4) 별점, 패점, 풍수, 관상 등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의 것

(5) 기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

3. 개인휴대 및 우편반출인쇄물이 아래의 범위에 속하면 세관 검사를 거친 후 반출이 허가된다.

(1) 국내에서 공개 발행된 도서, 신문, 잡지

(2) 본인가족의 족보영인본

(3) 국외법인과 체결한 계약, 협의, 확인서 및 국가기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약항목 심의비준문서

(4) 본인 소속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심의비준을 거쳐 반출이 허가된 개인원고

(5) 국가기밀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국가의 반출금지규정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인쇄물

4. 상술한 인쇄물을 휴대 또는 송달로 반출입하는 개인(대만 동포 포함)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신고내용이 다르거나 세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검색을 통해 현행 반출입금지내용의 인쇄물이 발견되면 세관은 의법조치한다.

국외구매서로 국내에서 물건을 수취하는 구체적 방법

화교·대만동포 등 친지방문객의 본토방문시의 상품구매를 돕기 위하여 관련기관이 국외에서의 구매증명서로 국내에서 물건을 수취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적인 운영을 통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대만동포는 홍콩·마카오 또는 세관이 위의 업무를 경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국외의 상점에서 T.V·냉장고·세탁기 등의 물품서(물품권)를 구매하여,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면서 물품구매서 1식3부를 세관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세관에서 면세 또는 과세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거쳐, 구매서 상면에 “수취가능의 인장”을 받는다. 이렇게 세관에서 인장을 필한 구매서에 따라 국내의 수취지점에서 물건을 수취할 수 있다.

홍콩중려무역유한공사(홍콩 중국여행사의 각 지사에도 영업부가 설치되어 있다)의 대만동포 등 여객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면세품점에서는 현품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으며, 홍콩에서 돈을 지불한 후 그 구매서를 가지고 본토의 각 지점에서 물건을 수취할 수도 있다. 현재 홍콩중려무역유한공사에는 18개의 수취지점이 있다. 이들은 북경·상해·광주·북주·무한·서안·청도·천주·하문·중산·공북·심천·해구·산둥·우사·매현·개평·강문 등 지구이며 장차 대만동포의 수요에 따라 약간의 수취지점을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

화교·홍콩·마카오·대만동포가 증여하는 물품의 수입관리강화에 관한 규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교와 홍콩·마카오·대만 동포들은 본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현금 및 현물을 하여 화교들의 고향건설과 4개 현대화지원을 위하여 공헌을 하였다. 중국정부는 화교·홍콩·마카오·대만동포들의 이러한 애국적 행동에 대해 일관된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진일보한 기부업무처리를 하고, 기부방향을 정확히 인도하며, 기부접수업무중에 나타나는 일련의 혼란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1989년 3월 화교·홍콩·마카오·대만동포의 기부물자 반입에 대한 10개조의 관리규정을 입안하였다. 이 중 세관분야와 비교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화교와 홍콩·마카오·대만동포가 기부한 필수적인 생산자료는 직접 농공업생산·문교위생·과학기술 및 공익사업 등에 쓴다. 상술한 물자에 대해서는 세관이 국가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면세 처리한다.

2. 국가가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동차·칼라TV·냉장고·비디오·계산기 등 반입제한 기계·전자 제품은 각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국가규정에 따른 기부한도액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부를 허가한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률적으

로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월권하여 비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과 비준한 자의 책임을 묻는다. 기부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총서가 관련기관과 같이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3. 국가가 반입을 제한하는 기계·전자제품에는 국외의 구매서로 현지에서 물건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접수된 기부품도 포함되며, 이는 직접 접수기관 자용으로 제한한다. 모든 국가가 반입을 제한하는 기계·전자제품의 기부접수에는 대외경제무역부 및 그 수권기구가 발행한 “수입허가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세관은 이 허가증을 근거로 검사한다.

4. 기부품이 수입허가증 관리상 전매·독점경영에 속하는 경우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성(자치구·직할시)의 화교사무처, 대만사무처가 국가주관기관에 관련허가를 받아 세관이 규정에 따라 검사통관한다.

대만동포가 받아야 하는 입출국시의 위생검역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홍콩·마카오·대만동포와 세계 각국민의 우호적인 왕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염병의 외국전입이나 국내전출을 방지하고 입출국여객·교통 종사원과 중국 각 민족 동포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국경위생검역법》을 제정하였다.(1986년)

이 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개항지에는 국경위생검역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모든 입출국인원·교통공구·운수설비 및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화물·우편물 등은 모두 검역을 받아야 하며, 국경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거쳐야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전염병을 검역전염병(흑사병·볼레라·황열병 등)과 감측전염병(유행성독감·학질·발진티푸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전염병검역에 대한 규정

(1) 입국하는 인원은 반드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국경개항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국경 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인원도 승하차가 허락되지 아니한다.

(2) 출국하는 인원은 반드시 마지막으로 떠나는 국경개항지에

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3) 검역전염병의 보균자는 즉각 격리하며 그 격리기간은 의학검사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보균협이가 있는 자는 검역을 보류하며, 보류기간은 이 전염병의 잠복기에 따라 확정한다.

(4) 전염병지구에서 오거나,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검역전염병의 전파매개가 될 수 있는 수하물·화물·우편물 등은 반드시 위생검사나 위생처리를 거쳐야 한다.

(5) 입출국하는 시체·유골의 운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국경위생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생검사에 합격하여 입출국허가증을 받아야만 송출입이 가능하다.

(6) 검역을 회피하거나 국경위생검역기관에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또는 국경위생검역기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교통공구를 이용하는 여객은 반드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2. 전염병감측에 대한 규정

(1) 국경위생검역기관은 입출국인원에 대해 전염병감측을 실시하며 필요한 예방조치와 통제조치를 취한다.

(2) 국경위생검역국은 입출국하는 인원에게 건강상황카드의 작성과 일부 전염병 예방접종증서·건강증명 또는 기타 관련증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3) 감측전염병에 걸린 사람·감측전염병 유행지구에서 오거나 감측전염병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경위생검역기관은 반드시 상황을 구분하여 응급진찰카드를 발급하며 검사

유보 또는 기타 예방·통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해당지역 위생 행정기관에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각지의 의료기관은 응급진찰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해 우선 진찰을 해 주어야 한다.

상술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입출국인원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만동포와 기타 여객들은 국경개항지의 입출국시 응당 위생검역인원의 각종 검역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써 여행중의 건강과 즐거움을 보장받을 수 있다.

Ⅲ. 外 換 管 理

중국 외환관리의 원칙과 기구

《중화인민공화국의환관리임시조례》(1980년 12월 18일 국무원공포)의 관련규정에 의한 외환관리강화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외환의 수입과 지출, 각종 외환어음의 발행과 유통 및 외환 귀금속·외환어음 등의 반출입은 법률에 따른 엄격한 관리를 행한다.

2. 본 조례에서 가르키는 외환이라 함은 외국화폐(지폐·주화 등 포함), 외환유가증권(정부공채·국고채·회사채·주식·이자증서 등 포함), 외환지불증서(어음·은행예금증서·체신예금증서 등)과 기타 외환자금을 가리킨다.

3. 국가는 외환에 대해 국가의 집중관리와 통일경영의 방침을 행한다. 국가의 외환관리기관은 국가외환관리총국과 그 분국이 된다.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전문은행은 중국은행이 된다. 국가외환관리총국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기타의 어떠한 금융기관도 외환업무를 경영해서는 아니된다.

4. 법률과 기타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나 개인의 외환수입은 반드시 중국은행에 매각하여야 하며, 필요한 외환은 중국은행이 국가가 비준한 계획 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에 매각한다. 외환유통·사용·저당 및 외환의 암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식의 외환위장·도피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국가외환관리총국은 국무원의 직속기구로서 외환의 통일관리·외환가격의 제정과 공포·외환수지의 검사·감독 및 통일조절, 화교자본은행·중외합자은행과 외자은행의 관리, 국가와 중국인민은행이 위탁한 기타사항의 처리 등 업무를 맡는다.

중국의 기존 금융기관에는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 1개, 전문은행 4개 (중국공상은행·중국농업은행·중국은행·중국인민건설은행), 5개의 전국적 기타 금융조직, 즉 중국인민보험공사·중국투자은행·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교통은행·농촌신용협작사가 있다.

중국은행은 국가가 지정한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전문은행으로 모든 외환매매·경영, 외환신용대출·무역자금대출·외환예금·화교예금 및 송금·국제환매매·국제은행간의 예금 및 대출업무, 모든 무역 및 비무역거래의 국제결산과 국제간의 외환청산처리, 외환대출, 투자 및 외자신용조사·신용담보업무의 처리,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제금융조직 및 경제·무역금융에 관한 대외협상 활동 참가, 관련협의를 문서조인 등을 주요 경영업무로 하고 있다. 중국은행은 중국의 주요 개항지와 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며, 많은 국가의 주요도시와 홍콩에도 지점 또는 대리사무소를 설치한다. 이는 대만동포 등 여객의 본토에서의 외환업무처리에 유리하다. 중국은행본점의 주소는 北京 阜成門內大街 410號이다. 상해지점은 上海 中山東一路 23號에 소재한다.

대만동포의 외화휴대입국에 관한 중국본토의 규정

국가의 《외환관리임시조례》와 기타법규의 규정에 의거, 대만동포가 외환을 휴대하여 본토로 들어오는 경우, 그 수량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드시 입국지점의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국시 외환을 휴대하거나 다시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이 중국은행의 증명이나 입국시의 신고서를 근거로 통관한다.

자금휴대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토친지방문여행을 하는 대만동포는 여행중 소량의 개인용 외환을 소지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신용카드·여행신용증 또는 은행환어음·은행어음·수표·여행자수표·국제환어음·세계환어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은행의 각 지점에서 교환 또는 수탁처리할 수 있다. 만일 대만동포가 비교적 많은 외환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국의 은행을 통해 전신환·전환 혹은 어음 등의 방식으로 본토의 친지·친우소재지나 본인의 방문소재지에 위치한 중국은행에 송부하여 본인이 도착한 후 수취해서 사용해도 된다.

대만동포의 본토친지에의 송금에 관한 방법

대만동포는 현재 본토의 친지·친우에게 직접 송금할 수 없으며, 홍콩·일본·미국과 동남아시아의 국가 및 기타국가와 지구의 중국은행과 대리관계 또는 구좌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을 통한 전송만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은행은 이미 홍콩·동경·뉴욕·싱가폴·마카오·런던·파리·룩셈부르크·시드니등지에 지사가 개설되어 있으며 세계 150여개국가와 지구의 3,600여개 은행기관과 업무대리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만동포는 중국은행의 각 해외지점과 기타 업무대리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들의 본토 친지·친우에게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다.

수취인이 만일 송금(외환)된 것을 은행에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은행의 개인외환구좌에만 예치가 가능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원금과 이자를 외환으로 수취할 수 있다. 만약 직접 송금액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민폐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화교외환과 관련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만동포의 외환태환과 예금수속 처리규정

《중국은행외환태환권입시관리방법》 등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단기성 중국방문을 하는 홍콩·마카오·대만동포·화교와 외국인은 소지한 외환현금을 자유태환할 수 있으며, 각지의 중국은행과 이 은행이 공항·호텔·상점 등에 설치한 환전소에서 외환태환권 또는 인민폐로 태환할 수 있다. 인민폐로 태환한 경우에는 화교외환과 관련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행(혹은 대리환전소)은 외환태환권을 태환하면서 반드시 고객에게 “태환증명”을 발급한다.

소위 “자유로운 외환현금태환”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지정한 공인화폐, 즉 미국 달러·일본 엔·캐나다 달러·호주 달러·싱가폴 달러·홍콩 달러·영국 파운드·독일 마르크·이태리 리라·프랑스 프랑·스위스 프랑·벨기에 프랑·덴마크 크로네·노르웨이 크로네·스웨덴 크로네·오스트리아 실링·말레이시아 링기트·네델란드 굴덴 등 18종화폐이다. 상술한 외환을 소지한 대만동포는 송금·휴대반입 및 태환에 있어 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국은행외환예금장정(병종)》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은행 및 그 각지의 분점·지점·사무소 등은 미국 달러·영국 달러·독일 마르크·일본 엔·홍콩 달러·프랑스 프랑 등의 6종화폐에 대한 외환예치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기타의 자유태환외화는 예치인이 상술한 6종화폐중 하나로 선택하여 예치일의 환율로 계산

하여 예치한다.

대만동포는 중국은행의 외환예금에 있어 아래의 각항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구좌개설시 반드시 예금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 또는 서면으로 예치방식을 결정하며, 은행은 기명식 정기예치서를 발급한다.

(2) 정기예금의 예치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의 4종이 있다. 정기예금의 예치금액은 인민폐 150원에 상당하는 외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3) 예금이자는 중국은행이 공포한 개인외환 정기예금 이율 계산방식에 따른다.

(4) 예금수취시에는 예금증서와 인감 또는 서면으로 약정한 수취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5) 예금은 특수한 원인이 있을 때나 예치은행의 동의를 거치면 만기전 수취가 가능하다. 만기전 수취예금에 대해서는 수취일의 을중 당좌예금 이율계산에 따른다.

(6) 예치인이 예금증서, 인감을 유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즉각 본인신분증을 소지하고 서면형식으로 예치은행에 분실수속을 해야 하며, 예치은행은 실제여부를 심사한 후 예금증서를 재발급하고 인감을 변경해 준다. 만일 신고전에 예금이 이미 인출되었을 경우,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중국은행은 예치인의 예금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예치인은 중국은행에 예치된 원금과 이자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중국은행에서 외환결제를 하는 경우의 우대조치

《개인에 대한 외환관리시행계획》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외국화교와 무국적자가 외국과 홍콩·마카오·대만지구에서 송금된 외환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은행에 외환을 판매해야 한다. 매회 인민폐 3,000원 이상(3,000원 포함)의 거래송금의 경우 10%의 외환잔류가 허가되며, 그 나머지는 중국은행과 인민폐로 바꾸면 화교외환우대와 관련된 특혜를 누릴 수 있다.

홍콩·마카오·대만동포·화교가 본토로 귀환하거나 귀향하여 정착하는 때에는 휴대반입 또는 송금된 외환을 입국후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신청하면, 30%의 외환잔류가 허가되며, 나머지 70%의 인민폐로 바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화교외환우대와 관련된 특혜조치를 누릴 수 있다. 상술한 휴대반입외환의 잔류신청은 세관신고서에 의해서만 처리된다.

외환을 중국은행에 매각하면 즉 외환을 인민폐로 바꾸면 중국정부의 화교외환우대 특혜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주요조치로는, 수취금액과 상응하는 화교외환물자 공급증서를 발급하며, 이 표로서 전문공급처에서 공급하는 식량·기름 및 결핍물자를 구매할 수 있다. 매 인민폐 100원에 해당하는 외환에는 30원 상당의(식량, 기름, 부식품 10원, 공업품 20원) 상품을 공급하며, 보통 인민폐예금보다 유리한 이율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다.

외환태환권 사용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규정

외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1980년 3월 19일 중국은행에게 “외환태환권”(약칭 ‘외환권’)의 발행권을 주었다. 외환권은 인민폐와 가치가 같은 외환증서로써 화폐의 성질과 증서의 작용을 겸비하고 있는 일종의 외환가치를 함유한 인민폐대용권이지 별종의 화폐는 아니다. 그 액면은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5전 및 1전의 7종이 있으며 분실해서는 아니된다. 본토에 오는 홍콩·마카오·대만동포 및 화교·외국인은 소지한 외환을 필요에 따라 중국은행에서 외환권으로 태환하여야만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국은행외환태환권임시관리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환권은 본토의 지정된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된 범위내에서의 구매 혹은 비용의 지불에는 반드시 외환권을 사용해야 한다.

(1) 중국각지에서 전문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 화교와 외국인을 상대하는 여행사, 우의상점, 외륜공급회사, 미술공예서비스부, 문물상점, 대외무역센터와 수입상품전용판매구

(2)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 화교와 외국인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호텔, 식당, 구락부

(3) 홍콩, 마카오행 직통열차, 선박비용 및 수하물탁송비용의 지불

(4) 국내외항공노선의 비행기표와 수화물탁송비용의 지불

(5) 국제통신, 국제소포우송 비용

(6) 국가외환관리총국(또는 분국)의 비준을 거치거나 관련규정에 의해 외환권을 받아야 되는 기관

이 《방법》에는 상술인원은 중국은행(혹은 대리태환소)이 외환태환시 환전인에게 발급한 《태환증명》을 근거로 6개월이내에 소지하고 있는 외환권을 중국은행의 인민폐특종예금·외환예금으로 예금전환하거나 다시 외환으로 태환하거나 휴대반출·국외송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폐의 환율과 그 종류

“외환가격”(약칭 ‘외환율’)이라함은 두종 화폐간의 가격비교를 가리킨다. 인민폐의 환율은 인민폐의 외국화폐에 대한 가격비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통상 외환고시가격이라 부른다. 이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제정·공포한 국가고시가격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 화교와 외국인의 중국내에서의 모든 외환거래와 국제결산은 반드시 중국정부가 규정한 환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인민폐의 시세는 항상 변동하며, 당일 조정되는 환율에 주의하여야 한다. 중국은행 및 그 지점에는 외환시세표가 비치되어 있다.

1990년 8월 7일 “국가외환관리국 외환시세표”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정부의 현행 외환시세 공시화폐는 다음의 22종이다.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독일연방 마르크, 네덜란드 굴덴, 스위스 프랑, 벨기에 프랑, 프랑스 프랑, 이태리 리라, 스웨덴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덴마크 크로네, 오스트리아 실링, 일본 엔,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홍콩 달러, 구주화폐단위, 마카오 달러, 핀란드 마르크, 말레이시아 링지트, 기장된 스위스 프랑

인민폐여행자수표 및 그 판매·태환과 분실신고에 관한 방법

인민폐여행자수표(‘본 여행자수표’라 약칭한다)는 중국은행이 발행하는 정액여행자수표이다. 이는 중·영문대조로 인쇄되어 있으며 액면은 50원과 100원의 두 종류가 있고, 매 수표의 발행번호가 7자리수로 되어 있으며 일렬번호앞에 영문자R이 표기되어 있다. 본 여행자수표는 중국은행사장이 사인하고 중국은행총관리처가 통일발행하며, 1987년부터는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중국본토 친지방문여행을 하는 중외여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본 여행자수표는 판매시, 대리판매은행이 반드시 수표에 판매은행명칭과 일자를 스탬프로 찍어야 한다. 수표를 구매하는 사람은 구매시 수표의 “수표소지인의 서명”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 현장에서 서명하거나 대리판매은행이 “수표소지인 서명”란에 수표매입인의 성명을 명기하고 “신분증에 의한 수취”라고 쓰여진 스탬프를 찍는다.

본 여행자수표는 환전시, 수표소지인이 인민폐로 태환할 때는 반드시 액면가를 한 번에 태환하며, 현장에서 수표의 “수표소지인의 사용시 서명”란에 서명하는데, 그 서명은 반드시 수표매입시 서명하였던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만일 수표에 “신분증에 의한 수취”가 찍혀져 있는 경우, 수표소지인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은행(또는 태환소)의 검사확인을 거쳐 태환지급한다. 본 여행자수표로 환전한 인민폐를 출국시까지 아직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환태환증명을 근거로 외환으로 환전하여 휴대반출하거나 송출할 수 있다.

본 여행자수표의 분실신고시에는 수표소지인은 여행자수표구매증명을 가지고 서면형식으로 대리판매은행 또는 중국내의 중국은행 각 지점 및 외환태환소에 유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은행은 이를 수리한 후 즉시 중국은행 총관리처와 판매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본 여행자수표의 유효기간 만료후, 즉 매입일로부터 6개월 후에 총관리처의 사실심사를 거쳐 대리판매은행에게 수표액면가의 상환을 통지한다. 만일 분실신고인이 기간만료전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판매은행의 담보수속이 필요하다.

인민폐 및 그 어음과 증권의 반출입에 관한 규정

중국정부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인민폐(즉 국가화폐) 현금은 휴대반출입이 금지된다. 모든 휴대 또는 개인이 운송하는 인민폐의 반출입은 만일 세관에게 발각되면 모두 몰수한다. 반출입되는 우편물중 만일 인민폐를 끼워 넣은 것이 발견되면 같은 처리를 받는다. 국외에서 온 여객이 입국 후 소지한 인민폐가 출국시에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국은행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중국은행이 발급한 인민폐 현금보관 등으로 휴대반출입할 수 있으며, 여객은 다음 입국시 이 증명을 가지고 중국은행에게 인민폐의 회수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인민폐로 지급하는 환어음·은행어음·수표·예금증서와 통장 등 인민폐유가증서와 중국이 발행하는 국고채·주식·회사채 등 유가증권, 또 기타 중국이 상환해야 하는 모든 증서는 사사로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출입할 수 없다.

홍콩·마카오·대만동포와 해외화교의 중국에서의 저축증서·투자증서·부동산계약·보석장신구 등은 중국은행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중국은행이 서명발행하는 기탁증서 또는 보관증서는 휴대나 우편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본토친지 방문여행을 하는 대만동포가 잘 숙지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해 주길 희망한다.

금은의 반출입에 관한 관리방법

금은은 국가건설의 중요한 물자이며 국민의 주요한 재물이다. 금은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경제건설에 있어서의 금은 수요를 확보하고, 금은 밀무역투기거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1983년 6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금은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곧이어 중국인민은행은 《금은관리조례 시행세칙》을 공포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중국인민은행·세관총서가 또 《금은반출입에 대한 관리방법》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법규들은 금은에 대한 국가의 통일관리·일괄구매 일괄분배의 정책과 개인의 합법적 금은소지에 대한 보호, 국가금은관리의 주관기관이 중국인민은행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개인의 금은휴대반출입에 대한 관리방법에는 아래의 규정이 있다.

1. 입국여객이 휴대하는 금은 및 그 제품을 휴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입국하는 경우 수량의 제한은 받지 아니하나 반드시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은 금은의 명칭·수량·중량 등 내용을 등기한 후 통관해 준다. 만일 금은 및 그 제품을 다시 반출출국하려는 때에는 세관은 원 입국시 신고한 신고서에 등록된 수량과 중량에 근거하여 심사한 후 통관한다. 모든 입국시에 세관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거나 입국시 신고한 수량·중량을 초과하는 것은 휴대출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입국여객용으로 반입한 외환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금은장신구(상감장신구·그릇 등 신공예품 포함)를 구매하여 휴대·탁송·우편반출하는 경우에 세관은 국내의 금은제품을 경영하는 기관이 발행한 “특종하물송장”(중국인민은행이 통일인쇄하여 각지 분점에서 분배발급한다.)에 의거하여 심사한 후 통관한다. “특종하물송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휴대반출·우편반출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외국교민과 기타 출국여객이 휴대하는 금은 및 그 제품의 반출에 있어 출국방문, 친지방문, 여행 및 국외 또는 홍콩, 마카오지구로 취업이나 학습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매 개인 황금장신구 5시전(市錢) (15.625g), 백은장신구 5시량(市兩) (156.25g)을 휴대할 수 있으며 세관의 규정한도액 검사를 거쳐 등기한 후 통관이 허가되며, 돌아올 때 반드시 원물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만일 국외, 홍콩, 마카오 등지로 거주를 이전하는 때에는 매 개인 당 황금장신구 1시량(市兩) (31.25g), 백은장신구 10시량(312.50g), 은제그릇 20시량(625g)은 세관의 규정한도액 검사를 거쳐 통관이 허가된다. 상술한 규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반드시 여객소재기관 또는 성진가도(城鎮街道)사무소, 향(鄉)인민정부기관 이상의 증명을 가지고 현지 중국인민은행 또는 그 위탁기구에서 금은 및 그 장식품의 명칭·수량을 확인한 후 “휴대금은반출허가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이를 근거로 검사통관한다.

이 “휴대금은반출허가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휴대반출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4.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기념성 금은주화를 제외한 기타 중국은행의 증명이 없는 금은주화도 휴대 또는 우편반출을 할 수 없다.

IV. 婚姻과 家庭

중국혼인법의 기본원칙

중국 건국후, 많은 대중 특히 많은 부녀들은 과거의 불합리한 혼인가정관계의 속박을 벗어나 아름답고 행복한 혼인과 민주적이고 화목한 가정을 꾸미기를 간절히 바랬다. 1950년 4월 13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7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을 통과시켜 동년 5월 1일부터 공포시행하고 있다. 이는 신중국 창건초기의 매우 중요한 입법이다. 이 법의 관철은 중국본토의 혼인가장제도에 있어 중대한 개혁, 즉 봉건적인 혼인제도의 근본적인 해체와 새로운 사회주의 혼인가정 제도의 기초적인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후 30여년을 거치면서 중국의 경제·정치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혼인법도 수정과 보충이 필요하게 되어 1980년 9월의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을 통과·공포하여 1981년 1월 1일부터 정식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의 혼인가정관계를 조정하는 현행 입법이다.

현행 혼인법 제2조는 “혼인자유·일부일처제·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행하며, 부녀·아동·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계획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혼인법의 기본원칙으로 사회주의 혼인가정제도의 기본내용과 주요특징을 체현하고 있는 중국혼인가정 입법과 사법의 지도사상이다.

1. 혼인의 자유

혼인의 자유라 함은 혼인당사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자기의 혼인문제를 결정하며 어떠한 사람의 강제와 간섭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가리킨다. 혼인의 자유에는 결혼의 자유와 이혼의 자유 두 종이 있다. 결혼의 자유라 함은 남녀 쌍방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을 하며, 상대방의 강압과 어떠한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혼의 자유는 만약 부부쌍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혼인의 자유는 법률의 규정범위이내의 자유로써 중국혼인법의 결혼·이혼의 조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며 혼인자유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인자유문제에 있어서의 합법과 위법의 한계를 구분하고 있다.

2. 일부일처

중국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혼인관계의 지속기간중에는 단명한 명의 배우자만 있어야 하며 동시에 두 명 또는 두 명이상의 배우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공개적이거나 음성적인 또는 변태적인 일부다처·일처다부관계는 불법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타인과 결혼신고를 하면 법률상의 이중혼이 된다. 비록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확실히 타인과 부부관계로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의 이중혼이 된다. 이중혼은 일종의 불

법범죄행위로서 중국형법 제180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이중 혼인한 자 또는 타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명확히 알고 그와 결혼한 자는 2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관계이외의 이성이 동거·간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혼인가정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며 윤리도덕에 위배되므로 대중여론의 견책을 받으며, 사안이 심각한 것은 치안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3. 남녀평등

남녀평등이라함은 남녀가 혼인가정생활중 각 방면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평등한 의무를 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혼인자유가 가정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현행혼인법은 총칙에 규정된 남녀평등의외에도 관련조항에서 부녀는 인신과 재산관계에서 남자와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평등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쌍방은 각자의 성명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생산·업무·학습과 사회활동에 참가할 자유가 있으며,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평등처리권이 있고, 부부쌍방은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유산을 상호계승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쌍방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남녀간의 가정관계에 있어서의 평등한 지위를 충분히 표명한 것이며, 정치·경제·업무·교육 등 각 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고 사실적인 것이다.

4. 부녀·아동과 노인의 합법권익 보호

부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남존여비의 구사상·구관습이 단기간내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기 때문에 남녀는 경제·문화 및 사회생활 등 각 방면에 있어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 혼인법은 남녀평등 원칙을 규정하는 외에 부녀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혼인법에는 여자측의 임신기간과 분만 후 1년이내에 남자측은 이혼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혼시 분할하는 부부의 공동재산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여자측의 권익을 배려하며, 이혼시 만일 어느 일방의 생활이 곤란할 경우 다른 일방이 적당한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녀의 인신과 재산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위법범죄행위를 엄단하여 부녀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의 관철집행을 보장한다라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

아동보호·노인존경·노인부양은 매 국민이 반드시 해야 하는 법률의무이며 일종의 사회도덕이다. 현행 혼인법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교육·가정교육·보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 또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인을 봉양하고 부양하는 데에는 반드시 물질상의 공양과 정신상의 교감·생활상의 배려·정신상의 위로 등 각 방면이 포괄되어야 한다. 아동의 합법권익을 무시하고 아동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행위 및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며 배우자를 사망으로 잃은 노인의 재혼자유권리에 간섭하거나 노인재산권익 침해 및 노인을 학대·유기하는 등의 행위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로 저지해야 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결혼조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

결혼은 혼인의 성립이라고도 부르며 혼인법률관계를 건립하는 행위이다. 혼인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려면 남녀쌍방은 반드시 일정한 결혼조건과 결혼절차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결혼조건

(1) 중국현행혼인법이 규정한 결혼의 필수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반드시 남녀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 혼인법 제4조는 “결혼은 반드시 남녀쌍방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타 일방에 대한 강압이나 어떠한 제3자의 간섭은 허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결혼의 결정권이 완전히 당사자 본인에 속한다는 것이다. 부모·친우 혹은 기타의 사람이 애호와 관심을 가지고 결혼당사자에게 건의와 충고로써 당사자에게 전면적인 혼인문제의 고려에 도움을 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가능하나, 혼인당사자의 권리를 간섭·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드시 결혼연령에 도달하여야 한다. 혼인법 제5조는 “결혼연령이 남자는 22세, 여자는 20세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만혼만육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의 국정과 민중의 희망에 부합하며 가족계획의 실시와 사회발전에 유리하다.

③ 반드시 일부일처제에 부합하여야 한다. 결혼을 원하는 남녀 쌍방은 반드시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자연사망·사망선포 또는 이혼후에야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혼이 된다.

(2) 결혼의 금지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한 범위이내의 친속간 결혼은 금지한다. 혼인법 제6조는 “직계혈친과 3대이내의 방계혈친”은 결혼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3대이내의 방계혈친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즉 같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촌·내외종사촌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같은 조부모를 가진 사촌간은 역대로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내외종사촌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전통혼인관습에 대한 일대개혁이다.

② 혼인법 제6조의 규정 “나병에 걸려 치료하지 않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질병”은 결혼을 금지하는 질병으로 결혼할 수 없다. 그 목적은 인구의 질을 제고하고 다음 대의 건강을 보장하며 민족의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2. 결혼신고

현행 혼인법 제7조는 “결혼을 요구하는 남녀쌍방은 반드시 몸소 혼인신고기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본 규정에 부합하면 신고를 받아주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취득하면

부부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신고의 이행은 혼인성립의 형식요건이며, 혼인관계성립의 법정절차이다. 혼인신고를 처리하는 기관은 농촌의 경우 향(鄉), 민족향, 진(鎭) 인민정부이며, 도시의 경우는 가도(街道：區아래의 행정단위)사무처 또는 구(區)인민정부 및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인민정부이다.

이혼조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

이혼은 배우자의 생존기간중 혼인관계를 해제하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써 혼인관계의 종지를 뜻한다. 부부의 이혼은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에 있어 일련의 법률적 결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교육과 친족관계의 변경 등과도 관계되는 문제로 가정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1. 이혼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원칙의 범위

중국혼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의 감정이 이미 확실히 파괴되어 중재가 효과를 볼 수 없으면 이혼을 허가하는 법정이유(조건)가 된다. 즉, 이혼의 허가 및 불가는 반드시 부부의 감정이 이미 확실히 파괴되었는지,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원칙이 된다. 사법적인 관례에 따라 부부의 감정이 파괴되고 화해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아래의 몇 종류에 해당한다.

① 일방이 결혼을 금지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일방이 생리적인 결함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성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치료가 어려운 경우

② 결혼전에 이해가 부족한 채 경솔하게 결혼하여 결혼 후 부부간의 감정을 배양할 수 없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③ 결혼전에 정신병을 숨기고 결혼하여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거나 결혼전 상대방이 정신병을 앓고 있음을 알고 결혼하였거나, 일방이 부부 공동생활기간에 정신병에 걸려 오랫동안 치료하였으나 완쾌되지 않는 경우

④ 일방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결혼신고시 허위기만하여 결혼증을 편취한 경우

⑤ 쌍방이 결혼신고 후 동거생활을 하지 않고 화해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⑥ 독단적인 혼인·매매혼의 경우에는 결혼 후 일방이 즉시 이혼을 제기하거나, 비록 여러 해를 공동생활하였으나 부부간의 감정을 배양할 수 없는 경우

⑦ 감정불화로 인하여 만3년이상을 별거하고 확실히 화해의 가능성이 없거나 인민법원의 이혼불가판결 후 또 만1년을 별거하면서 부부의 의무를 서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⑧ 일방이 타인과 간통·불법동거를 하여 교육처분을 거쳤으나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과실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 이혼을 기소하거나, 과실자가 이혼을 제소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교육·처분 등의 비판을 거치거나 인민법원이 이혼불가판결을 하였음에도 과실자가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확실히 화해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⑨ 일방이 이중혼인 경우 상대방은 이혼을 제기한다.

⑩ 일방이 무위도식·도박 등의 악습이 있어 가정의무를 이행

치 않고 수 차례 걸친 교육에도 고치지 않아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경우

⑪ 일방이 법에 의해 장기적인 징역을 판결받거나 그 위법·범죄행위가 심각하게 부부의 감정을 손상하는 경우

⑫ 일방이 행방불명된 지 만2년이 경과하여 상대방이 소재불명공고를 거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⑬ 상대방에게 학대·유기를 당하거나 상대방 친족에게 학대를 받거나 상대방 친족을 학대하여 교육을 거쳐도 고쳐지지 않고 다른 일방이 용서하지 않는 경우

⑭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부부의 감정이 확실히 파괴되기에 이른 경우

2. 이혼절차

부부쌍방의 이혼요구는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혼인법 제24조는 “남녀쌍방이 스스로 이혼을 원할 경우는 이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혼인신고기관에 가서 이혼을 신청하며, 혼인신고기관은 쌍방이 확실한 자원에 의하고, 자녀와 재산에 대해 이미 적절한 처리를 했으면 즉시 이혼증을 발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쌍방의 자원에 대한 이혼에는 반드시 부부쌍방이 이혼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가지는 것이며 일방의 의견을 제기하거나 기만·압박 또는 모종의 목적과 동기에 따라 허위로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쌍방은 또 자녀 및 재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이혼 후 자녀를 어느 쪽이 실제로

양육할 것이며 양육비의 분담과 지급방식 및 부부공동재산의 분할·공동채무의 청산 등에 일치된 협의에 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기관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쌍방의 독자적인 어떠한 이혼협의도 중국에서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소송절차에 의한 이혼

부부의 일방이 요구한 이혼에 대해 다른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이혼을 고집하는 일방은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혼인법 제25조 제1항은 “남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기관이 중재를 진행하거나 또는 집행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는 중국의 민사심판과 사회군중업무에 있어서의 우량적인 전통이다. 본 항중의 “관련기관이 중재를 진행한다.”는 소송외의 중재를 말한다. 이혼에 있어서 이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기관·부녀연맹·공회 등 군중단체, 가도(街道)각급중재조직·변호사사무소 등 관련기관이 진행하는 중재를 가리킨다. 그 결과는 화해를 달성할 수도 있고 이혼협의를 도달하여 남녀 쌍방이 혼인신고 기관에 가서 이혼신고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중재가 실패하여 이혼을 고집하는 일방이 직접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송외적인 중재절차는 이혼소송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인민법원이 심리과정중에 실시하는 중재는 소송중의 중재라 부른다. 혼인법 제25조 제2항에는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의 심리에 있어 반드시 중재를 실시하며, 만일 감정이 이미 확실히 파괴되어 중재가 효과가 없을 때에는 이혼을 허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의 중재는 이혼사건심리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 부부의 감정이 이미 확실히 파괴되어 중재가 효과가 없을 때에만 법원은 그 이혼을 판결하며 반대로 부부간의 감정이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면, 중재가 효과가 없더라도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만에서 본토로 온 원 대만공군중령 임현순은 1989년 1월 하북성 석가장시의 인민법원에 그의 대만부인 진설정과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만의 왕미상 등 두 명의 변호사는 석가장시 인민법원에 출정하여 진설정을 위한 변론을 하였으며, 석가장시 인민법원은 같은 해 5월 25일 임의 패소를 판결하여 임현순과 진설정의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 판결이유를 “본원은 쌍방이 자유연애결혼을 하였으며 결혼 후에도 쌍방의 감정이 양호하였고, 자녀도 있다고 알고 있으며, 쌍방이 비록 생활상의 잡다한 일로 인하여 과거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쌍방의 감정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니 쌍방은 부부간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 상호 이해·양보하고 화해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진설정의 변호사인 왕미상은 진설정의 승소는 대만민중의 본토에서의 행위도 중국법률의 보장과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진설정도 대만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석
가장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하며 이 판결이 나의 결백을 증
명해 주었으며, 장차 우리 모자 3인의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
다.”라고 말하면서 해협양안이 통일되어서 전 가족이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한다고 표명하였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그 본토잔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 관한 처리

해협양안간의 장기적인 단절은 일부 대만으로 간 인원의 가정에 변동을 일으켰다. 어떤 일방은 이미 본토의 법에 따라 이혼수속을 마쳤으며, 어떤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재혼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일방 또는 쌍방은 장기간에 걸쳐 타인과 부부의 명의로 동거생활을 하는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원인으로 조성된 혼인분류는 해협양안인들의 장기적인 격리라는 실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혼인가정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일부일처제의 기본원칙에 근거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히 처리한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그 본토에 남아있는 배우자간에 발생하는 혼인분류를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해결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래에 열거한 상이한 각종 상황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인민법원이 이미 이혼을 판결한 안전에 대한 처리

쌍방이 격리된 후 인민법원이 이미 이혼을 판결한 안전에 대해서는 일방소송 또는 쌍방소송을 막론하고 또 상대방이 이 판결서를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다. 이는 이미 법원이 이혼을 판결한 안전은 즉시 이혼의 법률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혼후에 지금 다시 복혼관계를 요구하는 경

우는 허가가 되는가 안되는가? 이는 반드시 상이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처리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이 이미 이혼을 판결한 안건은 만일 쌍방이 모두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부부관계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미 내린 판결을 취소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2) 이미 이혼을 판결받은 후 일방 또는 쌍방이 각기 따로 결혼한 경우 만일 재혼한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현재 부부관계의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혼인신고기관에서 다시 결혼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3) 이미 이혼을 판결받은 후 일방 또는 쌍방이 각기 따로 결혼한 경우 만일 재혼한 배우자가 존재하다면 반드시 이혼수속을 필한 후에야 비로소 원래의 배우자와 새로이 결혼할 수 있다.

2. 쌍방이 격리된 후 이혼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혼인분류에 대한 처리

쌍방격리 후 이혼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토의 일방이 또 타인과 결혼하거나 장기적으로 타인과 부부관계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마땅히 이 혼인관계를 승인해야 한다. 현재 대만으로 간 일방이 돌아와서 본토의 일방과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 이 이혼은 허가 되는가? 인민법원은 반드시 중국 혼인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본토의 일방과 재혼한 배우자의 이혼조건 심리시 중재를 실시한다. 만일 이미 확실히 감정이 파괴되었거나 중재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을 허가한다. 만약 감정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이혼을 판결하지 아니한다.

대만으로 간 일방이 본토로 돌아와 정착한 후 인민법원에 대만의 배우자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이를 수리해야 하며 혼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혼여부를 판결해 주어야 한다.

쌍방이 격리된 후 이혼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본토와 대만에서 각기 재혼한 경우 이러한 특수원인으로 형성된 혼인관계는 이중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주동적으로 간여하지 아니하며, 만일 그중의 일방 당사자가 그 배우자와의 이혼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이혼안건으로 처리한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본토에 남아 있는 배우자간의 혼인관계는 그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민법원은 실사구시에 입각하여 상술한 상황을 처리해야 각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대만과 관련된 혼인의 부부공동재산 문제

대만과 관련된 혼인의 부부공동재산은 주로 대만으로 간 일방이 대만으로 가기 전 그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기간에 형성하여 본토에 남겨놓은 재산을 일컫는다. 이러한 종류의 재산은 중국전국 전 또는 건국초기에 형성되었고 본토와 대만의 부부재산제도의 입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인정과 재산분할에 특수성이 있다. 중국혼인법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존속하는 기간중에 얻은 재산은 부부의 소유로 되며, 쌍방이 따로 약정한 것은 제외한다. 부부는 공동소유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남녀쌍방이 부부관계를 시작한 날로부터 쌍방의 이혼 또는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지될 때까지 각자 또는 공동으로 상속·증여받은 소득 및 상술 소득으로 구매한 재산은 모두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한다. 그리고 대만에서 입법중인 “법정재산제”는 “연합재산제”를 택하고 있다. 연합재산중 처의 혼전재산 및 혼후에 상속 또는 기타 무상으로 획득한 재산은 처의 고유재산으로 되며 처에게 소유권이 있다. 처의 고유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은 남편의 소유가 된다. 기타 처의 고유재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모두 남편의 소유이다. 모든 연합재산, 즉 처의 고유재산과 남편소유의 재산은 모두 남편이 관리한다. 연합재산제도의 규정에 따라 부부간에는

단지 “연합재산”만이 있으며 “공유재산”은 없다. 즉 처의 노동 수입도 남편의 소유가 된다. 연합재산을 분할할 경우, 처는 단지 고유재산만을 취득한다. 이는 남편의 재산지위가 처의 재산 지위보다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토와 대만간의 부부재산제도의 모순은 해협양안 부부의 재산문제처리에 곤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1988년 8월 이와 같은 종류의 대만과 관계된 민사사건의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만으로 간 일방이 원배우자에게 혼전의 재산을 청구하거나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만일 이 재산이 과거 몇 십년간 원배우자가 자녀를 양육·교육하거나 부모를 봉양하거나 또는 가정의 기타 생활소비에 쓰여졌다면 인민법원은 응당 그 철회를 설득하거나 소송청구를 반려해야 한다.

만일 대만으로 간 일방이 요구하는 원배우자의 혼전재산 또는 분할을 요구하는 공유재산의 액수가 크고 그 재산이 아직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원배우자·자녀 등 생활을 참작하여 일부분을 대만으로 간 인원에 분할해 줄 수 있다.

과거 재산문제에 대한 처리는 원칙상 세밀한 처리보다는 개괄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이는 몇십년에 걸쳐 재산의 변화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몇십년간의 권리와 의무상황을 세밀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리방법이 쌍방당사자에게 아마도 더욱 좋은 것이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그 본토잔류 자녀간의 양육·부양과 입양문제

부모 자녀간의 권리의무문제에 대해서 중국혼인법 제15조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양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미성년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 봉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부모에 대한 봉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노동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한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본토에 남아있는 자녀간의 부양·봉양관계는 위의 혼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해협양안간에는 장기적인 단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으로 간 인원은 본토에 남아있는 자녀에 대해 양육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현재 대만으로 간 일방이 본토로 돌아온 후, 본토의 일방은 대만에서 돌아온 일방에 대해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과거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인민법원은 원칙상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녀양육비의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자녀의 양육은 부부쌍방의 의무이

다. 부부쌍방이 모두 있다면 부부쌍방이 공동으로 이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일방이 특수한 원인으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할 수 없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 의무를 부담한다. 대만으로 간 일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양안단절이라는 객관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이며, 그가 주관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본토의 일방이 이미 전부부양의무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기타 양육·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자, 예를 들어 기타 친우가 대만으로 간 일방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봉양한 경우에는 대만으로 간 자가 상황을 참작하여 보상해야 한다.

봉양문제에 있어, 만약 대만으로 간 자가 본토로 돌아와 정착한 후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본토의 자기 자녀에게 봉양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률규정과 자녀의 가정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자녀는 대만으로 간 자가 당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의 봉양책임을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만으로 간 자가 본토에 남아있는 자녀가 만일 이미 타인에게 합법적으로 입양된 경우에는 입양관계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 생부 또는 생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입양관계의 성립에 따라 양부모와 양자녀간에는 일종의 유사혈족관계가 발생하고 생부모와 양자녀간의 권리와 의무가 해제되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부 혹은 생모는 이미 타인에게 입양된 자녀에 대해서 그 봉양의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입양된 자녀가 생부 또는 생모의 본토귀환으로 인해 입양관계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대만으로 간 자가 입양관계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양부모·양자녀·생부모 삼자관계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한다.

대만동포와 본토동포간의 혼인신고처리에 관한 관련규정

대만당국이 일반인의 본토친지방문을 허가한 이래 해협양안 민중간의 왕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본토동포와의 결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관련기관은 대만동포와 본토동포간의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1. 이미 본토에 정착한 대만동포가 본토동포와의 결혼을 요구하는 경우

본토정착이라 함은 1979년 1월 1일 이후 본토에 정착하는 대만동포를 가리킨다. 이미 본토에 정착한 대만동포가 본토동포와의 결혼을 요구하는 때에는 1986년 3월 15일 민정부(民政部)가 공포한 《결혼신고방법》에 따라 縣급이상의 민정기관이 관리한다. 결혼신고를 신청하는 대만동포 일방당사자는 본토정착 후 소재기관 또는 호주소재지의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가 발급하는 혼인상황증명과 본토정착이전의 혼인상황증명을 혼인신고기관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그 중 본토정착이전에 대만에서 거주한 자는 대만의 공증기관이 발급하는 무배우자증명이나 공증을 거친 호적등기부 복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만을 떠난 후 홍콩·마카오지구에서 반년이상 거주하다가 본토에 정착

하는 경우에는 중국사법부의 위탁을 받은 홍콩 변호사가 확인한 혼인상황증명 또는 마카오의 혼인 및 사망등기국이 발급하는 혼인상황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만을 떠난 후, 반년이상 외국에 거주하다가 본토에 정착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국 공증기관이 발급하고 중국의 현지 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을 거친 무배우자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상술한 증명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본토거주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무배우자성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친지방문·여행·상거래로 본토에 오는 대만동포가 본토동포와 결혼하는 경우

해협양안의 상황 때문에 임시로 본토에의 친지방문·여행·상거래를 하러 오는 대만동포가 본토동포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쌍방당사자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인을 명백히 설명한 후 완곡하게 저지한다. 이러한 저지를 받고도 쌍방당사자가 여전히 결혼을 요구하면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혼인신고기관이 이를 수리한다. 예를 들면 상해시의 경우 상해시 인민정부 혼인신고처가 수리를 책임진다. 대만동포 일방의 당사자가 결혼신고를 신청하는 때에는 혼인신고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홍콩중국여행 대리료 처리하거나 공안기관의 변방검사기관이 서명발급하는 유효기간 내의 《대만동포여행증명》 또는 중

국의 주외대사관·영사관이 서명발급하고 “대만동포”라고 적혀진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여권》

② 공안기관이 발급하는 《임시호구증명》

③ 본인신분증과 혼인상황증명, 상술한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무배우자성명서》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④ 만일 당사자가 본토에서 대만으로 가서 정착한 경우 다시 본토에서의 친지방문·여행·상거래기간 중 본토동포와의 결혼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토의 원거주지 공증기관이 공증한 본인이 본토를 떠나기 전 배우자가 없었으며 또는 배우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배우자를 돌보고 있지 않거나 사망했다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이미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대만동포가 본토동포와 결혼하는 경우

이미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대만동포가 본토동포와 결혼하는 경우는 만일 이 대만동포가 대만 또는 홍콩·마카오지구에서 거주한 경우 대만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치거나 중국사법부의 위탁을 받은 홍콩변호사의 증명 또는 마카오의 혼인 및 사망등기국이 발급하는 이혼증명 또는 배우자사망증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상술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거친 대만 혹은 홍콩·마카오신문에 실린 당사자의 이혼증명서나 공고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증을 거치지 않은 복사물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미 이혼하였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국외거주 대만동포는 그 이혼증명 또는 배우자사망증명을 규정에 따라 공증·인증하는 수속을 해야 한다.

4. 이미 국외 또는 홍콩·마카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만동포가 본토동포와 결혼하는 경우

이미 국외 또는 홍콩·마카오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만동포는 **省급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혼인신고기관에서** 이를 수리한다. 화교는 신고신청시 반드시 아래의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① 중국 주외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하는 본인의 여권

② 중국 주외대사관·영사관이 인정하는 거주국의 공증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의 무배우자증명 또는 중국 주외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증명

홍콩·마카오의 영주권을 취득한 대만동포는 신고신청시 반드시 아래의 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① 홍콩·마카오주민신분증, 홍콩·마카오동포 귀향증 또는 선원증

② 중국사법행정기관이 위탁한 홍콩변호사가 확인한 홍콩혼인등록처 발급의 혼인상황증명

③ 마카오행정국 또는 경찰국이 발급하는 혼인상황증명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만동포가 본토동포와 결혼하는 경우는 반드시 외국인신분으로 **省급 인민정부가 지정하는 혼인신고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아래에 열거한 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 ①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신분·국적증명
- ② 공안기관이 서명·발급하는 《외국인거류증》이나 외사기관이 발행하는 신분증명 또는 임시 중국입국·체류증명
- ③ 본국 외교부와 중국 주외대사관·영사관이 인정하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상황증명 또는 현지의 중국대사관·영사관이 발급하는 혼인상황증명

V. 遺 產 相 續

중국상속법의 주요 특징

중국의 상속법은 사회주의경제 기초위에 건립된 것으로 수천년을 이어져 오던 일족계보의 상속제도를 타파하였다. 개인소유의 합법적 생활자료와 법률이 허가하는 개인소유 생산자료를 포함하는 공인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모두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1985년 4월 10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심의·통과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은 중국의 첫번째 현행 상속법이다. 그 내용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1. 남녀평등의 원칙을 관철하고 부녀의 상속권을 보호한다.

수천년 이래로 중국역사에서 실시된 상속제도는 부부(父母)·자자(子子)의 일족계보의 상속으로 상속권은 남자만이 향유하게 되어 처는 남편에 대해, 딸은 부모에 대해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헌법·혼인법에 남녀평등의 원칙과 이의 관철집행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나 봉건제도와 전통적인 풍습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부지역, 특히 농촌에서는 부녀의 상속권이 여전히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딸의 합법적인 상속권을 부정하는 곳이 존재한다. 특히 출가한 딸의 합법적인 상속권은 왕왕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한 부녀의 상속권, 즉 과부가 재혼하여 그 전남편의 유산을 상속하여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왕왕 남자측의 부모와 기타 친족의 저지를 받는다. 이의 해결을 위해 상속법은 재차 상속권의 남녀평등, 동일한 촌수의 경우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아들과 딸이 평등한 상속권이 있으며, 과부가 재가할 경우 법에 의해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느 사람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노인의 봉양과 어린이의 육영을 관철하고 노인공양을 촉진한다.

노인에 대한 봉양, 어린이에 대한 육영은 중국민족 역대로 수천년간 이어 내려오는 우량전통이며 미덕이다. 중국의 상속법은 상속권·유산상속의 비율 등에 있어 노인공양에 유리하며 또 이를 장려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을 주로 봉양하는 경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더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가 장인·장모에 대해 봉양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의 상속인으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부양할 능력이 있거나 조건이 구비되었는데도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배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하며, 노인을 고의로 살해·유기·학대하는 상속인에게는 그 상속권을 취소 또는 박탈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환자를 보살

피는 상속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상속법은 생활이 특히 곤란한 노동능력이 결핍된 상속인에 대해 유산분배시 응당 고려를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상속법은 상속권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비록 그가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그가 노인의 생전에 많은 봉양을 했다면 적당한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법에는 또 유산증여·부양협약에 관한 규정도 있다. 이는 협약에 따라 부양인이 노인의 생존시 봉양과 사망시 장례의 의무를 지면 유산증여를 받는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노인생전의 보살핌·부양 및 만년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장점이 있다.

중국상속법은 이상의 두가지 주요 특징외에 협상정신을 강조하고 상속인간의 상호이해와 양보·화목과 단결정신의 제창, 상속문제의 협상에 의한 처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상속법의 독창적인 일면이다.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

중국상속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두 종류가 있다. 법정상속은 바로 법률로 직접 규정된 상속인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는 것으로 법정상속인의 범위·상속순서와 유산의 분배 등을 법률이 직접 규정한다.

1. 법정상속인의 범위

누가 상속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주요 근거는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혼인관계·혈연관계 및 합법적 입양관계를 구비하고 있는가 이다. 이는 상속권이 비록 중요한 재산권이긴 하지만 일정한 신분관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상속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조부모와 외조부모를 포함하며, 이들은 법에 의거 유산상속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혼인관계의 효력에 맞추어 발생한다. 따라서 사망한 자의 법정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과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이미 이혼한 경우 또는 법률이 그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동거·이중혼 등은 모두 배우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상속법이 가리키는 자녀는 결혼에 의해 낳은 자녀·비결혼에 의해 낳은 자녀·양자녀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자녀를 가리킨다. 상속법이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상속권은 성별·연령·기혼·미혼·친자·입양·혼생·비혼생을 가리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상속법이 가리키는 부모는 친부모·양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들은 그 자녀·양자녀와 부양관계에 있는 계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유산상속의 권리가 있다.

상속법이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부모의 형제자매와 동부이모 또는 동모이부의 형제자매, 입양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계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법정상속순서

법정상속순서는 법정상속인의 유산상속 선후순서를 가리킨다.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정상속인의 범위내에 있는 모든 친속이 동시에 유산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과 피상속인간의 혈연관계의 원근과 경제적 의존정도에 근거하여 선후순서를 확정한다.

상속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유산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다.

제1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위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되면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을 제2순위 상속인이 계승할 수 없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제2순위 상속인

이 상속한다. 상속인이 없거나 아무도 유산상속을 하지 못하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집체소유로 된다.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와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의 상속권과 상속순위문제는 상속법 제12조가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해,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가 장인·장모에 대해 부양의 의무를 다한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며느리와 시부모·사위와 장인·장모간에는 본래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상속권을 향유할 수 있다. 소위 “부양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주요 경제근원을 제공하거나 생활상의 보살핌 등에 있어 중요한 부조를 한 경우 등은 그 재혼여부에 관계없이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유산상속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이에 대해 누구도 간여해서는 아니된다.

대위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피상속인 자녀의 아래직계혈족(예를 들면 손자녀)이 대리상속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 갑의 아들 을이 갑보다 먼저 사망하고 그 후 갑이 사망한 경우 당시 을의 자녀 병과 정이 그 부친 을의 상속순위를 계승하여, 을이 상속받는 유산의 상속을 하는 것이다. 상속법의 규정에 따르면 손자녀·외손자녀는 일반적으로 조부모·외조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없으나 대위상속에 부합하는 상황아래서는 대위상속으로 그 부모

가 상속받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3. 유산분배의 원칙

피상속인 사망 후, 만일 동일순위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는 상속인들의 유산분배액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중국상속법 제13조는 “동일순위상속인들의 유산상속분배액은 통상 균등해야 한다. 생활이 특히 곤란하고 노동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산분배시 응당 배려해 준다. 피상속인에 대해 주요 부양의 의무를 다 했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은 더 많은 유산분배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능력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분배시 분배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해야 한다. 상속인들의 협상동의를 거치면 균등하지 않게 분배해도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동일순위의 몇 상속인들이 기본조건이 같거나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고 상속인들의 경제사정이 기본적으로 같을 경우는 평등하게 분배하며, 노인을 봉양하고 어린이를 양육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생활이 특별히 곤란하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속인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장애자·환자·미성년자에게는 유산분배시 상속액을 많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권리와 의무의 일치원칙에 의거해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상속인에게는 많이 분배하며, 부양능력과 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많은 상속인에게는 분배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일부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권을 향유할 수 없으나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법에 따라 적당한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상속법 제14조의 두가지 경우는 상속인 이외의 유산취득자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사망자가 생전에 위탁한 부양자이다. 이는 상속권자외에도 피상속인이 위탁한 부양자가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피상속인간에 어떠한 부양과 피부양의 권리의무관계가 어떠한 부양과 피부양의 권리의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상속법의 이 규정에 의해 부양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유산분배시 적당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취득한 유산분배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인의 분배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둘째는 사망자에 대해 생전에 비교적 많은 부양을 한 경우이다. 이는 실제생활에 있어 일부의 사망자와 혈연관계나 부양관계가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이웃·친구 또는 비교적 먼 친척 등이 사망자와 법률적으로 상호부양의 의무가 없음에도 사망자 생존시 주동적으로 물질적·생활적 방면에 부양과 부조를 주어, 중국인이 노인을 공경하며 노약자를 부조하는 미풍양속을 발양하여 공민상호간의 상호부조와 미풍양속의 발전을 장려한 경우로써, 상속법의 규정에 의해 적당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다.

유언상속에 관한 규정

유언상속이라 함은 사망자의 생존시 유언에 따라 상속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유언상속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사망시 여하히 자기소유재산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는 권리로서 국민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법률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1. 유언은 유언상속권을 발생케 하는 법률적 근거이다.

유언상속이 발생하는 법률근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언이다. 유언이란 유언인이 생존시에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법률규정에 의거한 방식으로 그 유산 또는 기타사무에 대해 내린 개인처분으로 유언인의 사망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다.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유산의 명칭·수량의 지정 및 유산상속인·증여인·유산집행인의 지정과 법정상속인·유언상속인·유산증여인에 대한 유산분배액결정 및 모종유산에 대한 용도지정이나 사용요구 등이다. 이는 법정상속의 범위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정상속인의 유산상속액을 바꿀 수 있다.

2. 유언상속인

유언상속인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유언의 직접적인 유산상속인이다. 그는 유언인이 유언에서 지정한 상속인으로 지정상속인

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유언상속인의 지정은 유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에서 유언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범위내의 한명 또는 수명으로 한정된다. 이는 상속법 제16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바로 중국 유언상속인의 범위는 법정상속인의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만일 유언인에게 수명의 법정상속인이 있고, 유언인이 유언에서 한 사람의 법정상속인을 유언상속인으로 지정하여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기타 법정상속인의 상속액은 당연히 피상속인이 취소한 것으로 본다.

공민도 유언으로 개인의 재산을 국가·집체에 증여하거나 법정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산의 증여에 속하며 유산상속은 아니다. 여기서 유언상속인의 범위와 유산증여인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유언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 국한되며, 유산증여인의 범위는 유언상속인 범위보다 광범위하여 국가, 집체조직, 사회조직, 법정상속인 이외의 기타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다.

3. 유언의 형식

유언의 형식은 유언인이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유언의 형식은 유언의 법률적 효력과 관계되며 당사자의 상속권 취득 및 상실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법률은 유언인의 자기유산처분 형식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

중국상속법 제17조에 명시된 합법적인 유언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1) 공증유언 : 가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친 유언이 공증유언이 된다. 유언공증의 처리는 유언인이 직접 공증기관에 가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며, 만일 유언인이 행동불편 등의 특수이유로 직접 공증기관에 갈 수 없는 확실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공증원이 유언인의 소재지에 와서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자필유언 : 자필유언은 유언인이 친필로 작성·사인하고 년월일을 명기한다.

(3) 대필유언 : 대필유언은 반드시 두명 이상의 현장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한명이 대필하고 년월일을 명기하고 기타 증인과 유언인이 사인한다.

(4) 녹음유언 : 녹음형식으로 유언하는 것으로 반드시 두명 이상 증인의 현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소위 “현장증명”이라 함은 증인이 직접 유언인의 유언녹음제작 전과정에 참여하고 유언의 녹음에 있어 증인이 직접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성명·증명시간·지점을 녹음하는 것을 가리킨다.

(5) 구두유언 : 구두유언의 형식은 모든 상황에서 다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상속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언인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만 구두유언이 성립된다. 구두유언에는 두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소위 “긴급한 상황”이라 함은 유언인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중대한 군사행동·심각한 자

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즉각 유언을 하지 않으면 유언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언인이 구두유언형식으로 유언하는 것을 가리킨다. 유언인의 구두유언을 성립시킨 긴급한 상황이 제거되면 유언인은 서면 또는 녹음으로 그 유언을 대체하며 기존의 구두유언은 무효가 된다.

4. 유언의 유효조건

유언의 유효조건이라 함은 유언이 유언인의 사망 후에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필수조건을 가리킨다. 유언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유효조건이 필요하다.

(1) 유언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유언제정시 유언인이 민사행위능력이 있어야만 자기의 의사를 진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자기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 법률적 결과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행위의 능력이 없는 경우나 민사행위를 제한받는 경우는 자기의 재산처분행위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나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는 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인이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었다 함은 유언시 행위인의 상태, 유언전 또는 유언후 행위인의 행위능력의 유무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2)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유언은 유언인의 진실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협박·기만에 의해 행

해진 유언은 무효이다. 따라서 유언인이 타인의 위협·강압에 의해 또는 기만으로 인식의 착오가 생겨 작성된 유언은 유언인의 진실된 의사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유언이 유언인의 직접구술이나 친필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유언은 여전히 무효이다.

타인이 위조한 유언은 피상속인의 진실한 의사가 아니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유언인이 한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에 의해 속임수로 고쳐지는 경우 고쳐진 후의 유언은 진실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고쳐진 후의 유언은 무효이다.

(3) 유언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유언의 내용이 법률·사회공공이익과 사회도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유언은 무효이다.

중국상속법 제19조는 “유언은 반드시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근거가 없는 상속인에 대해 필요한 유산분배액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유언인이 행사하는 유산처분권에 대해 필수적인 제한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존시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근거가 없는 법정상속인이, 예를 들면 노년의 부모·미성년자녀등에 대해 법률상의 양육·부양·봉양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생존시 자기재산에 대한 처분을 유언한 경우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근거가 없는 법정상속인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고려하고 그들을 위해 필요한 유산액을 보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언은 무효이다. 만약 피상속자가 그 전부재산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남은 재산은 여전히 노동능력이 부족이 부족하고 생활근거가 없는 법정상속인이 상속한다. 만일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그 유언의 유효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소위 “필요한” 유산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본생활을 만족시키는 액수를 가리키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때와 장소에 따라 정한다. “필요한” 유산액과 “상속해야 하는 유산액”은 다르며 상속해야 하는 유산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상속인이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근거가 없는 지의 여부는 반드시 유언일 사망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4) 유언은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형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유언의 변경과 취소

유언을 한 후, 유언인이 모종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 원래의 유언을 일부수정하거나 그 전부를 취소하는 것은 법률이 허가하는 것이다.

유언인이 자기가 한 유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유언의 변경이라 한다. 만일 유언인이 자기가 한 유언의 전부를 취소하게 되면 이는 유언의 취소가 된다. 유언인은 새로운 유언방식을 채택하여 유언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유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존 유언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성명어로 할 수 있다. 상속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필유언·대필유언·녹음유언과 구두유언은 취소하거나 공증유언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는 바로 공증유언의 효력이 기타유언 형식보다 크다는 것이

다. 공증유언의 변경에는 공증기관의 공증수속을 거쳐야 한다.

만일 유언인이 잇달아 여러 개의 유언을 작성하고, 그 내용이 상호저촉되는 경우는 비록 유언인이 시기가 앞선 유언의 취소 성명이나 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언인이 나중의 유언으로 앞의 유언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속법 제20조는 “여러 개의 유언이 있고 그 내용이 저촉되는 경우는 최후의 유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이 여러 개의 유언중 공증유언이 있는 경우는 최후의 공증유언을 기준으로 하며, 공증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유언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상속과 유언상속과의 관계는 상속시작시 피상속인이 생존시 남긴 합법적인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지만, 만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나 또는 유언이 무효인 경우 또 유언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은 법정상속을 적용하는 관계가 있다.

유산범위에 관한 규정

유산이라 함은 공민이 사망시 남기는 개인의 모든 합법적 재산을 가리킨다. 유산중에는 일정한 재산권리와 일정한 재산의무가 포함된다. 상속인이 일단 상속을 접수하게 되면, 이는 상속 유산중의 재산권리를 계승하는 동시에 재산의무를 계승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유산중에는 재산소유권·채권이 있으며 동시에 채무도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재산소유권과 채권을 상속받는 동시에 채무도 계승해야 한다. 상속인이 만약 재산권리의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국상속법 제3조는 유산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민의 수입, 예를 들면 공민의 임금·장려금 및 기타 노동수입과 증여·상속으로 얻은 재산, 임대수입과 예금이자수입 및 공민이 두뇌창작활동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2. 공민의 가옥·저축과 생활용품

공민의 가옥은 공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자료로써 공민의 자가거주용·임대용·영업용 등이 포함된다. 공민의 생활용품에는 의복·장식물·가구·가전제품 등 일상용품이 포함된다.

3. 공민의 수림·가축과 가금

공민자용의 주택지와 자류지·자류산에 심은 수목·과수·대나

무 등과 자기가 사육하는 말·소·양 등 가축 및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를 말한다.

4. 국민의 문물·도서자료

국민의 문물이라 함은 국민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서화·예술품 등을 가리킨다.

5. 법률이 허가하는 국민소유의 생산자료

이는 법률이 허가하는 상공경영에 종사하는 국민 또는 농촌 집체조직 구성원이 보유하는 자동차·트랙터·기계선박·농기구·원동공구 등 각종의 생산자료와 화교·홍콩·마카오·대만동포·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생산자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산으로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6. 국민의 저작권·특허권중의 재산권, 그러나 유산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7. 국민의 기타 합법적인 재산으로 국고채권·채권·수표·주식 등 유가증권과 재물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유산처리중의 몇 가지 문제

1. 상속의 개시

상속법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실제로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비로소 법률규정과 법정절차에 따라 유산을 계승할 수 있고, 그 피상속인의 유산범위와 유산가치, 즉 피상속인이 어떠한 재산을 남겼으며 채권·채무가 얼마가 되는지 등등이 확정되며, 또 몇명의 상속인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이 시작되어야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고,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리상속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속의 통지와 유산의 보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상속인은 먼저 그 통지의무를 책임지고 즉시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개시의 사실을 기타 상속인과 유언집행인에게 통지하여 상속인의 상속권행사와 유언집행인의 집행권행사를 차질없게 한다. 만약 상속인 전부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모르거나 비록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알았더라도 모종의 이유로 인해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 상속통지의 의무는 피상속인의 생전소재기관 또는 주소지의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실행한다.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산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유산을 받기 이전까지 유산은 반드시 누군가가 보관책임을 져야 한다. 상속법 제24조는 “유산을 보유하는 사람은 응당 적절히 유산을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사람도 착복하거나 다투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산의 보관은 통상 상속지점에 있는 상속인이 보관을 책임지며, 만일 상속지점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생전소재기관 또는 주요 유산소재지의 기층조직이 이 보관을 책임짐으로써 유산의 안전을 보증한다.

3. 유산의 분할

유산분할은 각 상속인이 각자의 응당상속액에 의거하여 유산에 대한 분할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유산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유산과 공유재산이 혼재하는 때에는 유산과 기타인의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 상속법 제26조는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취득한 공동소유의 재산은 약정한 것을 제외하여 만약 유산을 분할할 경우에는 먼저 공동소유재산의 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한다. 부부공유재산을 유산으로 간주하고 분할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공유재산중의 유산은 분할시 우선 타인의 재산을 나누어 내야 한다. 유산의 범위가 확정된 후에야 상속인간의 분할실시가 가능하다.

다음은 유산분할시 반드시 태아의 상속분을 보류해야 한다.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몫을 남겨놓아야 한다. 남겨놓은 몫은 그 모친이 대리관리한다. 태아가 출생하여 영아가 되면 그 보류한 유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일 사체로 출생한 경우는 태아를 위해 보류한 유산상속분은 반드시 법정상속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만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으나 곧 사망한 경우는 원래의 태아를 위해 보류한 유산상속분이 이미 영아(이미 출생한 태아)의 유산으로 되어 영아의 법정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

그 다음은 유산분할이 생산과 생활에 유리함이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료는 반드시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분배하고 생활자료는 특수한 수요를 갖고 있는 자에게 최대한 분배한 후 이러한 유산을 접수한 사람이 타인에게 보상하여주어 기타 각 상속인의 합법이익과 같이 배려한다. 분할이 곤란한 유산에 대해서는 할인·적당한 보충·공유 또는 대금분할의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유산의 효용에 손상이 가지않게 한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산과 채권을 상속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개인이 법에 의해 응당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도 계승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세금과 채무에 대해서는 유산의 실제가치 범위내에서만 상환의 책임을 진다. 유산의 실제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을 지지 않으나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의 본토내에서의 상속권 문제

1.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는 본토동포와 동등한 상속권을 향유한다.

해협양안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만으로 간 자 또는 대만동포는 본토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보호한다. 상속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는 본토의 동포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상속권을 향유하며 어떠한 차별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속의 범위나 상속순서 및 유산상속분에 있어 중국의 상속인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인민법원이 과거에 처리한 상속안전증, 만약 대만의 상속인에게 유산상속분을 보류해 놓은 경우, 이들은 인민법원에 이 유산에 대한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과거에 인민법원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상속문제에 대해서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는 본토를 돌아온 후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장차 인민법원이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때에, 대만의 합법적인 상속인에 대해서 그 소송참가 방법을 찾아내

통지하며,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듯 그 상속분을 보류하고 재산대리관리인을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유산상속절차

대만의 상속인이 본토에서 보낸 상속개시통지를 받는 경우는 중국의 입국규정에 의거 관련수속을 밟아 본토에서의 상속에 참가하려 오거나 그의 대리인이 그를 대신하여 상속을 접수할 수 있다. 상속한 재산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가옥 등), 만약 동산인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을 반출처리할 수 있다.

유산상속에 있어 대만의 상속인이 본토의 상속인 또는 기타의 사람과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반드시 협상을 통한 해결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법률적 해결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예를 들어보자. 복주시(복권성의 성도 : 역자주)의 원래 국민당 모사단 참모장이었던 황모라는 자는 황甲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중국성립 바로 전에 군을 따라 대만으로 갔고 양녀 황乙은 본토에 남아 출가하였다. 황모는 1980년 원래의 본적지로 돌아와 정착하였다가 1982년 병사하였는데 그 조카인 황丙은 이 사실을 황모의 양녀 을과 대만의 아들 갑에게 통지하지 않고 스스로 황모의 장례를 치른 후 자기가 황모의 유산을 “대리관리”한다고 선언하였다. 황모의 유산은 가옥 1동 및 예금·금

·은·다이아몬드 등이 있었다. 황을과 황갑은 연락을 통해, 황갑이 서신으로 그 누이동생을 위탁인으로(공증을 거침)하여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황모의 유산은 황갑과 황을이 공동상속한다는 판결을 얻어내었으며, 황갑이 취득한 재산을 황을이 대리관리토록 하고, 황병이 쓴 장례비용은 황갑·을·오누이가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VI. 家屋과 債務

중국이 법률로 보호하는 사유가옥에 대한 관련규정

공민의 가옥은 공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자료로써, 역대로 국가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헌법 및 민법통칙은 국가가 공민의 가옥과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산법도 공민의 사유가옥은 유산으로 승계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도시사유가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옥소유자와 사용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유가옥의 용도를 발휘케 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1983년 12월 《도시사유가옥관리조례》를 공포하여 도시사유가옥의 소유권등기·매매·임대·대리관리 등 문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외에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가 제정·공포한 관련 부동산법규와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등도 부동산관계의 법률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대만과 관련된 부동산문제의 성질은 비교적 복잡하다. 해협양안은 장기적인 단절과 몇십년에 걸친 곡절로 인하여 많은 가옥의 자연손상이 심각하며, 어떤 것은 구조상으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일련의 재산권변동을 거치기도 하였으므로 주관기관은 대만과 관련된 민사방면의 가옥분류, 가옥저당, 매매, 임대, 대리관리 및 기타 재산권침해 등의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정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기소된 것은 의법조치해야 한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소유가옥의 재산권 침해분규에 관한 처리

현재 대만과 관련된 민사안건 중 가옥재산권에 관한 쟁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류의 사건은 정치·지리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만인과 대만동포의 귀향친지방문·여행의 증가에 따라 가옥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안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처리의견의 주요한 정신은 다음과 같다.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소유의 가옥이 이미 타인에 의해 점용되었거나 처분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권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분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대만으로 간 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저지한다. 예를 들어, 중국 모시의 허모라는 사람의 조부가 사망한 후 가옥 1동을 남긴 경우에 3명의 아들이 공동으로 승계하였는 바, 장남은 허모라는 사람의 아버지로서 현재 대만에 거주하고 있으며, 삼남 역시 대만에 있고, 본토의 차남은 정신병으로 입원하여 있으며, 허모라는 사람도 외지에 취업하는 까닭에 조부가 남긴 가옥이 장기간 비어 있었다. 그런데 1959년 이

웃의 진모씨가 독자적으로 점용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이 가옥의 부엌위에 한층을 신축하였다. 1980년 허모씨는 이 도시로 돌아와 취업하게 되고 이 가옥이 다른 사람에 의해 점용되었음을 알고 그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해결을 볼 수 없었다. 1987년 허모씨의 부친과 삼촌이 귀향, 친지를 방문하였을 때, 허모씨에게 위탁하여 점용된 가옥의 회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 가옥의 소유권은 대만으로 간 장남·삼남 및 본토에 남아있는 차남 등 3인의 공동소유로 인정되었으며, 진모씨에게는 불법점용한 가옥을 기한 내에 비워줄 것을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의 본토소유가옥은 법률의 충분한 보호를 받는 것이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가옥의 대리관리에 관한 문제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가 방치한 가옥의 대리관리는 국가대리관리와 공민에 위탁하는 대리관리의 두 종류가 있다.

1. 국가의 대리관리

중국성립초기 정부가 대리관리하는 대만으로 간 자의 도시사유가옥은 관리자의 부재, 합법적인 대리인 또는 계약증서의 미비, 재산권의 확정불가능 등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관련기관이 일반적인 법령에 따라 정기대리관리를 공고하여 기한이 지나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으로 귀속하여 원칙상 이미 국가소유가 되었다. 만일 재산권소유자가 당시에 의지에 있는 까닭으로 공고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산권반환청구를 제출하면 법률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즉 반드시 원래의 판결기관에 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재산권증명, 신분증명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거쳐야만 반환된다.

국민당 군정인원이 떠나면서 방치한 가옥의 대리관리문제는 주로 귀환정착을 희망하는 일부 인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소수의 유명애국인사가 귀환정착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가옥에 거주하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나 대리관리한 가옥을 반환하지는 않는다.

2. 공민에 위탁하는 대리관리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가 가옥을 대만이주이전에 공민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현재 가옥이 대리관리인 또는 대리관리인의 승계인이 대리관리하고 있는 경우,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가 이러한 대리관리방식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통상 허가하여 준다. 위탁수속을 밟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옥재산권 소유자의 친속이 대리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대리관리관계로 인정한다.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가 본토에서의 승계를 통해 취득한 가옥의 대리관리권문제는 통신왕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 본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통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근친중 관계가 비교적 좋은 사람이 대리관리인이 된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가 저당가옥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류에 관한 처리

가옥저당권은 일방이 저당금을 지불하고 다른 일방의 가옥을 점유하고 향유하는 사용·수익권을 가리킨다. 저당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며, 자기의 가옥을 저당권자에게 사용·수익토록 제공하는 사람은 피저당자가 된다. 저당가옥은 저당물이라 부른다. 가옥저당의 기한은 쌍방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며, 기한만료후 피저당자는 저당자에게 반환을 요구한다. 만일 약정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피저당자는 수시로 저당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성립후 토지가 저당물이 되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옥이 저당물이 되는 저당권 관계분류는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중국성립이전 혹은 성립초기에 설정된 노동대중의 가옥저당권관계에 대해서는 승인과 보호를 한다. 토지개혁중 이미 해결된 가옥저당권관계는 더 이상 변동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가 대만이주전에 저당잡힌 가옥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만일 토지개혁중에 이미 처리되었거나 저당기한이 만료되어 저당권승계자가 이미 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법률정책규정에 따라 저당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허가한다. 판결과정을 살펴보면 저당권분규에 대한 처리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1. 저당기간이 만료되어 주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 약정에 의거하여 반환이 허가된다.

2. 저당계약을 명확히 기재하여 저당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주인이 기한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치 않고 매매도 거절할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주인이 반환청산을 하지 않으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저당기간만료후, “주인이 반환청산을 하지 않거나 계약상에 기간경과후 반환청산을 하지 않는 것은 거래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혹은 저당계약상 반환청산 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주인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하여야主人的 반환요구권이 상실되는가? 최고인민법원은 1984년 하달한 관련규정에서 “저당 기한만료후 10년이 경과 되었거나 저당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30년이 경과된 경우는 원칙상 거래관계가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으로 간 자와 대만동포의 시효기간문제에 대해서 인민법원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4. 저당가격에 관한 환산문제

수십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변하였다. 주인이 반환청산 유효기간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의 저당가격

환산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규정한 실물가격계산에 따른다. 그러나 쌍방의 경제적 조건과 회수목적 등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국가가 규정한 가옥가격으로 환산할 수도 있다. 즉 가옥관리기관이 저당가옥에 대해 회수시의 가옥상태를 평가하여 환산하는 것이다.

대만으로 간 인원과 대만동포의 본토가옥매매에 관한 법률문제

《도시사유가옥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은 사유가옥의 매매를 허용한다. 도시사유가옥매매의 경우, 파는 측은 반드시 가옥소유권증명과 신분증명을 소지하고, 구입하는 측은 반드시 가옥구매증명과 신분증명을 갖추어 가옥소재지의 관리기관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는 소유권이 명확하고 문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출인이 반드시 가옥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옥의 매매는 반드시 가옥관리기관을 통해야 하며 개인적인 가옥매매는 허가하지 않으며 가옥에 대한 투기 등의 위법활동은 더욱 허가하지 않는다.

만일 공유가옥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인의 《매출동의 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동등한 조건하에서 공동소유인은 우선 매입권을 갖는다.

가옥매매가 성사되면 반드시 가옥매매를 서면으로 계약한 후 가옥소재지의 가옥관리기관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을 하며, 사실여부심사를 거쳐 가옥소유권증명을 수취한다. 즉 소위 가옥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것이다. 만일 수속이 완비되지 아니하면 가옥소유권도 이전되지 아니한다.

도시사유가옥매매의 가격은 쌍방이 응당 품질에 의한 가격원

칙에 의거하고 가옥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사유가옥 가격표준을 참조하여 가격을 정하며, 가옥소재지 가옥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야만 거래가 성사된다. 만일 매출하는 가옥이 임대가옥이라면 3개월이전에 임대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등한 조건하에서 임대거주자는 가옥의 우선매입권을 갖는다.

대만으로 간 인원이 대만으로 이주하기 전에 발생한 개인간의 채무청산문제

민간대차는 공민상호간의 융통을 도모하는 상호협력관계로써, 대차분규의 처리는 중국《민법통칙》의 “합법적 대차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채무의 상환여부는 채무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합법적인 채무관계는 반드시 보호를 받으며, 채무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채무에 대한 적당한 이자의 수취를 허가한다. 그러나 고리대금은 엄격히 금지한다.

대만으로 간 자의 대만이주전 개인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현재 채권을 주장하거나 상환을 해야하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이러한 채권채무관계가 중국의 현행법률·정책·규정에 의거해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충분히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인민법원이 모두 수리하며, 사건의 사실과 쌍방의 현재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중국성립전(1949년 10월 1일 이전)의 채무는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원칙상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역사적인 원인과 채권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었을 경우는 소송시효 중지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소송제기를 허락한다.

금은·외환의 대차 및 저당은 금지한다. 과거의 금은·외환대차에 대해서는 금은·외환으로 상환할 수 없으며, 금은으로 환산한

채무도 금은으로 지불해서는 안되며, 당시의 임차물로 지급청산
해야 한다.

실물로 빌려준 것은 원칙상 실물로 상환해야 하나 실물상환
이 불가능한 것은 인민폐로 환산하여 상환한다.

이율발생으로 인한 대차분규에 대한 처리

공민간의 대차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쌍방이 대차계약시 약정한다. 만일 분규가 발생하면 약정한 이율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규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이자율에 따라 처리한다.

정당한 이자를 받는 대차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리대를 금지·단속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이자율이 정상적인 이자율을 얼마나 초과하면 고리대로 간주하는가의 문제는 각 지역경제의 경제상황이 다르므로 통일된 규정이 곤란하다.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민간대출에 있어 매월 이자가 원금의 1부5리를 초과하면 고리대(즉 월간이자율이 원금의 15%)를 보기도 하며, 은행이자율을 기준으로 은행이자의 3배가 넘으면 고리대로 보기도 하는데 모두 보호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생산경영성대출의 이율이 생활성대출의 이율보다 약간 높을 수 있다. 확실히 고리대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법통칙》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일관되게 고리대금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켜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VII. 知的 所有權

중국이 법률로 판권을 보호하는 관련규정

중국《민법통칙》 제94조는 “공민·법인은 저작권(판권)을 향유하며 법률에 의거 서명·발표·출판을 통해 보수 등 권리를 획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판권)이라 함은 공민·법인이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자기의 과학·문학·예술 등의 작품으로 향유하는 독점권리를 지칭한다. 여기서 말하는 작품은 작자가 모종의 구체적인 형식으로 표현해 낸 과학연구와 문학예술 창작 성과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이미 발표된 것과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기가 창작한 번역·개편·타인작품의 편찬도 포함된다. 공민·법인이 자기의 작품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권리란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작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발표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안됨을 뜻하는 것으로 만일 이를 어기면 바로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또 법률적인 근거없이 독자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행위에 속한다.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침해인에게 그 침해의 정지와 영향의 제거·손실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국은 작자의 저작권에 대해 출공 보호를 하고 있다. 헌법·민법통칙과 일련의 관련 조례·규정·결의 등에 보호규정이 있다. 1980년 국가출판사업관리국은 《서적원고료에 관한 임시규정》

(1990년 다시 수정)을 제정하였으며, 1983년 국무원은 T.V방송부의 《녹음·녹화제품관리임시규정》을 비준하였으며, 1984년 문화부는 《도서·간행물판권보호시행조례》를 공포하였다. 또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 1990년 7월 제7차 전국인민대표 대회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총칙·저작권·저작권허가사용계약·출판·공연·녹음녹화·방송·법률책임·부칙 등 6장 56개조로 나뉘어 있는 저작권보호에 대한 전면적이고 통일적인 규정이다.

대만동포작품의 판권보호에 관한 문제

대만과의 문화교류에 있어 발생하는 판권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대만문화계인사의 판결을 진일보 도모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쌍방의 평화적인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토에서 출판하는 대만동포의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권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현재 북경에는 중화판권대리총공사가 설립되어 있어 작자 혹은 기타 판권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대만판권에 대한 무역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그 업무범위는 주로 대리협상·판권무역계약 체결, 판권양도대리, 원고비와 인세의 대리수취, 판권무역과 관련된 정보제공, 판권소송대리 등이 있다.

중국의 민법통칙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만동포는 그 창작품에 대해 본토작자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대만동포의 작품이 본토에서 발표·전재·중판인쇄·번역 혹은 개편되어 출판되는 경우는 저작권자나 기타 판권소유자의 수권및 판권양도 또는 사용허가계약이 필요하다. 권한을 위임받은 후 출판자 대만동포의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작자 또는 기타 판권소유자에게 보수와 견본서적을 증송해야 하며 보수는 인민폐로 지불한다. 대만동포가 본토에 판권을 양도하거나 작품사용허가를 수권한 경우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

으며 친우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직접 출판자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으며 판권대리기구인 중화판권대리총공사와 연계할 수도 있다.

대만작자의 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통칙》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판권침해정지와 영향의 제거, 손실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대만에서 출판하는 본토작가작품에 관한 문제

대만에서 출판하는 본토작자의 작품에 대해서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본토작자 또는 기타 판권소유자가 대만에서의 작품사용을 수권하는 경우, 중화판권대리총공사에 그 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작자나 기타 판권소유자가 직접 상대방과 협상하여 초보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대만에 수권하여 출판하는 본토작자의 작품은 반드시 계약규정에 준거한다. 만일 상대방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면 반드시 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작품의 완성도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더우기 작자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을 첨가해서는 아니되며, 인세는 현지규정에 의해 수취하고 인세율은 통상 국제관행표준이나 대만표준을 따른다.

중국특허법의 특허신청에 관한 규정

특허권이나 함은 특허권자가 법률에 규정된 유효기간내에 법에 따라 자기가 취득한 특허에 의한 발명·창조를 향유하는 독점권을 가리킨다. 중국특허법상의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실용신안 및 외관설계를 가리킨다.

특허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그의 배타성·독점성에 있다. 즉 법률이 규정한 유효기간내에 특허권자 본인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거친 자만이 특허발명 또는 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기타인은 특허품의 제조·사용·판매를 하거나 특허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특허국은 특허신청을 접수·심사하고 규정에 맞는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권을 수여하는 전문기관이다. 중국의 공민·법인과 외국의 공민·법인은 모두 법률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다. 본 기관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기관의 물질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직무성 발명·창조는 특허권의 신청과 취득의 권리가 그 기관에 속하며, 비직무성 발명·창조는 특허권의 신청과 취득의 권리가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 속한다.

신청과 심사비준의 절차는, 특허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신청에는 반드시 청구서와 설명서 및 그

요지와 권리요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관설계특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청구서 및 이 외관설계도면이나 사진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외관설계를 사용하는 제품 및 그 소속종류를 명기해야 한다. 2명 이상의 사람이 각기 같은 발명·창조제품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가장 먼저 신청한 자에게 부여한다. 신청인이 특허신청을 출원한 후에는 특허권 획득전에 그 제출한 특허신청서류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특허국은 발명특허신청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8개월내에 합격을 공포한다.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3년내에 특허국에 실질심사를 청구한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이 지나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된것으로 본다. 특허국이 발명특허신청에 대해 실질조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기한내에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이 지나도 회답이 없는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특허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한다. 실질심사에 합격한 것에 대해서 특허국은 심의결정하고 이를 공포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실용신안특허와 외관설계 특허신청에 대해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실질심사를 행하지 않고 즉시 공고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특허권자의 권리와 의무

특허권자는 특허권 취득 후 일정기간내에 법에 따라 여러 항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의무의 책임을 진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특허권의 기한은 15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실용신안과 외관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5년이며 역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기간 만료전 특허권자는 3년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특허문서중 본인이 발명인 또는 설계인임을 설명하는 권리
- ② 그 발명·창조를 자기가 실행하는 권리
- ③ 타인이 발명·창조를 실행하도록 허가하는 권리
- ④ 특허권의 양도권리
- ⑤ 타인이 그 발명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
- ⑥ 그 특허제품 또는 이 제품의 포장에 있어 특허표시와 특허번호를 표명하는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그 발명특허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특허권을 획득한지 3년이 지나도록 그 특허를 자기가 실행하지 않으며 타인의 특허제품제조나 특허방법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때에는, 주관기관은 이 특허실행의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② 특허비용을 매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비납부규정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특허권이 중지된다. 기한이 지나 연비를 보충 납부하는 경우는 체납금을 내야 한다.

특허권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그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관리기관에 이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대만동포가 본토에 와서 특허를 신청하는 일에 관한 업무

해협양안간의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대만동포가 본토에 와서 특허를 신청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국은 1988년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였다. 대만동포는 본토의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에 의거하여, 그 발명·창조를 중국 특허국에 특허를 신청하고 특허보호를 얻는다.

특허신청처리에 있어 중국 특허국과 대만동포신청인간의 정상적인 통신연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만동포는 그 특허신청시 본토의 친우에게 그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통신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본토의 친우에게 위탁처리가 곤란하거나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은 홍콩의 중국특허대리(홍콩)유한공사와 홍콩영신평특허대리 유한공사에 전권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토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직접 중국특허국에 제출하거나 국내의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직접 중국특허국에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본토의 연락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대만동포가 중국특허국에 제출하는 특허신청서류에는 “중화민국”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중국대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만동포는 본토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비용을 인민폐 외환권 (태환권)으로 지불한다.

중국상표법의 상표독점권에 관한 규정

상표독점권은 상표권이라고도 부르며, 상표소유인이 국가의 비준을 거쳐 일정기간내에 어떤 특정한 상표를 상품위에 부착하는 일종의 전유권이다. 상표법은 바로 상표권자의 전유권이다. 상표법은 바로 상표권자의 취득·사용 및 상표권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상표권의 취득에 대해 중국은 상표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사용상표의 상품종류와 상품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상표국은 초보심의결정을 거쳐 이를 공고한다. 초보심의결정을 거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어떠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확정하고 상표등록증을 발표하며 이를 공고한다.

상표등록은 최우선 신청원칙에 따른다. 두개 또는 두개이상의 신청인이 동일종류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등록 신청을 한 때에는 우선 신청한 상표를 초보심사하여 결정하고 공고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도 우선 신청한 상표를 초보심사하여 결정·공고하며 타인의 신청은 반려하며 이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허가일로부터 계산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 6개월 이내에 등록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 회의 연장유효기간은 10년이다.

상표독점권에 관한 법률보호

상표등록권자는 상표독점권을 향유하며, 법에 따라 그 상표를 점유·사용·처분할 수 있다. 또 타인에게 그 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등록상표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상표등록권자의 상표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 38조는 다음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등록상표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등록상표권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동일종류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② 타인의 등록상표표지를 독자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③ 타인의 등록상표독점권에 기타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록상표독점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해, 피침해자는 침해자소재지의 현급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인도 고소나 검거를 할 수 있다. 관련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침해자에게 그 침해행위의 즉각 중지를 명하고 피침해자의 손실을 보상토록 한다. 정도가 심한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등록상표독점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피침해인은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모방하거나 독자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표지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피침해인의 손실을 배상하고

벌금부과처벌을 받는 외에 직접 사법기관이 그 책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VIII. 通信 및 交通

중국의 우정법 및 우정기업

우편행정은 국가의 우편물의 전송업무를 전담하는 부문이며, 체신업의 주요 구성요소중에 하나로서 편지, 소포의 발송 및 전달, 간행물의 발간, 우편환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통신자유 및 통신비밀의 보장, 우편업무의 정상처리를 보장하여, 우정사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과 국민생활에 부응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8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우편행정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국가주석령으로 동 법률을 공포하여,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법률의 구성은 총칙, 우정기업의 설치 및 운영, 우정업무의 종류 및 자본금, 우편물의 발송, 우편물의 운송, 통관 및 검역, 손실배상, 벌칙, 부칙 등 모두 8장 44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 우편사업에 관한 중요한 법률이다.

우정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우정주관부서는 전국의 우정업무를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 우정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각 해당지역의 우정업무를 관리한다.

우정기업에 관하여 우정기업에 관하여 우정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국무원 우정주관부처 소속의 우정기업은 우정업무를 전담하는全民소유제의 공공기업이다. 우정기업은 국무원 우정주관

부처의 규정에 따라 우정업무를 주관하는 하부기구이다.

2. 우정기업은 이용자에게 신속, 정확, 안전, 편의 등의 우정 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정기업 및 우정업무 종사자는 어떠한 조직, 개인에게도 다른 이용자의 우편을 이용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편지 및 기타 편지성 물품의 발송업무는 우정기업이 전담 하나, 국무원이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우정기업은 필요한 경우, 다른 기구 혹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우편전담업무를 대신 할 수 있다. 대리인원이 우정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동 법의 우정업무종사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우정기업은 이용자가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분국, 간이 우편 취급소, 간행물 판매대, 우체통 등의 설치나 이동서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 거주자 건물에는 거주자가 우편물을 수신할 수 있는 우편함을 설치해야 한다. 비교적 규모가 큰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및 호텔내에는 우정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유상체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제

중국의 체신서비스는 국가에서 전담하는 사회공공사업으로써, 방대한 사회대중 및 각 조직단체 등에 유상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친지방문, 여행 혹은 기타 사회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유상 체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국의 체신기업 역시 대만동포에게 유상 체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1. 체신서비스 항목

중국의 체신서비스 항목은 우편서비스 항목과 전신서비스 항목 두가지로 분류된다.

(1) 우편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내 간행물의 발행
- ② 우편저축, 우편환
- ③ 국무원 우편주관부서가 규정하는 우정기업 경영에 적합한 업무 등

우정기업 및 그 분국은 국무원 우편주관부서 및 지역 우편관리기구가 규정하는 필수처리 우편업무를 독자적으로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내 및 국제우편물의 발송에는 보통우편, 등기우편, 엽서, 인쇄물, 소포 및 국내 혹은 국제우편물의 속달 등의

우편물 발송업무를 포함한다. 우정기업의 기타업무로는 우표 등을 판매하며, 조건을 갖춘 우정기업은 시내전화, 국내 장거리전화 및 전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2) 전신서비스 항목은 전보, 전화 및 전송 등을 포함한다. 전보업무는 국내 및 국제전보로 분류되며, 또한 텔렉스 전보와 팩시밀리 전보로 분류된다. 전화업무는 시내전화, 국내 장거리전화 및 국제전화에 있다. 전신업무를 전담하는 기업은 우편서비스 항목을 취급하지 않는다.

2. 우편료 증명 및 요금기준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유상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우편료 증명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주권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우정법 제17조는 “우표, 관제봉투, 관제엽서, 관제봉합엽서 등의 우편료 증명은 국무원 우편주관부서가 발행하며,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도 위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모든 우편이용자가 본토에서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무원 우편관련부서가 국가를 대신하여 발행하는 우편료 증명, 즉 중국인민우정이라는 글자가 표시된 우편, 관제봉투, 관제엽서 및 관제봉합엽서 등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발행한 우편료 증명 혹은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제조한 우편료 증명은 모두 무효이며, 우정기업도 발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정법에는 다음과 같은 우편료 증명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공무원 우편주관부서에서 사용금지로 공고한 것

② 소인이 찍히거나 금을 그은 것

③ 오염, 찢려 나간 것 혹은 퇴색, 변색 등 식별이 어려운 것

④ 관제봉투, 관제엽서, 관제봉함엽서로부터 오려낸 우표도안 등

체신업무 요금표준에 관하여는 우정법 및 전신관리부문의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기본요금 및 비기본요금 등 두 종류로 나뉘며, 그 기준의 확정도 업무종류 및 수량, 중량, 전달거리, 전달시간등으로 나뉘며, 어떤 사람이 체신서비스를 이용하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만동포가 체신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본토의 중국인과 동등한 요금기준이 적용된다.

3. 대만과의 전보 및 전화

중국의 체신서비스 항목중 어떠한 체신이용자라도 모두 국내, 혹은 국외 및 홍콩 마카오지역 등으로 전보, 전화를 치거나 결수 있다. 1972년 12월 3일 중국체신부서는 본토로부터 대만지역으로의 전보, 전화업무를 잇달아 개설하였다. 따라서 본토의 관련 체신운영부서는 체신이용자가 대만지역으로 발신하는 전화전보를 접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본토 및 대만 쌍방 간에는 정식으로 직통이 불가하여, 대만지구로의 체신업무 이용시 대만당국의 제한을 받는다. 체신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체신부처는 대만지구에 대한 전보, 전화에 대하여 이미 전반적인 교류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1989년 6월 6일 대만의 “행정 원대륙공장회보”는 대만민중이 금일부터 본토와 직접 통화가 가능하며, 본토친지에게 발송하는 편지도 대만적십자회를 거칠 필요없이 직접 수취인의 성명, 주소만 기입하면 된다는 결의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통신자유 및 통신비밀이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정법도 “통신자유 및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 혹은 형사범죄수사상 필요로 인하여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혹은 검찰기관이 법률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이외에,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도 여하한 이유로 타인의 통신자료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본토에서 대만동포의 통신자유 및 통신비밀 역시 법률의 보장을 받는다.

중국에서의 통신자유라 함은 모든 체신이용자가 우편, 전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그리고 통신의 비밀이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의 불법적인 방해, 제한, 침해 등을 받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소위 통신비밀은 통신의 내용, 방식, 수량, 일자, 통신주소, 송수신자 등을 체신이용자 쌍방만이 알고 타인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엽서, 전보는 제외)을 가리킨다. 통신비밀과 통신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통신비밀이 보장되어야만 체신이용자가 진정으로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통신비밀이 법률적 보호를 얻지 못한다면, 통신자유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통신자유를 보장할 뿐만아니라, 통신비밀도 보장한다.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정법은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파괴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그 법률적 책임을 따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체신이용자가 그 위법행위가 이미 범죄가 된다고 여긴다면, 국가검찰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검찰기관은 국가를 대신하여 기소하며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만일 이미 이용자에게 재산손실을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민사상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만일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관련 주관기관에 신청하여 행정구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대만동포의 우편물 발송에 관한 몇가지 법률문제

본토와 대만관계의 발전에 따라 대만인이 본토에 발송하는 우편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몇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1. 본토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대만동포가 대만지구 혹은 홍콩·마카오 및 외국으로부터 본토로 발송하는 우편물이 중국경내에 들어올 경우, 발송인 혹은 수취인은 누구든지 모두 일률적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우정법 및 국제체신법 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처리하는 우정기업 및 그 종사자는 이를 불법으로 억류, 검사, 폐기, 은닉 및 개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반자가 있을 경우는 형사법에 저촉되는 위법범죄행위에 해당되어 형사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우정기업의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의 부분 혹은 전부가 손실되었을 경우는 우정기업이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수취인의 안전과 사회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토로 발송된 우편물은 중국세관 및 검역부서의 검사 혹은 검역을 거쳐야 하며, 우정기업은 법에 따라 우편물을 세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거나 검역부서의 검역을 거쳐야 한다.

2. 본토에서 발송한 우편물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우편이용자가 발송한 우편물을 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은 통신자유 및 통신비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요건이다. 중국 경내에서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모든 우편이용자가 우정업무기관에서 우편물 발송시 중국내외 어느 곳, 수취인이 누구이든 우편물 발송규정에 적합하다면, 우정기업은 우편물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발송인이 지정한 주소로 수취인에게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다. 수취인에게 전달이 불가능한 우편물은 규정된 기한내에도 수령인이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우정기업 및 그 종사자가 우편물을 무단으로 개봉, 은닉, 폐기할 경우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본토에서의 우편물 발송은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편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신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대륙에서의 모든 우편서비스 이용자(대만동포 포함)는 우편물 발송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이용자가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주관부서의 발송금지품목, 발송제한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발송금지품목은 국가의 법률과 법규로 규정된 유통 또는 전달이 금지된 품목 그리고 금, 은, 화폐, 음란도서, 무기탄약, 폭발물, 독극물, 부패가 용이한 물품 등 인체의 생명안전이나 다른 우편물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물 등을 포함한다. 수량제한품목은 국무원 주관부서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가 발송수

량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규정한 것으로 귀중한 약재, 일반문화재, 엽연초 등을 가리킨다.

둘째, 이용자가 편지이외의 다른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우정기업 및 그 분국에서는 내용물을 즉시 검사한다. 검사를 거절할 경우에는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용자가 발송하는 편지는 반드시 발송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우정기업 및 그 분국에서 이용자에게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외에는 이용자는 우편물 발송시 통신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발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요구에 따라 포장, 밀봉, 유효우편료 증명을 붙이거나 우편료 비용을 지불한다.

4. 본토에서의 우편물 발송의 손실배상

중국에서 모든 우편서비스 이용자(대만인 포함)가 우편물을 발송한 후 만일 수취인이 발송한 우편물 혹은 송금한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정법 제32조의 “발송일로부터 1년이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발송한 우정기업 혹은 그 분국에 문의를 할 수 있다. 우정기업 및 그 분국은 국무원 우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한내에 문의결과를 문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도록 결과가 없는 경우 우정기업은 우선 배상 또는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한다. 그러나 일반우편물의 손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우편물이 손실된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우편물이 손실된 경우에는 우정회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자(대만동포 포함)가 손실로 인하여 우정기업과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정기업의 상급주관부서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대만동포 본토방문시의 교통지휘신호 및 교통표지의 식별

대만동포는 대륙방문시 도시의 교통문제에 직면하는데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먼저 도시교통 지휘신호 및 표지를 식별해야 한다. 중국정부 공안부가 1955년 제정·공포한 《도시교통규칙》 제2장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통경찰은 지시봉(혹은 수신호)을 사용하여 교통을 지휘한다.(지시봉이 가리키는 방향은 통행이 가능)

2. 파란등이 켜졌을 시 통행이 가능

3. 빨간등이 켜졌을 경우

① 통행금지

② 파란등을 받아 통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회전이 가능

③ T자형 도로의 직행차량의 우측으로 도로가 없을 경우 파란등을 받아 통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통행이 가능

4. 노란등이 켜졌을 시 통행이 불가능하며, 이미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계속 운행해야 한다.

5. 차량이 교차로를 지날 때 정지신호등(빨간등 혹은 노란등)을 받았을 경우, 정지선 밖에 차를 세워야 하며, 정지선이 없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밖에 정차해야 한다.

6. 교통표지는 모두 3종류 28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시표지는 운전자의 운전 및 정지를 지시하는 표지이다. 이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다.

① 방향을 지시하는 표지에는 직행표지, 직행 및 우회전표지, 직행 및 좌회전표지, 우회전표지, 좌회전표지의 5개 표지가 있다.

② 행인주의 표지판의 도안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며, 학교, 시장, 오락장소 등지에 설치한다.

③ 차량방향전환 표지의 도안은 노란색바탕에 검정색 화살표가 좌측아래로 구부러져 있으며 차량방향전환 허가장소에 설치한다.

④ 주차장 표지의 도안은 노란색 바탕에 停(정)자가 쓰여있고 停(정)자아래에 주차가능범위를 미터단위로 나타내며, 표지봉 상단에 주차가능한 차량종류를 표시한다. 이 표지는 주차장 중간에 설치한다.

(2) 경고표지는 운전자가 위험지점 통과시 경고하는 표지로서 운행속도를 규정속도로 감속해야 한다. 표지모양은 노란색에 주변이 검정색인 정삼각형이며, 노란바탕에 흑색도안으로 되어 있는 등 모두 4종류가 있다.

① 교차로 표지의 도안은 두 직선이 직각으로 교차하며, 교차로에서 15~20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② 급회전 혹은 유턴(u-turn)표지의 도안은 곡선이며, 회전로

에서 30~50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③ 철로와 도로의 교차로 표시는 도안이 기차정면모양이며 교차로에서 20~30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④ 위험표지의 도안은 감탄부호로 되어 있으며 위험지점에서 30~50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3) 금지표시는 도로사정과 교통량에 근거하여, 교통안전과 차량에 대하여 적당한 제한을 두기 위한 표지이다. 그 형태는 원형의 빨간 테두리선에 황색바탕이다. 표지의 황색바탕에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흑색도안이 그려져 있다. 이는 모두 16가지로서 차량진입금지표시, 통행금지표시, 두가지 차량 통행금지표시, 이륜차 통행금지표시, 추월금지표시, 자동차방향전환 금지표시, 우마차 통행금지표시 등이다.

이밖에도 보행자(대만동포 포함)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반드시 보도로 보행해야 하며, 보도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해야 한다.

② 보행자가 전동차 혹은 버스를 탑승하고자 할 때는 승차대 혹은 정차지점에 근접한 보도에서 기다린다.

③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으로 보행해야 한다.

④ 보행자가 길을 건너거나 교차로 통과시는 횡단보도 안쪽으로 통과해야 한다. 7세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성인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본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만동포가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자신과 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속,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규정에 따른 매표, 검표수속 및 짐, 소포 등의 운반외에도 각종 교통수단 탑승시 본토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비행기 탑승 관련규정

197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민영항공총국의 국내여객 운송규칙》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탑승수속

① 여객은 규정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여 탑승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항공은 규정된 항공기 이륙시간의 10분전에 탑승수속을 끝마쳐야 한다.

② 여객은 탑승권 및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탑승수속을 마쳐야 한다.

③ 여객이 탑승카드를 발급하며, 여객은 대기실에서 탑승통지를 기다린다.

④ 중계, 중도환승, 혹은 회항탑승권을 가진 여객은 중계 중도환승 혹은 귀로중의 공항에서 즉각 항공사에 등기수속을 밟

아야 한다.

(2) 탑승준수규정

① 여객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탑승카드에 쓰여진 좌석번호에 앉거나 항공기 승무원이 지정한 좌석에 앉는다.

② 여객은 모두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에는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망원경, 라디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비행기가 중도에서 기착한 경우 여객은 비행기에서 내려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하며 비행기내에 머물러서는 아니된다.

⑤ 여객이 정신병 혹은 자신 및 다른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탑승할 수 없다.

⑥ 여객이 정부의 관련법령 혹은 민항 관련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항공사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며 표를 폐기할 수 있다.

(3) 휴대품 규정

① 여객은 여행중 사용 혹은 자신이 휴대해야 할 작은 물품을 몸에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사람이 휴대가능한 중량은 5kg이며, 1개당 부피는 20×30×50c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여객의 휴대물품은 탑승수속시 항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휴대물품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휴대물품 꼬리표를 달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휴대품중 정부금수, 운송제한, 위험, 공공위생을 해하거나 비행기를 손상오염시킬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여객은 동물을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2. 기차탑승 관련규정

《중화인민공화국철도부 철로여객운수규정》(1980년 7월 1일 시행)의 규정에 따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탑승조건

여객은 승차권상에 지정된 날짜, 객차호수, 좌석 및 침대에 따라 승차한다. 여객은 중도정거장에서 하차할 수 있으나 미탑승 구간의 요금은 반환이 되지 않으며 또 중도정거장에서 탑승할 수 있고 유효기간내에 탑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하차한 경우 침대승차권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침대승차권은 본인만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대인과 소인 혹은 소인과 소인의 경우 한 침대를 공용할 수 있다.

(2) 표의 검사와 회수

질서유지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여객이 표를 구매하여 탑승하는 때에는 반드시 검표소를 거쳐야 한다. 역원은 여객이 소지한 차표, 입장권을 확인한 후 개찰해야 한다. (침대표는 절단하지 않음) 필요한 경우 열차입구에서 표를 검사할 수 있다. 좌석 및 침대여객의 차표는 승무원이 대리보관하며 하차전에 반환한다. 역을 나서는 여객의 차표, 단체여행증은 회수해야 한다. 여객이 환불을 원하는 차표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3) 여행객 휴대물품

여객 휴대물품의 무료허가 중량은 20kg 아동(무료아동 포함)이 10kg이며 외교관은 35kg이다. 휴대물품의 길이 및 부피는 짐칸 위 혹은 좌석하단부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부가 제한한 운송물품, 위험물품, 공공위생에 해가 되는 물품, 동물 및 기차를 파손 혹은 오염시키는 물품 등을 차내부에 휴대하여 탑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안전 및 위생이 보장된 조건하에서 다음과 같은 물품은 휴대할 수 있다.

① 안전성냥 50갑

② 라이타용 휘발유 50ml

③ 살충제, 석유, 약용 알콜, 조합페인트 각 1kg

위험물 발견시는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 알려 처리하며, 필요시에는 관련기관에 알려 처리한다.

3. 여객선 승선 관련규정

본토에서의 선표는 특등, 1등, 2등, 3등, 4등 및 보통석(좌석 포함)등의 등급으로 나뉜다.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배를 타고 방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의 기호 및 경제조건에 따라 선표를 구입할 수 있다.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단체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배, 선실, 방의 전세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수속은 관련 수륙운송부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대만동포는 승선시 화장품, 의류, 서적, 아동장난감, 간식 식품 및 친지에게 선물할 토산품 등을 휴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는 무료가 될 수 있다.

(1) 배편이 중국근해 혹은 장강의 여객선인 경우 성인 1명(일반표를 산 아동포함)은 30kg의 물품을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 반표아동은 15kg을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의 부피가 0.2m³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길이는 1.5m를, 중량은 30k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편이 장강여객선이외의 다른 강의 객선인 경우 성인 1명(일반표를 산 아동 포함)은 20kg의 물품을 무료로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품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부피가 0.2m³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애인 여행객이 사용하는 휠체어는 한 대를 휴대할 수 있다.

4. 버스탑승 관련규정

중국본토의 버스표는 보통표, 직행표, 공공버스표, 아동표 및 장애인군인표로 나뉜다. 아동표와 장애인군인표를 제외하면 모두가 일반표이다. 대만동포가 일반표를 사는 경우에는 1.1m이하의 아동 1명을 무료로 탑승시킬 수 있다. 대만동포는 단체여행 혹은 방문시에 도로여객운송부처에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차량대여시 거리 또는 시간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대만동포는 본토에서 버스탑승시 여행필수품 및 친지에 선물물을 무료로 운송 혹은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1장의 일반표당 10kg의 짐만을 무료로 휴대 혹은 운송할 수 있으며 중량이 초과하는 경우 운송하는 짐의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한다. 대만

동포가 귀중물품, 깨지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정밀계기, TV 등 자신이 돌봐야 할 물품들을 휴대하여 탑승하는 때에는 짐의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한다. 만일 이러한 물품들이 좌석을 점유한다면 별도로 다시 차표를 구입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본토방문 대만동포를 위해 제공하는 교통편의시설

1987년 10월 대륙의 중국민항국, 교통부, 철도국 등 3개 교통부처는 대만방문객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중국민항국은 대만동포의 친지방문, 여행 등 주요항로, 즉 북경에서 홍콩, 광주에서 홍콩, 상해에서 홍콩, 북경에서 광주, 상해에서 광주로 가는 항로를 증편시켰다. 또한 민항국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국여행사 및 기타 여행관련 부서에서 접대하는 대만동포의 비행기표 구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부가 관할하는 주요 항구 및 기차역에서는 전문창구를 설치하여 친자방문, 여행을 하는 대만동포가 우선적으로 표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원을 두어 대만동포의 물품운반을 책임지며, 노약장애자 등 행동이 불편한 대만동포에게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철도부 소속 각 철로국, 특히 대만동포가 비교적 많이 모이는 해안도시의 기차역에서는 여행증명을 가진 대만동포가 차료구입 혹은 물품운반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10명 이상의 대만동포가 예매기간내에 단체구매를 경우에는 구매를 보장한다.

본토 친지방문, 여행을 하는 대만동포의 비행기, 선박, 기차, 버스의 탑승요금은 본토여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IX. 投 資

국무원의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우리는 대만동포가 본토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은 본토와 대만지역의 경제기술교류를 촉진시켜 양안 쌍방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만투자자의 대중국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국무원이 1988년 7월 3일 공포한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은 모두 22조로 되어 있으며 법률적으로 대만투자자의 각종 권익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만투자자는 중국 본토의 각 성·자치구·직할시·경제특구 등지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 ① 대만투자자가 모든 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설립
- ② 합자경영기업·합작경영기업의 설립
- ③ 보상무역·연료가공조립·합작생산
- ④ 기업의 주식 및 채권의 구매
- ⑤ 부동산구입
- ⑥ 법률상 토지사용권 취득 및 개발경영
- ⑦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투자형식

2. 대만투자자는 본토에서 공업·농업·서비스업 및 기타 사회 및 경제발전방향과 일치하는 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 각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서에서 공포한 항목중에서 투자항목을 선

택할 수 있으며, 투자자 스스로 원하는 투자항목을 투자하고자 하는 지구의 대외경제무역부서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인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대만투자자가 상품수출기업 및 선진기술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며 그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한다.

3. 대만투자자가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기업·합자경영기업 및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외국투자기업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이 외의 다른 투자형태 그리고 본토에 영업기구를 설립하지 않고도 본토의 주식배당금,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국가의 관련 대외경제법규를 참조할 수 있다.

4. 대만투자자는 투자한 화폐·기계설비 혹은 기타 실물·공업재산권·전문기술을 자유로이 교환하여 투자로 할 수 있다. 본토에서의 투자, 자산구입·공업재산권·투자소득이윤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국가의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법에 의거 양도 및 승계가 가능하다. 투자로 획득한 합법적 이윤·기타 합법적 수익 및 청산 후의 자금은 법에 의해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5. 중국은 대만투자자의 투자 및 기타 자산에 대하여 국유화를 하지 않는다. 국가가 사회공익의 차원에서 대만투자기업에 대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법률절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6. 대만투자기업이 그 투자총액한도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 설비·생산용차량·사무설비 그리고 개인이 투자기간내에 사용할 필수품, 적당한 수량의 생활용품 및 교통수단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면세하며, 수입허가증의 발급도 면제한다. 대만투자기업이 수출상품·생산용으로 수입하는 원자재·연료·부품·조립품 등은 수입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면세하고 수입허가증발급도 면제하며 이를 세관이 감독한다. 상술한 수출용 원자재가 만일 중국 내수용상품생산에 이용될 경우 국가규정에 의거하여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금을 부과한다. 대만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상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이외에는 모두 수출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7. 대만투자기업은 중국의 금융기관에서 차관이 가능하며 국외의 금융기관에서도 차관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자산과 권익은 저당·담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8. 모든 자본을 투자한 대만기업의 경영기한은 투자자가 임의로 결정하며, 합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경영기한은 합작측 혹은 합작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하나 경영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장의 위임, 그리고 합작경영기업의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의 구성 및 이사장, 연합관리기구 주임의 위임은 출자비율 또는 합작조건에 따라 합자측 혹은 합작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다.

10. 대만투자기업은 인준된 계약·정관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하며, 기업의 경영관리주권은 간섭하지 아니한다.

11. 본토에 투자한 대만동포 및 대만투자기업이 국외로 부터 초빙한 기술 및 관리자는 복수출입국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12. 대만투자자는 본토의 친지를 대리인으로 위탁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은 법률효력을 가진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13. 대만투자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대만투자자는 당지의 인민정부에 대만기업협회의 결성을 신청할 수 있다.

14. 대만투자자가 본토에서 합자경영기업·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본토의 합자·합작측에서 그 설립을 신청한다. 대만투자자가 모든 자본을 투자한 기업은 대만투자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본토의 친지·자문기구를 대리하여 신청한다. 대만투자자가 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지의 대외경제무역부처 혹은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사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접수한다.

대만동포 투자기업의 심의허가는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각급 대외경제무역부처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의허가기관은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허가를 결정한다. 신청인은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등록방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서를 수령한다.

15. 대만투자자가 투자하는 때 계약이행상 또는 계약과 관련

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 혹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가 협상 및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조정이 안 될 경우는 계약서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이루어진 서면 중재협약에 의거하여 본토 또는 홍콩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한다. 당사자가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또 사후 서면 중재협약이 없는 경우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 보면, 대만투자자는 외국업체에 비해 5종의 우대를 받고 있다. 첫째, 투자영역이 비교적 광범위하여 공업·농업·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이외에도 대만동포가 투자항목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각 지방인민정부와 협상할 수도 있다. 둘째, 투자방식이 더욱 융통성이 있어 삼자기업(三資企業:독자·합자·합작기업:역자주)의 설립외에도 본토의 주식·채권 및 부동산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셋째, 대만동포는 합자경영기업에서 이사장에 선출될 수 있다. 넷째, 대만투자자는 경영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섯째, 대만투자기업에 대한 심의허가수속이 더욱 간소화되어 있어 신청을 접수한 지 45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만투자자는 소지한 호적증·신분증·영업허가증 및 공증기관의 증명서로 그 신분을 증명하여 상술한 각종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대만기업이 기업의 명칭 또는 투자자의 성명을 비공개할 것을 요구하면 중국정부는 비밀조치를 취하여 투자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어떠한 대만회사

·기업 또는 개인일지라도 이상의 증서만 소지한다면 모두 동등 대우한다. 과거의 역사는 불문하며 대만투자자의 정치적 안전을 보장한다.

1988년 7월 6일 국무원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무원이 상술한 규정을 공포하기 이전에 각 성·시에서 이미 비준된 대 대만 합작항목은 일률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원 22조의 규정은 각 성·시에서 이전에 공포된 조항에 비하여 정책상 더욱 포괄적이며 우대조항을 더 많이 삽입하였다. 대외경제무역부의자관리국의 책임자는 현재 이미 본토에 투자하고 있는 대만투자자의 경영상태는 양호하며 돈을 벌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대만동포를 위한 우대조치

중국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대만동포는 심천·주해·선두·하문(深圳·珠海·汕頭·廈門)등 4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중 농업·공업항목에 대한 투자에는 경제특구의 모든 특혜를 받는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1. 대만동포가 경제특구에 설립한 독자·합자·합작경영기업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흑자년도를 기준으로 4년전까지의 기업소득세가 면제되며, 이후 5년동안의 기업소득세는 반으로 감면한다.

2. 위에서 열거한 기업이 수입원자재·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이 국내시장에 판로가 있어 원자재 부품의 수입을 필요로 하거나, 투자자가 선진기술 및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30%의 상품을 내수할 수 있다. 내수상품은 국가가 규정한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며, 규정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3. 상술한 기업의 건설 및 투자가 5년이 경과되면 토지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밖에 대만동포가 주해·선두·하문 등지에서 구시·구(舊市·區)의 낡은 기업을 개조하여 투자한 경우, 그 상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가가 규정한 수입생산원료의 관세면제, 기업소득세 15% 감면외에도 상술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

汕頭의 대만동포 투자장려 우대조치

광둥성 汕頭경제특구는 현재 일본·미국·태국 및 홍콩지역의 자본을 유치하는 외에도 대만지구의 자본유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1988년 8월 汕頭경제특구관리위원회는 《대만동포투자장려우대조치》를 수정공포하고, 대만자본기업은 기타경제조직의 동 특구내의 투자를 규정하며 아래와 같은 우대를 한다.

1.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인 경우, 흑자년도로부터 4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며, 제5차년도 부터 9차년도까지 소득세를 반으로 감면한다. 선진기술기업 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의 영업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는 세금감면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기기한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제특구에 소득이윤을 재투자하여 영업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는 허가를 거쳐 재투자 부분에 대한 기납부소득세는 반환할 수 있다.

3. 기업소요부지는 건설기간 및 투자후 5년이내에는 부지사용료가 면제된다. 상품수출기업 및 선진기술기업의 부지사용료는 제6생산년도 부터 10년까지 반으로 감면한다.

4.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고정자산의 평가절하를 실시할 수 있다.

5. 대만투자기업 또는 대만공동경영자는 본토의 공민에 위탁하여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대만동포가 특구내에서 미화 백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2명에서 4명까지의 친지를 특구내에 거주시킬 수 있다.

7. 대만동포투자기업의 경영방식은 기업자체에서 결정하며, 합자 및 합작기업은 계약당사자가 공동경영하거나 일방이 경영을 책임진다.

8. 대만투자기업은 외국기업 및 홍콩·마카오투자기업과 동등한 특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의 특혜를 받는 대만자본기업 및 대만동포의 투자비율은 기업총투자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廈門의 대만기업 투자장려 특별규정

복건성 廈門경제특구와 대만은 바다를 사이로 마주보고 있으며 삼연(지연·혈연·언어연)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 하문시의 장점을 발휘하여 대만자본을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빨리 유치하기 위하여 이미 대만상인의 투자를 장려하는 특별규정을 반포하였다. 본 특구에서 대만자본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는다.

1. 대만자본기업이 특구내에서 농공업항목에 투자하여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는 흑자년도부터 4년까지는 소득세를 면제하며, 5년째부터 9년째까지는 소득세를 반으로 감면한다.

2. 대만자본기업이 수입원자재, 부품 등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이 국내시장에 판로가 있어 수입을 필요로 하거나, 투자자가 선진기술 및 선진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상품의 30%를 내수할 수 있으며, 내수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한다.

3. 대만자본기업의 건설기간 및 생산후 5년간은 토지사용료가 면제된다. 호리(湖里)공업구에 투자한 대만자본기업은 상술기간 중에 장소사용료가 면제된다.

4. 대만투자자는 하문경제특구외의 중국본토 친지를 대표 또는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실제상황에 따라 본 특구내에 거주할 수 있다. 대만자본기업이 위탁한 대표 혹은 대리인의 특

구내 거주는 1명에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5. 대만자본기업의 투자자 및 그 대리인은 복수출입국비자 및 거류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대만동포투자자도 신청 및 허가를 거쳐 경내에 정착할 수 있으며, 대만투자기업과 동등한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의 특혜대우를 받는 대만자본기업 및 대만동포투자비율은 기업총투자 비율이 25%를 초과해야 한다.

해남도 대만투자구의 설립

해남도의 개발·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1988년 4월 13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는 해남성 인민정부건설 및 해남 경제특구건설에 관한 결의를 통과 시켰다. 해남도는 중국에서 대만 다음으로 큰 섬으로 전략적 요충지이며, 많은 자원, 넓은 면적, 적은 인구를 가진 미개발 처녀지이다. 이곳은 다른 특구보다 더욱 우수하고 탄력적인 정책집행으로 2년동안 각 방면에서 신속한 발전을 가져와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88년 5월 4일 국무원은 《해남도투자개발건설장려규정》(약칭 국무원 26호문서, 1988) 23개조를 공포하였으며 그 중 특별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투자를 유치하여 해남도의 개발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국가는 해남도 경제특구에 대하여 더욱 탄력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실행하며, 해남성 인민정부의 자주권행사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국무원주관부서 및 그 위임기관이 발급한 여권 및 기타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한 홍콩·마카오·대만동포 및 화교는 해남 및 해남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출국시에 비자를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대만동포는 직접 해남도 항구에서 《대만동포여행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의 이러한 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남성 인민정부는 같은 해 8월 1일 《국무원26호문서를 관철하여 해남경제특구건설을 가속화하는데 관한 약간의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해남경제특구가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특혜가 많으며, 탄력적인 정책으로 국내외 투자자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 중 대만투자자의 설립에 대한 규정은 대만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해남성 인민정부는 1988년 8월 25일 대만동포의 해남개발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점에 약간의 대만투자구를 설립하고 더욱 우대적인 정책과 편리한 조건으로 대만투자자의 일괄청부경영·종합개발을 장려하여 각종의 형식으로 대만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여 해남의 자원과 시장을 결합시켜 중국 양대도시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소위 일괄청부경영·종합개발이라는 것은 외국기업 또는 대만기업이 경제특구내 모지역의 개발건설 및 그 행정·지역관리 등을 일괄청부경영하는 것이다. 연해교통이 편리하고 자원이 풍부한 지역중 일정한 토지를 선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기업 또는 대만기업에 이를 양도하여 모든 것을 청부하여, 경제특구의 총체적인 기획에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초시설의 건설·공상기업의 개발경영 및 생산경영 활동을 실시한다. 중국정부는 단지 국가 주권의 일부인 외교·국경수비·세관·세무·치안 등의 부문만을 관리·조절한다.

상해의 대만기업 포동 신지구(浦東新地區) 투자장려 관련규정

상해시 포동신지구의 면적은 총 350km²이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의 가장 큰 개발구이며 옥토로써 외국기업 및 홍콩·마카오·대만투자자들의 가장 이상적인 곳이다.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은 포동지역의 개발 및 개방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상해를 진흥시키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이며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계속 견지한다는 중대한 약속이다. 상해의 개방발전은 필연적으로 화동지역 전체의 경제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해협양안 쌍방의 왕래를 촉진할 것이다.

1. 포동신지구 법규문서의 특징

1990년 9월 10일 상해시인민정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무원 관련부처 및 시정부가 포동 신지구의 개발 및 개방에 관한 9개 법규 등의 문서를 발표했다. 이는 포동의 개발 및 개방이 실질적인 시동단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서중 3개는 국무원관련부서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직접 공포한 것으로, 이는 중국인민은행 본점이 반포한 《상해외자금융기구·중외합자금융기구 관리방법》·국가재정부가 반포한 《상해포동신지구의 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소득세·공상통일세의 면세·감면에 관한 규정》·국가세관총서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

화국 세관의 상해 외고교(外高橋)보세구역 화물운수공구 및 개인휴대품출반입에 대한 관리방법》등이다. 상해시가 반포한 6개 문서는 모두 국무원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지도부의 구체적인 지침과 인가를 얻었다. 그 중 《상해시 포동신지구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약간의 규정》《상해시 외고교보세구역관리방법》, 《상해시 포동신지구 토지관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 등은 시정부가 반포하였으며 《상해 포동신지구 기획건설관리에 관한 잠정방법》, 《상해 포동신지구 외국인투자기업 심의기준에 관한 방법》, 《상해 포동신지구 산업유치 및 투자지침》 등은 시정부의 기준을 거쳐 시의 관련부처가 반포하였다. 이 법규들은 외국기업 및 투자자가 포동신지구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무역 및 투자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홍콩·마카오·대만기업·회사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은 모두 본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법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 및 대만동포의 관심과 절실한 이해가 요망된다.

상해시 상무부시장 황국(黃菊)은 시정부 기자회견에서 포동신지구 9개 법규문서의 특징을 집중 소개하였다.

첫째, 권위를 가진다. 이번에 반포된 법규 등의 문서는 그 제정근거가 당 중앙·국무원에서 비준한 상해 포동신지구 10조정책 및 국가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 그리고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에 관련된 정책 등이다. 이중 3개는 국무원의 기준을 거쳐 국무원 관련부서가 직접 반포한 행정법규이며, 6개는 상해

시가 반포하고 국무원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원 관련지도 부서의 구체적인 지침과 인가를 얻은 것이다.

둘째, 종합적이다. 이번에 공포된 법규 등의 문서는 내용이 비교적 광범위하며, 포동지구의 개발, 개방이 미치는 중요부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관련규정의 구체내용은 그 제정과정에서도 포동신지구를 종합적으로 체현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러한 종합적 문서의 출현으로 외국기업은 포동신지구에서의 업무처리가 더욱 편리해졌다.

셋째, 조절성이 있다. 이러한 법규 등의 문서는 본래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비준한 포동신지구개발 10조정책을 구체화하여, 초기 포동신지구개발을 인도하였으며, 외국기업투자가 미칠 관련정책문제에 기본적인 법률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이 법규문서의 제정은 중국의 내부업무관계를 순조롭게 하여 업무처리절차 및 체제조직의 관점에서 포동신지구의 개발시작에 도움을 준다.

넷째, 포동신지구의 기본적인 특징을 구현하고 있다. 하나는 법규·규정의 형식으로 포동신지구내에 설립한 보세구역은 종합적인 대외개방구역임을 긍정하였으며, 외국기업은 여기에서 무역 및 중계무역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업무에 종사한다. 따라서 이곳은 중국내에서 가장 개방정도가 큰 보세구역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법규·규정의 형식으로 외국기업에 더욱 광범위한 투자영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는 외국자본은행,

중외합자재무회사 등 금융기구 및 자문서비스 등 3차산업분야가 포함된다.

2. 대만기업에게 포동신지구투자를 장려하는 규정

상해시 인민정부가 공포한 《상해시 포동신지구에 관한 외국기업 투자장려에 관한 약간의 규정》은 모두 29개조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제26조는 “홍콩·마카오·대만의 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의 신구역내에서의 투자기업 및 항목은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기업’이라 약칭한다)이 신지구내에 설립한 아래에 해당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국독자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이라 약칭한다)에게는 특혜를 부여한다.

① 생산성기업의 설립, 특히 상품수출기업 및 선진기술기업

② 신지구 통일기획에 따라 투자항목을 선택하여 일괄정부개발·경영을 하는 기업

③ 에너지·교통 등의 항목에 종사하는 기업

(2) 외국기업이 신지구에서 3차산업을 건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3) 신지구내에 보세구역을 설립한다. 국무원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외국기업은 보세구역내에 무역기구를 개설할 수 있으며, 중계무역 종사 및 구역내의 외국투자기업을 위한 생산용

원자재 부속품의 수입 및 상품수출을 대리할 수 있다.

(4) 생산적인 외국투자기업의 생산·경영소득 및 기타소득은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징수한다. 그 중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기업이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제1,2후자년도에는 기업소득세가 면세되며 3년에서 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감면한다.

공항·항만·철도·도로·발전소 등 에너지·교통건설항목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은 15%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그 중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은 기업이 신청하고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후자년도 첫해부터 5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가 면세되며 6년에서 10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감면한다.

(5) 외국기업은 신지구내의 통일기획에 의거하여 토지를 일괄청부개발하며, 이 토지에서 기초설비항목의 개발 및 부동산을 경영한다.

(6) 중외합자경영기업을 하는 외국투자자는 기업으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는 외에 송금액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7) 2000년말 이전에 신지구내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8) 외국투자기업이 신지구내에 사적인 용도의 신축가옥을 건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신축 또는 구매한 날로부터 5년간 가옥세를 면제한다.

(9)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수출상품은 원유 및 가공완성유

류와 국가가 별도로 정한 상품 이외에는 공상통일세를 면세한다.

(10) 신지구내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수출상품은 국가가 별도로 정한 상품 이외에는 관세를 면세한다.

(11) 외국투자기업이 수입한 사적 용도의 건축재료·생산관리 설비 및 그 부속품·교통수단·사무용품·생산용 원부자재 등은 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면세한다.

(12) 외국투자기업의 외국국적을 가진 인원이 사적 용도의 가정용품 및 교통수단을 반입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수량내에서 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면세한다.

(13) 신지구건설에 필요한 수입기계·설비·차량·기초설비물자는 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면세한다.

(14) 외국투자기업이 생산 및 유통과정 중에 대부하는 단기 회전자금은 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의 심사동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대출한다.

(15) 외국투자기업은 생산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구설치 및 인원편제를 자체 확정한다.

(16) 외국기업이 신지구내에서 상해시의 특별장려항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상해시 외국투자사무위원회가 심의하고 시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특별우대한다.

3. 포동지구의 산업지향 및 투자지침

포동신지구를 산업구조가 합리적이고 현대화된 새로운 구역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시계획위원회는 상해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상해포동신지구의 산업지향 및 투자지침》을 공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동신지구의 산업발전 원칙

- ① 국내외자본 및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해야 한다.
- ②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국제분업 및 국제경쟁에 참여하는데 유리해야 한다.
- ③ 국제선진기술을 획득하고 수출지향 및 수입대체위주의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해야 한다.
- ④ 포동과 포서의 산업보완·협조·일체화에 유리해야 한다.
- ⑤ 상해시를 전국의 다기능적 경제·무역 및 금융중심으로 발전시키는데 유리해야 한다.

(2) 포동신지구의 주요 발전장려산업

- ① 에너지 교통 : 발전소·변전소·집중열공급장치와 석유·가스개발·수송·저장 및 가공을 포함한다.
- ② 도시기반설비 : 가스·상하수도, 도로, 교량, 체신통신 등을 포함한다.
- ③ 수출 및 수입대체업종의 확대(공업 및 농업에 있어) : 통신설비, 전자계산기, 전자부품·정밀기계업, 대형플랜트전용설비업, 고효율 저독성 농약업, 신흥기술업, 외환가득성 농부산물

품업 등 35개 업종이 있다.

(3) 포동신지구가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산업

① 국가산업정책상 제한 또는 개선을 금지하는 산업

② 공업의 3폐(유독가스, 공장폐수, 공장폐기물)가 심각하여 처리 후에도 환경보호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업종

③ 향락·추악·미신활동에 종사하는 업종 및 국제적 안전 또는 중국 경제 사회발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

국내외 각 기업·회사 및 경제조직은 관련 규정이 허가하는 범위에 따라 본 지침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투자경영을 할 수 있다.

4. 포동신지구 대만투자기업의 심사비준방법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켜 포동신지구에 대한 외국업체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해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의 외국투자사무위원회는 《상해시 포동신지구 외국투자기업심사비준방법》을 공포하였다. 홍콩·마카오·대만의 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포동신지구에 투자할 항목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행할 수 있으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조건

모든 상해시 포동신지구에 설립을 신청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외국독자기업(이하 외국투자기업으로 약칭)은 포동신지구의 총체적인 기획 및 투자방향의 요구에 부

합하여야 한다.

(2) 비준부서 및 비준권한

① 총투자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 3000만불 이하의 항목과 총투자액이 500만불이하로 제한하는 항목인 외국업체독자경영항목 및 외고교(外高橋) 보세구역 육가주 금융무역구·금교(金橋) 가공수출구 등 시단위 중점개발구역내의 항목은 상해시 외국투자사업위원회(이하 '시외자위'로 약칭)가 심의비준을 책임진다. 이 중 에너지, 원자재는 국가의 수급균형이 필요한 것이나 쿼터, 허가증관리에 관련된 것은 국가관련부서의 비준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총 투자액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비제한성 항목은 관련 주관국 또는 구·현의 인민정부가 심의비준을 책임진다.

③ 총 투자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인 생산성 항목 및 국무원 주관부처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비 생산성 항목은 시외자위 및 각 관련부처가 심의한 후 국무원 주관부처가 비준한다.

(3) 비준절차 및 비준기한

①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항목 건의서 제출, 가능성연구보고와 계약, 정관, 제출, 비준증서교부신청, 영업허가증수령신청

② 외국업체 및 중국측 투자자는 투자항목의 금액 및 내용에 따라 각각 시외자위 또는 관련주관부서·구·현의 인민정부에 항목건의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 및 계약서·정관(이하 '비

준서류물'이라 한다)을 제출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의 비준서류를 중국측 투자자가 제출하며 외국독자기업의 비준서류물은 상해시의 자문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제출한다.

③ 외국투자기업의 계약, 정관은 비준을 거쳐 시 외자위가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④ 포동 신지구내에서 본 시가 인준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심의비준기간은 문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항목건의서 20일, 실행가능성 연구보고 및 계약·정관 30일, 비준증서발급 7일, 영업허가발급 15일 등이다.

비준기관은 규정한 기한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문서를 보충할 경우의 비준기한은 그 서류접수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대만기업투자에 대한 위험담보제도의 수립

1989년 3월 9일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 정관근(鄭關根)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대만관련업무를 보고하면서 작년(1988년) 국무원이 공포한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대만투자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만기업은 정책적인 특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으나 몇가지 의견 및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 주요한 것으로 투자환경의 성숙, 해협양안쌍방의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상무중재, 위험담보 및 물품인도기한 엄수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등등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중국은 각종 조치, 특히 투자위험담보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만업체의 염려를 불식하고 보다 많은 대만업체의 본토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특혜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대만업체의 이윤획득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만업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 왜냐하면 중국에 완비된 법률제도가 없다면 투자자가 얻는 이윤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본전도 못 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혜는 적절해야 하며 안전의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대만업체의 안전계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을 건의한다.

첫째, 국유화징수의 보상법률제도 건전화

국무원의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은 대만투자자의 투자 및 기타 자산에 대하여 국유화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가는 사회공익에 따라 대만투자기업에 대하여 징수를 할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필요한 것이지만 “상응하는 보상”이라는 조항은 보상액수도 불분명하고 탄력성도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다고 많은 대만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무원이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을 제정할 경우는 증세·국유화의 법정근거·법정절차 및 보상의 구체적 표준을 확정하여 대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만화폐의 직접교환을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투자증권 외환문제에 대하여 중국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대만투자자의 자본금, 이윤 및 기타 합법적 수입, 자유환전, 자유양도, 국외송금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만의 신대만화(New Taiwan dollar)와 인민폐간에는 직접 태환이 불가하고 직접적인 태환비율도 없어 대만투자자는 먼저 신대만화를 국외에서 중국이 인정하는 제3종 화폐로 태환하여 본토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중국정부는 일정한 범위·지구내에서 은행을 지정하여 대만화폐를 직접 태환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또한 대만투자자의 이익과

안전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셋째, 대만업체에 대한 투자보험제도의 건립이다. 본토와 대만은 두 개의 국가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적 관례인 “자본수출국 국내투자보증(보험)제도”는 통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대만당국의 현재 대중국정책도 중국과 어떠한 무역보호협정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대만당국 역시 본토투자자에게 투자보장제도를 수립할 가능성도 없다. 대만투자자에게 확실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 중국은 국내의 보험제도를 국제 혹은 홍콩·마카오지구의 담보제도와 결합시킬 계획이다. 중국인민보험회사는 대만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을 한 이후, 세계은행이 발기한 다국간 투자담보기구에 재담보하거나, 기타 외국 또는 홍콩·마카오지구의 신용있는 보험회사에 담보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만동포의 본토투자장려는 일종의 전략적 임무이다. 중국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투자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동남아국가들 보다 더욱 유리한 투자대상으로 만들어 대만에서 일고 있는 본토투자열풍을 맞이할 것이다.

X. 保險과 稅收

중국의 보험관리기구 및 업무기구

1. 보험관리기구

1985년 3월 3일 국무원이 공포한 《보험기업관리잠정조례》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국가보험관리기구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직책으로는

- ① 보험사업의 방침, 정책의 결정
- ② 보험기업 설립의 인준
- ③ 보험기업의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지도, 감독
- ④ 보험회사가 경영업무상 국가의 법률, 법규, 정책을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2. 보험업무기구

중국인민보험공사는 국가보험업무기구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보험 및 재보험 업무를 경영하는 국영기업이다. 그 본점은 북경에 설치되어 있고, 국내외 많은 분점 및 부속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 세계 주요 항구에 300여개소의 손해사정대리인 및 배상처리대리인을 위임하였고, 전세계 120여개 국가 및 지역의 1000여개 보험기업과 보험분담관계를 수립하였다. 공사에는 이사회, 감사회, 사장이 있으며, 공사가 경영하는 각 보험 및 재보험업무로는

- ① 다른 보험기업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② 법률로 규정된 보험 및 각종 외환 보험업무의 경영
- ③ 국영, 외자,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의 각종 보험업무 경영
- ④ 국제재보험업무 및 국가가 위임하여 경영하는 기타업무 등이다.

중국인민보험공사는 국가가 부여한 권한에 의거, 국가를 대표하여 보험업무와 관련된 국제활동에도 참가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인민폐 5억원이다.

3. 보험관리기구 및 업무기구의 법률적 근거

중국정부가 공포한 보험관계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1951년 정무원 재경위원회가 공포한 《철도여객의 의외상해 강제보험 조례》, 《여객선여객 의외상해 강제보험 조례》 및 《비행기여객 의외상해 강제보험 조례》 그리고 198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중국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1983년 국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재산보험 계약조례》, 1985년 국무원이 공포한 《보험기업 관리장정 조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중국인민보험공사는 보험업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1974년에 《중국인민보험공사 선박보험 약관》을 공포하였고, 1981년 수정·공포한 《중국인민보험공사 해양운송화물보험 약관》, 《중국인민보험공사 간이인보험 약관(갑종)》을 공포하였으며, 1982년 《중국인민보험공사 기업재산보험 약관》 등이 있다. 이러한 중국인민보험공사가 계속 제정한 표준보험증서 및

각종 보험약관은 약칭 “중국보험조항(C.I.C)”라고 하는데, 보험공사의 업무활동에 지침이 된다. 동시에 유구한 보험사업의 역사적 발전 가운데 점차 국제상 통용되는 규칙 및 관례가 형성되었으며, 중국인민보험공사도 업무수행상 이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현 중국의 주요 보험 종류

1. 인보험

인보험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되며, 그중 생명보험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현재 중국인민보험공사 및 각지의 분점에서 처리하는 간이인보험은 생과 사에 대하여 손실이 없도록 하는 보험이며 그 주요 약관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보험계약자(즉 피보험자)

연령이 만16세부터 65세까지 신체가 건강하며 정상노동 및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사람 혹은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그 배우자, 직계친척 및 부양관계를 가진 사람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기업의 간이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수혜자

간이인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수혜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중도에 수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수혜자의 변경은 보험공사의 인준을 거쳐야 유효하며, 만일 지정한 수혜자가 없다면 피보험자의 법정계승인이 수혜자가 된다.

(3) 보험기한

보험기한은 5년, 10년, 15년, 20년 등 4종류가 있으나 보험기간 만료시의 연령은 최고 70세로 제한한다.

(4) 보험비

보험비는 연령 및 보험계약 기한에 관계없이 매월 인민폐 1 원이다.

(5) 보험금의 급부

보험금의 급부에 관한 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① 보험만료기간까지 생존하였거나, 보험유효기간내에 있는 피보험자가 질병 혹은 의외의 상해사건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의외의 상해사건으로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하였거나 두 다리가 완전히 불구가 되었거나 혹은 한 눈이 완전히 실명한 동시에 팔, 다리 하나가 완전히 불구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이 계속 유효하고 보험사건이 확정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는 전액 면제된다.

③ 의외의 사건으로 한 눈이 완전히 실명하였거나 팔다리 한 쪽이 완전히 불구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의 반액을 지급하며 보험사건이 확정발생한 다음 달로부터 보험비는 반으로 감면한다.

④ 의외의 사건으로 일어난 상해로 노동능력, 신체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거나 부분적 노동능력, 신체기능을 영원히 상실하였을 경우, 상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한다. 그러나 최고 보험금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⑤ 보험사건이 확정된 다음달로부터 보험료는 각각 면제, 반

감 혹은 전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보험유효기간내에 의외의 손해사건이 한번 혹은 여러 차례 발생했건 간에 보험공사는 규정에 따라 각각 보험금을 지불하나 지불누계는 보험금 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만약 피보험자가 의외의 손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보험만료기간까지 생존하였거나 보험유효기간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공사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며, 과거 지급했던 보험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6) 면책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조건에 대하여 은닉 혹은 기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자살, 범죄행위를 하거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혹은 수혜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사망 혹은 불구가 된 경우 및 전쟁 혹은 군사행동으로 사망 혹은 불구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 재산보험

재산보험의 각기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산보험에는 가정보험, 기업재산보험, 화물운송보험, 운송수단보험, 가축보험, 농작물보험, 화재보험, 도난보험, 항공보험, 해상보험, 건축 및 설치공정보험, 우편소포보험 등이 있다. 재산보험의 주요 약관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보험계약자

재산보험의 보험계약측(보험증서 혹은 보험증명증에서 피보

험자라 칭하는 사람)은 피보험재산의 소유자 혹은 경영관리인이며, 보험기준에 의하여 보험이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2) 보험이익

보험계약측은 피보험재산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보험재산의 이익 혹은 책임에 대하여 보험이익을 갖는 사람은

① 피보험재산의 소유인, 점유인 혹은 계약에 따라 피보험재산에 대하여 이익을 가지는 사람

② 타인의 재산손실 혹은 신체적 상해사망에 대하여 경제적 배상책임을 가진 사람

③ 신용이 실추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람

④ 타인의 불성실 혹은 불법행위로 자신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 등이다.

(3) 보험계약측의 의무

① 보험계약측은 약정한 기한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한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보험측은 상황에 따라 보험료 및 이자의 납부 혹은 보험계약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측이 만약 계약을 중지한다면 계약중지전에 보험계약측이 빚진 보험료 및 이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측이 액수대로 모두 청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측은 국가의 관련부서가 제정한 소방, 안전, 생산

조직 및 노동보호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노동자 및 보험재산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적극적인 손해방지를 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측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만약 보험과표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보험정도를 증가시킬 경우, 보험계약측은 즉시 보험측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측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밖에도 계약에 규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측은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보험측에 통지하여 보험측이 즉시 현장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의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확대된 손실에 대해서 보험측은 배상을 하지 않는다.

(4) 보험측의 배상책임

① 보험측은 발생한 보험 손실 혹은 일어난 책임에 대하여 보험계약규정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별도로 협의한 것이외에 보험측의 배상책임은 보험계약측의 사건발생 당시의 실지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책임진다. 그러나 보험과표의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측의 손실배상시 손실물자의 가치 및 보험계약측이 제3자로부터 얻어낸 배상은 보험배상금액중에서 공제한다.

② 보험계약측이 보험책임범위내의 손실을 모면하거나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 지출한 설치, 보호, 정리 및 소송 등의 비용 그리고 보험책임범위내의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 손해과표에 대해 검사, 평가, 판매에 지출되는 합리적 비용은 보험계약의 규정에 의거 보험측이 상환을 책임지나 보험금액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측은 보험측에 배상을 요구할 때, 손실명세서 및 구제 등의 비용명세서 그리고 필요한 장부, 증빙서 및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측은 보험계약측의 배상요구증빙서를 접수한 후, 보험계약의 규정에 의거, 10일이내에 배상해야 한다. 보험측이 만약 제때에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후에 중국인민은행의 기업에 대한 당시의 단기대출이자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지불한다.

대만동포를 위해 보험기관이 제공하는 보험항목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편안하고 유쾌한 친지방문, 여행 및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인민보험공사는 1987년 10월, 4항의 새 규정을 만들어 대만동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① 친지방문, 여행, 외부 활동이 빈번하다는 특징에 근거하여 중국인민보험공사는 대만동포를 위하여 신체의 의외상해, 의료비용 및 여행짐을 포함하는 일괄보험업무를 개설하였다.

② 1987년 11월 2일 대만당국이 친지방문을 허가한 날로부터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인신의외상해보험에 계약할 경우 원래 규정금액의 20%를 할인하여 계산한다.

③ 인신의외상해보험의 계약금액은 대만동포 스스로 결정한다. 보험계약이 가능한 화폐종류는 많다. 미화, 일본엔화, 홍콩달러, 외화인민폐, 혹은 인민폐 모두 가능하며, 배상시 중국인민보험공사는 계약시와 동일한 화폐로 지불한다.

④ 중국인민보험공사가 개설한 인보험, 재산보험, 화물운송보험 및 기동차량보험 등은 모두 대만동포에게 개방되어 있다.

대만동포의 보험가입 수속방법

중국의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기구는 중국인민보험공사이다. 본 공사는 본토각지에 2600여개의 분점을 가지고 있으며, 광둥, 복건 등 두 성 및 각 현에 모두 보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친지방문, 여행 혹은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지의 중국인민보험공사 분점에서 직접 각종 보험항목을 처리할 수 있다. 보험처리수속은 간편, 신속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신청서를 기입하고 서명 혹은 도장을 날인한다. 중국인민보험공사(및 그 분점)은 이에 의거하여 정식 보험증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속이 완결되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보험항목을 변경하거나 해약하려면, 보험계약자의 신청을 거쳐 중국인민보험공사가 심의 후 처리한다.

중국의 세금종류 및 위약에 대한 처리

1. 중국의 세종

1949년이래부터 점진적 조정 및 개혁을 거쳐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국내 사정에 적합한 다단계, 다세종, 대부분의 세제체계를 건립하였다. 그 세종은 다음과 같다.

(1) 유동액에 따른 징세의 세종 : 상품세, 부가가치세, 염세, 영업세, 관세, 수입조절세, 공상통일세, 도시유지건설세, 가축교역세, 정기시장교역세

(2) 자원, 행위, 재산에 따른 징세 : 자원세, 토지사용세, 오일특별세, 도살세, 차량선박사용세, 선박중량세, 부동산세, 농경지점유세, 인지세

(3) 소득 및 수익액에 따른 징세의 세종 : 국영기업소득세, 국영기업조절세, 집단기업소득세, 도시농촌개체공상업소득세, 중외합자기업소득세,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수입조절세, 농(목)업세, 사영기업소득세

(4) 기업의 수익전문기금 및 그 사용에 따른 징세의 세종 : 건축세, 국영기업노임조절세, 국영기업장려금세, 집단기업장려금세, 사업단위장려금세, 에너지교통중점건설기금

상술한 세종중, 몇가지는 본토에서 친지방문, 여행, 경제활동,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홍콩·마카오·대만동포와 다소 연관

이 있으며, 그중 많은 세종에 감면규정이 있다. 특히 대륙경제 건설에 투자하는 홍콩·마카오·대만동포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관련 세종의 징수감면에 더욱 많은 특혜대우를 하고 있다.

2. 세수 법규

중국은 통일된 세무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세수와 관련하여 목마다 일정한 종목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입법, 행정법규가 그것이다.

(1) 기본입법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된 세수법률, 법령이 있다. 예를 들면, 1980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1981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기업소득세법》 등이 있다.

(2) 행정법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권한을 부여한 재정부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공포한 세법시행세칙으로는 1980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2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등이 있다. 국무원(혹은 그 전신인 정무원), 재정부 및 세관총서가 공포한 세수행정법규로는 1983년의 《외국업체 청부공정작업 및 서어비스 제공에 대한 통일세 및 기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잠정규정》이 있으며, 1984년 공포한 《경제특구 및 해안14개 항만도시에 대한 기업소득세 및 공상통일세 면제감면에 관한 잠정규

정》, 1987년 공포한 《국무원의 〈외국업체투자에 관한 규정〉중 우혜세수약관의 관철실행방법》 및 《대륙의 외국국적자의 노임, 보수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에 관한 잠정규정》 등이 있다.

수량으로 말한다면 행정법규는 기본입법에 비하여 현저히 많고 또 기본입법원칙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응한 변화를 하였다.

3. 위법 처리

중국의 세수법규 규정에 의거, 탈세, 항세, 누세(漏稅) 및 흠세(欠稅) 등의 행위는 세무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① 탈세란 납세의무자가 세수법규를 고의로 위반하여 기만, 은닉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도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② 항세란 납세의무자가 세수법규에 따른 납세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③ 누세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본의 아니게 빠뜨리거나 적게 납세하는 것을 가리킨다.

④ 흠세란 납세의무자가 납세기한을 초과하여 제때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상술한 행위에 대하여 세수법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흠세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혹은 0.1%의 체납금을 납부토록 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설은행에 통지하고 공제하여 입고시킨다.

② 탈세, 누세자에 대해서는 그 빠뜨린 세액을 납부토록 하며, 상황의 경중에 따라 비판교육 혹은 벌금을 부과한다.

③ 탈세 및 항세사건 상황이 엄중하여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한다.

공상통일세 감면특혜에 관한 규정

1. 공상통일세의 일반 감면 특혜

세수법규에 근거하여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및 개인(총칭 客商)이 본토에 투자하여 건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客商독점자본경영기업은 판매영업액, 수입화물지불금액 등에 대하여 공상통일세를 납부한다. 客商이 대륙경제건설에 참가하여 기업설립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공상통일세를 낮게 징수하는 이외에도 일련의 감면특혜규정이 있다.

① 중외합자경영기업은 계약규정에 따라 기업총투자액한도내에서 수입한 기계설비, 부품 및 기타 필요한 물자(공장건설, 조립개조설비 등에 필요한 물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비준을 얻은 추가투자액 한도내에서 수입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②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이 수출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 및 포장물품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③ 중외합작으로 해양석유를 채취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설비 등의 화물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④ 客商의 위탁가공(來料加工), 위탁조립(來料裝配) 및 중소형 보상무역에서 계약약정에 의거, 생산상 수입을 필요로 하는

원자재, 부품 및 설비는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⑤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이 기업생산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의 수출제한품목이외에는 모두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⑥ 중외합자기업이 생산하는 내수상품에 대하여, 회사설립 초기에는 납세가 큰 부담이 되므로 감면 혹은 공상통일세의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2. 특구기업의 공상통일세 감면 특혜

중국대륙에서 특구기업은 客商이 深圳, 珠海, 廈門, 汕頭 등 4개 경제특구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客商독자경영기업을 가리킨다. 특구기업의 공상통일세 감면 특혜는 다음과 같다

① 특구관리라인 건립이전에 특구기업이 수입한 화물, 즉 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 부속품, 교통수단(국가 수입제한 품목은 제외) 및 기타 생산재료에 대해서는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각종 광물류, 담배, 술 및 기타 생활용품의 수입은 규정세율에 의거 공상통일세를 반으로 감면한다. 특구관리라인 건립이후에 수입한 각종 광물류, 담배, 술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공상통일세를 반으로 감면한다. 그 나머지 수입화물은 모두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② 특구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가수출제한품목 혹은 별도 규정의 소수 상품외에는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③ 특구기업이 생산한 상품은 특구내에서 판매하는 각종 광

물류, 담배, 술 등에 대하여 규정세율에 의거 공상통일세를 반으로 감면한다. 특구인민정부도 소수의 상품에 대한 공상통일세의 징수 혹은 감면을 스스로 확정한다. 기타 다른 상품은 다시 공상통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④ 특구기업이 상업, 교통운수업, 서어비스성 업무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3%의 세율에 따라 공상통일세를 징수한다. 이러한 기업은 설립초기에는 납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구인민정부는 공상통일세를 정기적으로 감면·면제하는 특혜를 결정할 수 있다.

3. 개발구기업의 공상통일세 감면특혜

중국대륙에서의 개발구기업이란 客商이 大迂, 秦皇島, 天津, 烟台, 青島, 連云港, 南通, 上海, 亭波, 溫州, 福州, 廳州, 堪江, 北海 등 14개 항만도시의 경제기술개발 구내에 설립하는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客商독자경영기업을 가리킨다. 개발구기업의 공상통일세의 감면특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수입하여 私用하는 건축재료, 생산설비, 원자재, 부속품, 부품, 교통수단,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개발구기업이 수입한 원자재, 부속품, 부품으로 가공한 상품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그 수입재료, 물품을 법에 따라 공상통일세를 추가 징수한다.

② 개발구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외에 모두 공상통일세를 면제하며, 내수상품은

법에 따라 징수한다.

③ 개발기업의 업무로 혹은 개발구내에 주거하는 客商인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私用가정용품 및 교통수단에 대하여는 市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증명문서에 의거하여, 합리적 수량내에서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4. 구시구(舊市지역 : 역사주)기업의 공상통일세 감면특혜

중국대륙에서 구시구기업이란 客商이 연해 14개 항만도시 개발구이외의 구시구 및 汕頭, 珠海, 廈門시 시구에 설립한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客商독자경영기업을 가리킨다. 구시구의 공상통일세 감면특혜는 다음과 같다.

① 투자수입, 추가투자수입을 위한 기업의 생산용 설비, 영업용 설비, 건축용 자재 및 기업이 私用하는 교통수단,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

② 구시구에서 생산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국가수출제한품목 이외에는 공상통일세를 면제하며, 내수상품은 법에 따라 납세한다.

③ 구시구기업이 수입한 원자재, 부속품, 부품, 포장재료 등을 수출상품생산에 사용할 경우 공상통일세가 면제되며, 내수상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④ 구시구기업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업체인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私用 가정용품 및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市인민정부주관부서의 증명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수량내에서 공상통일세가 면제된다.

기업소득세에 관한 특혜규정

중국대륙에서 기업소득세란 기업이 생산에 종사하거나 경영하여 얻은 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중외합자기업, 외자기업의 소득세세율에 대하여 국내기업보다 더욱 특혜적인 세율을 규정하였다. 그중 중외합자기업의 소득세세율은 30%이며, 소득액에 따라 10%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독자기업의 세율은 초과액 누진세를 5등급으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 최저등급은 전해 소득액이 2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이 20%이고, 최고등급은 전해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40%이며, 별도로 납세할 소득세액에 따라 10%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그중 특구기업, 개발구기업 및 구시구기업은 소득세세율에서 더욱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구기업 및 개발구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15% 감면하여 징수하며, 필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모든 기술집약, 지식집약형 항목 혹은 에너지교통, 항만건설항목에 투자한 구시구기업은 비준을 거쳐 15%세율을 감면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상술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타 업종은 비준을 거쳐 그 소득세세율을 각각 중외합자기업 및 외자기업세율을 따라 20% 할인하여 징수한다. 지방소득세 역시 지방인민정부가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한다. 세율상의 특혜를 제외하면 상술한 각 기업은 기업소득세 부문에서 각각 많은 감면특혜를 받고 있다.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개인소득세 납부방법

대만동포가 본토에서 친지방문, 여행 혹은 경제활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개인소득세의 납세범위

중국본토에서 만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중국국내 및 국외에서 얻은 소득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해야 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노임, 임금소득은 초과액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은 5%부터 45%까지이다. 노역보수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보너스소득, 재산임대 및 기타 소득 등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다.

(2) 개인소득세의 세율

노임, 임금소득은 초과액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5%부터 45%까지이다. 노역보수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이자, 주식배당금, 보너스소득, 재산임대 및 기타 소득 등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20%이다.

(3) 개인소득세의 면세범위

납세를 면제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과학, 기술, 문화성과 장려금,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은행 및 신용합작사 저축예금의

이자, 복리금, 위로금, 구제금, 보험배상금, 간부직공의 퇴직금, 퇴직연금, 각국정부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관 봉급소득, 중국정부가 참가하는 국제공약, 조인한 협의중 면세로 규정한 소득, 재정부 면세인준을 거친 소득등이다.

(4) 개인소득세의 납세절차

개인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소득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세의무자가 된다. 공제납세의무자가 없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납세를 신고한다. 자기납세신고인 및 공제납세의무인은 매월 7일이전에 해당지역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표를 송부하며, 전달에 납부, 공제해야 할 세액을 납부한다. 국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해당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표를 송부하여 납세액을 납부한다. 자기납세신고인 및 공제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라 신속히 납세신고표를 송부하며, 만약 특별한 사유로 규정된 기한내에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부기한 내에 신청하여 해당지역 세무기관의 인준을 거쳐야 적당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이 외국화폐일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에 당일 국가외환관리총국이 공포한 외환시세를 기입하여 인민페로 환산하여 세액을 납부한다. 중국대륙에서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이 출경할 경우, 출경 7일이전에 해당지역 세무기관에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출경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XI. 文物遺蹟과 風景名勝地

문물유적보호에 관한 중국의 관련규정

중국은 세계4대문명국의 하나이며, 근면하고 총명한 각 중국 민족은 중화의 대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손을 번성시켰으며, 찬란한 중화의 민족문화를 창조하였다. 오늘날까지 지상과 지하, 그리고 수중에서 풍부한 문물유적과 아름다운 명승지를 보존하여 중화의 후손으로 하여금 긍지를 갖게 하였으며 세계인의 경탄과 존경을 받고 있다.

중국은 문물유적과 명승지에 대해 상당한 중시와 보호를 하고 있다. 신중국성립 후 오래지 않아 중앙인민정부는 1950년 5월 《진귀한 문물도서의 반출금지임시조치》를 반포하여 문물유적의 불법적인 해외유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으며, 1960년에는 문화부와 대외무역부가 공동으로 《문물반출감정표준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발표하고 《문물반출감정참고표준》을 제정하여 문물의 정상적인 반출을 위한 근거를 만들었다. 동년, 국무원은 《문물보호관리임시조례》를 반포하였으며 이어서 《제1차 전국 중점문물보호기관 공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10년동란(문화대혁명을 지칭 : 역자주)은 중국역사의 문물유적에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하여 사람들을 몹시 애석하게 하였다. 그러나 1978년 11기3중전회이래 공산당과 인민정부는 문물유적과 명승지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중시하여, 관리의 과학화와 법제화를 추구하여 일련의 관련법규를 제정하였다. 1982년 12월 19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5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의 문물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문물보호단위, 고고발굴·박물관의 문물소장·개인소장문물과 문물의 반출·장려와 벌칙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물업무를 의법관리하는 궤도에 올려놓았다.

중국의 문물유적범위와 문물보호단위

문물유적은 전체 중화후손의 공동 향유물이다. 대만동포는 본토 각지의 참관여행시 자발적으로 본토의 문물유적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토의 주요 문물유적과 문물보호단위를 소개한다.

1. 국가의 법률보호를 받는 문물고적의 범위

중국본토내에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역사·문화·예술·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문화유적·고분·고건축·석굴사와 석각

② 중대한 역사적 사건·혁명운동·저명인물과 관계가 있으며, 중요한 기념적 의의·교육적 의의 및 사료가치를 지닌 건축물·유적·기념물

③ 역사상 각 시대의 진귀한 예술품·공예미술품

④ 중요한 혁명문헌자료 및 역사·예술·과학적가치를 지닌 수기·고서자료 등

⑤ 역사상 각시대, 각 족의 사회제도·사회생산·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실물

이외에 과학적 가치를 지닌 고대척추동물 화석과 고대인류의 화석과 같은 것 등은 똑같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문물보호단위

혁명유적·기념건축물·고대문화유적·고분·고건축·석굴사·석각 등의 문물은 이들의 역사·예술·과학적 가치에 기초하여 각기 다른 등급의 문물보호단위로 확정된다. 현·자치현·시급의 문물보호단위는 현·자치현·시 인민정부기관이 사정하여 공포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등록을 신청한다. 성·자치구·직할시급 문물보호단위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기관이 사정하여 공포하고 국무원에 등록을 신청한다. 국가의 문화행정관리기관은 각급 문물보호단위중에서 중대한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지닌 것을 전국의 중점보호문물로 선택하거나 전국의 중점문물보호단위를 직접 지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사정·공포한다. 국무원은 이미 1961년, 1982년, 1988년 세차례에 걸쳐 세번에 걸친 전국의 중점문물보호단위를 공포했다. 지면관계상 전국의 중점문물보호단위를 부분적으로 대만동포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1) 혁명유적 및 혁명기념건축물은 모두 85곳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광둥동황경내의 임척서소연지와 호문포대의 구 유적지(1839년), 광둥성 광주시 삼원리의 평영단 유적(1841년), 강소 남경시의 태평천국 천황부 유적(1853~1864년), 호남성 장사현 및 장사시의 황흥 고거처와 묘(1874~1917년), 절강성 소흥시의 소흥 노신의 거처(1881~1898년), 광둥성 중산시의 손중산 거처(1892년), 강소성 회안시의 주은래 고가

(1898~1910년), 절강성 소흥시 추근의 생가(1907년), 광둥성 광주시의 황하강 72열사묘역(1911년), 호북성 무한시의 무창봉 기 준정부의 유적(1911), 상해시 향산로의 손중산 생가(1919년), 광둥성 광주시의 국민당 1차대표대회 장소(혁명광장포함)(1924년), 광둥성 광주시의 황포군관학교 옛터(1924~1927년), 호북성 함령시의 정사교 전쟁유적(1926년), 강소성 남경시의 중산릉(1929년), 북경시의 천안문(명대에 최초로 건축되어 수차에 걸쳐 중건), 상해시 만국공묘의 송경령의 묘(1981년) 등등이다.

(2) 고문화유적은 모두 85곳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북경방산경내의 주구점 원인 유적지(구석기시대), 운남성 원묘경내의 원모원인 유적지(구석기시대), 섬서성 란전경내의 란전원인 유적지(구석기시대), 하남성 승지경내의 앙소촌 유적지(신석기시대), 서안경내의 반파 유적지(신석기시대), 사천성 광한경내의 삼성퇴적지(商周), 섬서성 장안경내의 풍고 유적지(周), 섬서성 서안경내의 아방궁 유적지(秦), 감숙성 돈황경내의 옥문관 및 만리장성 봉화 유적지(대방판·소방판포함)(漢), 섬서성 서안경내의 한나라 장안성 유적지(西漢), 신강약강경내의 루란고성유적(漢~晉), 하남성 낙양경내의 한위낙양고성(東漢~北魏), 섬서성 서안경내의 대명궁유적(唐), 북경 해정경내의 원명원유적(淸) 등

(3) 고건축 및 역사기념건축물에는 만리장성·경향대운하·북

경의 고궁·이화원·천단·지화사·벽운사·계대사·광제사·옹화궁·백운관·방산운거사탑·묘응사백탑·진각사금강보좌·강소성 소주의 졸정원·망사원·창랑원·사자림·유원·서원, 강소성 소주의 한산사·현모관삼청전·운암사탑, 서광탑, 사천의 도강연·자공영해정·성도무후사·두보초당·어미의 대표비래전, 산동성 서하의 모씨장원, 유방의 십물원·요성광악루·요성산협회관·장청영암사·곡부공묘·봉래의 봉래각·태안대표 등등이 있다.

(4) 고분에는 섬서성 황릉경내의 황제릉, 산동성 곡부경내의 공림(東周), 섬서성 임동경내의 진시황릉(泰), 섬서성 흥평경내의 무릉(西漢), 요녕성·요양경내의 요양벽화묘군(漢~晉), 섬서성 한성경내의 사마천의 묘와 사당(西漢~宋), 섬서성 간형경내의 소릉(당태종 이세민의 묘) (唐), 서장 궁결경내의 장왕묘(서기 7세기 서장왕 송찬간포 등 서장왕의 고분), 산서성 하현경내의 사마광 묘(北宋), 사천 공현경내의 樊人縣棺장(묘) (宋~淸), 절강성 항주경내의 악비묘(南宋), 강소성 남경경내의 명효릉(明太祖 주원장의 묘), 북경시 창평경내의 13릉(明), 북건성 남안경내의 정성공묘(淸), 내몽고 이금호락기경내의 징키스칸릉(1954년 이장) 등등이 있다.

문물반출과 개인의 문물휴대출국에 관한 문제

문물의 반출과 개인의 문물휴대출국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문화행정부문이 지정한 성·자치구·직할시의 행정관리기관은 감정을 거쳐 수출허가증명을 발급한다. 문물의 반출은 반드시 지정한 개항지에서 송출해야 한다. 문물의 반출을 취급하는 개항지는 북경·천진·상해·광주의 4곳이다. 감정을 거쳐 반출할 수 없는 문물은 국가가 구매할 수 있다. 국영문물상점과 우의상점에서 외환으로 구입한 모든 문물은 세관이 문화행정관리기관의 포장에 찍힌 감정표시 및 상점의 대외판매용송장을 보고 검사통관한다. 개인이 유적문물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때에는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문화행정관리기관의 감정을 거쳐 수출허가증명이 있어야만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물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해외의 전람회에 출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문물반출의 감정표준에 관해 문화부와 대외무역부는 1960년 《문물수출감정표준에 관한 몇가지 의견》으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949년을 주요 기준선으로 하여 1949년 이전에 제작·생산하거나 출판된 것중 일정한 역사·과학·문화예술 가치를 지닌

문물·도서는 원칙상 일률적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② 혁명문물은 연한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③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중국인을 왜곡하고 추악하게 묘사하거나 정치적으로 불량한 영향이 있는 문물·도서는 일률적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④ 소수민족의 문물중 1949년 이전의 것은 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⑤ 1949년 이후의 것중 고도의 정치적 의의와 예술수준을 갖춘 예술창작·원고·수기 등도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⑥ 계획적으로 반출하는 일반문물에 대해서는 문물의 종류에 따라 1795년(즉 청조 건륭제60년) 및 1911년(즉 청조 선통제3년의 신해혁명전)을 기한으로 하여, 1795년 이전의 문물은 일률적으로 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1911년 이전의 것도 일률적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이상 두 종류의 문물중 특별허가를 거친 것은 제외한다.

문물유적보호에 대한 표창과 문물유적 파괴에 대한 처벌

문물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적에 해당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에서 적절한 정신적 격려 혹은 물질적 격려를 해준다.

- ① 문물정책법령을 성실히 집행하고 문물보호의 성과가 현저한 자
- ② 문물보호를 위해 위법범죄행위와 결연히 투쟁한 자
- ③ 개인소장의 중요문물을 국가에 헌납한 자
- ④ 문물을 발견하여 제때에 신고하거나 상납하여 문물을 보호한 자
- ⑤ 문물의 과학기술적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발명·창조를 하거나 기타 중요한 공헌을 한 자
- ⑥ 문물이 파괴위험에 직면했을때 그 문물의 구조에 공헌한 자
- ⑦ 장기적으로 문물업무에 종사하여 현저한 성과가 있는 자

아래에 열거한 행위자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 ① 지하·내수·영해 및 기타장소에서 문물을 발견하고도 은닉하여 신고하지 않고 국가에 헌납하지 않은 경우는 공안기관이 경고나 벌금부과 조치를 내리며 불법으로 획득한 문물을 추징한다.

② 문화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문물의 판매활동을 경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으로 경영하는 문물을 몰수한다.

③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물을 사적으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벌금을 부과하고 그 문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① 국가문물을 횡령하거나 절도하는 행위

② 진귀한 문물을 절도하여 반출하거나 문물의 투기매매를 하는 경우에 있어 사안이 심각한 경우

③ 국가가 보호하는 진귀한 문물과 명승고적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

④ 국가의 업무인원이 직무를 태만하여 진귀한 문물이 훼손되거나 유실되는 경우에 있어 사안이 심각한 경우

이 밖에 사적으로 고문화유적과 고분을 파헤치는 행위는 절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진귀한 문물을 사적으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진귀한 문물을 몰래 반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문물업무인원이 그 관리한 문물을 횡령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엄중처벌한다.

중국의 주요 풍경명승지 및 그 관리

중국의 수려한 풍경과 명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화 각 민족의 공동재산이다. 1985년 6월 7일 국무원은 《풍경명승지관리 임시조례》를 선포하여 풍경명승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대만동포를 포함한 풍경명승지의 주민과 관광객은 모두 중국 풍경명승지의 경물·목립식생·야생동물과 각종 시설을 애호하여야 한다. 동시에 풍경명승지내의 관련 규칙과 제도를 자각적으로 준수하여 정부의 풍경명승지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한 풍경명승지 및 그 관리업무를 소개한다.

1. 명승지와 등급분류

풍경명승지라 함은 감상·문화 혹은 과학적 가치를 구비하고 자연경물 및 인문경물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이 수려하고 사람들에게 관광·휴식 또는 과학·문화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와 범위를 갖춘 지역을 지칭한다.

풍경명승지는 그 경물의 감상, 문화과학적 가치와 환경의 질과 규모의 대소, 관광조건 등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시·현급 풍경명승지는 시·현의 주관기관이 조직한 관련부문이 풍경명승자원 조사평가보고를 시·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의·공포하며 성급 주관기관에 보고·등록한다. 성급 풍경명승지는 시·현 인민정부가 제출한 풍경명승자원 조사평가보고를 성·자

치구·직할시에 보고하여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심의·공포하고 성향 건설환경보호부에 보고·등록한다. 국가중점 풍경명승지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풍경명승자원 조사평가보고를 제출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의·공포한다.

국무원이 1982년,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심의·공포한 국가중점 풍경명승지는 모두 84곳이다. 이 중 사람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곳은 다음과 같다.

북경팔달령-13릉 풍경명승지(이하 풍경명승지생략), 하북성 승덕 피서산장의 8묘, 하북성 진황도 북대하, 산서성 오대산, 산서성 향산, 요녕성 홍성해안, 산서성 황하 강구폭포, 요녕성 압록강, 길림성 송화호, 흑룡강성 경백호, 강소성 태호, 남경 종산, 항주 서호, 절강 부춘강-신안강·절강성 안탕산·절강성 보타산·안휘성 황산·안휘성 구화산·안휘성 천주산·북경 무이산, 복건성 고량도서-만석산·강서성 여산·강서성 정강산·산동성 태산·산동성 청도노산·하남성 고산·호북성 무한동호·호북성 무당·호남성 형산·호남성 악양루 동정호·광둥성 계경·광서성 계림이강·광서성 계평서산·사천성 아미산·금불 장강삼협·사천성 중경진운산·사천성 청성산·귀주성 직금동·귀주성 용궁·귀주성 황과수·운남성 로남석림·운남성 대리·운남성 서쌍판납·운남성 곤명진지·섬서성 화산·섬서성 임동여산·감숙성 맥적산·영하성 서하왕릉·신강성 천산천지·서장 아룽하 풍경명승지 등이다.

2. 풍경명승지의 관리

중화인민공화국의 성향(城鄉)건설 환경보호부는 전국 풍경명승지의 업무를 주관하고 지방 각급인민정부의 성향건설기관은 해당지구 풍경명승지의 업무를 주관한다.

인민정부의 풍경명승지에 대한 주요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관리 : 풍경명승지의 토지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범점유해서는 아니된다.

② 경물과 환경관리 : 풍경명승지내의 모든 경물과 자연환경은 반드시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파괴하거나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풍경명승지 및 외곽지대의 각종 건설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경관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유람을 저해하는 시설을 건설해서는 아니된다. 관광객이 집중하는 유람구역내에는 호텔·초대소 및 휴양·요양기관을 설립해서는 아니되며, 진귀한 경물주위와 중요 경관지점에는 필수적인 보호·부속시설 이외에는 기타 건축시설을 신증축해서는 아니된다.

③ 녹화관리 : 풍경명승지는 반드시 남벌금지·산림육성·식수녹화·방화호림·병충해의 예방퇴치 등을 잘하고 좋은 삼림과 토양의 식생·다양한 동식물의 생장과 서식조건 등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풍경명승지 및 그 외곽지대내의 삼림은 권한의 소재를 구분하지 않고 계획적인 육성관리를 하며 벌채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록 그 벌채가 확실한 필요에 의한 양육성 벌채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이름 있는

고목은 벌채를 엄금한다. 풍경명승지대의 표본·야생약재와 기타 삼림부산품의 채취에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동의를 필요하며, 한정된 수량으로 특정한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④ 안전관리 : 풍경명승지는 반드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여행객의 안전과 경물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풍경명승지보호에 대한 표창과 풍경명승지 파괴에 대한 처벌

《풍경명승지관리임시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풍경명승지의 보호에 현저한 성과나 중대한 공헌이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인민정부 또는 관련 주관기관은 표창을 주어야 한다.

《풍경명승지관리임시조례》를 위반한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또는 경제적 처벌을 한다.

① 풍경명승지의 토지를 무단점거하여 위법건설을 하는 경우는 관련기관이나 관리기구가 점거한 토지에서의 퇴거와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하며 상황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경물과 삼림식생을 훼손하고 야생동물을 포획·사냥하거나 환경을 오염·파괴하는 행위는 관련기관 또는 관리기구가 그 파괴행위의 정지와 경제적 손실의 배상을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풍경명승지의 관광질서와 안전제도를 파괴하고 말려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처분을 내리며, 관련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속하는 때에는 공안기관이 의법조치한다.

상술한 행위가 사안이 심각하고 형법에 저촉되거나 국가의 관련 삼림·환경보호 법률과 문물보호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법처벌한다.

XII. 治安 管 理

중국의 치안관리 처벌조례와 치안처벌

1986년 9월 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17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를 통과시키고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조례는 모두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치안처벌을 받고 어떠한 처벌을 적용하며 어떻게 판결과 집행을 진행하는가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치안관리에 관한 중요한 법규이다. 대만동포가 본토를 방문한 이후의 합법적 권익은 본 조례의 보호를 받으며, 만약 위반한 경우에는 치안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대만동포는 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치안처벌은 행정처벌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은 기관내부의 기율처분과는 다르며, 형사처벌과도 다르다. 치안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이다. 위법행위의 수준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여 형사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국가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인 비판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치안관리처벌조례에 의거 국가치안관리기관에서 치안처벌을 내려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를 교육한다. 치안관리기관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교육과 처벌을 상호 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소수

만을 처벌하고 다수는 교육시킨다. 심지어 민간분규로부터 발생한 폭행 혹은 타인의 재산을 손상하는 등의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내용이 경미한 사안은 치안관리기관이 조정하여 처리한다. 국가의 각급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치안관리기관이 된다.

치안관리처벌조례가 본토의 대만동포에 대해 지니는 구속력

치안관리처벌조례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의 위반행위는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조례를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선박 혹은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의 위반행위도 본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말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는 모두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외교특권과 면책권을 지닌 외국인) 본토의 공민과 본토경내에 있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동포를 포함한 어떤 사람에게도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이라 함은 영토, 영해, 영공을 포괄하며, 외국항구나 외국의 공항에 운항하거나 정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혹은 항공기,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포괄하는 것이다.

치안관리처벌의 종류 및 운용

1. 치안관리처벌의 종류

치안관리처벌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행정 제재로서 3종류로 구분된다.

(1) 경고

(2) 벌금: 벌금액은 일반적으로 인민폐 1원이상 200원이하이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심각할 경우 벌금은 인민폐 3,000원이하 혹은 5,000원이하로 집행할 수 있다.

(3) 구류: 구류의 기한은 1일이상 15일이하이다.

이밖에 치안관리를 위반하고 취득한 재산과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원주인에게 반환하거나 몰수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할 때 사용한 본인 소유의 도구는 규정에 의거 몰수할 수 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할 때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이 손실을 배상하거나 의료비용을 부담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인서를 쓰도록 명령하거나 규정에 의거 노동교양을 실시한다.

2. 치안관리 처벌의 운용

(1) 치안관리를 위반한 특정한 주체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처벌면제·처벌경감을 할 수 있다.

① 만14세미만인 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는 처벌을

면제한다. 그러나 훈계를 할 수 있고 그 감호인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14세에서 만18세인 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는 경벌로 처리한다.

② 정신질환자가 분별력이 없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는 처벌을 내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감호인에게 엄격한 간호관리와 요양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간헐성 정신질환자가 정신이 정상인 상태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는 처벌을 한다.

③ 농아나 맹인이 생리적인 결함의 원인으로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

④ 취중인 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는 처벌을 내린다.

⑤ 기관, 단체, 기업, 업무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는 그 직접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 기관의 주관자가 지시한 경우는 그 주관자를 처벌한다.

(2) 치안관리를 위반한 다음의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경감 혹은 처벌을 면제한다.

① 내용이 특별히 경미한 경우

② 착오를 능동적으로 인정하고 적시에 개정한 경우

③ 타인의 협박이나 유혹에 의한 경우

(3) 치안관리를 위반한 다음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한다.

① 비교적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② 타인을 협박, 유혹하거나 만18세 미만인 자를 사주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③ 검거인과 증인에게 보복공격한 경우

④ 개전의 정이 없이 자주 반복하는 경우

(4)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추궁기한은 6개월이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를 6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이 발견하지 못하면 소급처벌할 수 없다. 추궁기한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의 발생일로부터 계산하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연속하거나 계속적인 상태에 있으면 행위종료일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 및 그 처벌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 및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 및 처벌에는 9가지 종류가 있다. 소방관리를 위반한 행위 및 처벌과 호구나 주민관리를 위반한 행위 및 처벌을 제외하고 여기에서는 아래의 7가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 및 처벌을 소개한다.

1. 공공질서 문란행위 및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해 치안처벌을 받는 공공질서 문란행위는 아래의 예에 준한다.

① 기관, 단체, 기업, 사업기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업무, 생산, 영업, 의료, 교육, 과학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나 아직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② 터미널, 부두, 민용공항, 시장, 상점, 공원, 극장, 유흥업소, 운동장, 전시관 혹은 기타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③ 버스, 전차, 기차, 여객선 등의 공공 교통수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④ 집단폭력, 폭력조장, 부녀자희롱 혹은 기타 불량한 활동을 하는 경우

⑤ 유언비어를 유포해 대중을 혼란시키고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경우

⑥ 위험한 상황으로 허위과장보도하여 혼란을 조성한 경우

⑦ 국가공무원의 의법적인 공무집행을 거절·방해하나, 폭력·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상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나 형사처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15일이하의 구류와 인민폐 200 원이상의 벌금 또는 경고에 처할 수 있다.

2. 공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및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해 치안처벌을 받는 공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아래의 예에 준한다.

① 총기나 탄약의 불법적인 휴대, 보관 혹은 기타 총기관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안

② 폭발, 독극물, 가연성, 방사성 등의 위험물품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위험물품을 생산, 보관, 운송하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비수, 삼지창, 재크나이프 혹은 기타 휴대를 통제하는 도류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 휴대하는 경우

④ 여관, 호텔, 극장, 유흥장, 운동장, 전시관을 경영하거나 기타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의 통지를 받고도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군중집회 혹은 문화, 유흥, 체육, 전시, 전시판매 등의 군중성 활동을 조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안기관의 통지를 받고도 개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여객선, 부두의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의 통지를 받고도 개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여객선에 새치기 승선을 하지말 것을 듣지 아니하거나 여객선에 초과 적재나 조종사를 협박하여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한 운항을 하게 하였으나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철도, 도로, 수역항로, 제방에서 구멍을 파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고 지시표지를 이동하거나 훼손하여 교통운수안전에 영향을 끼쳤으나 형사처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공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5일이하의 구류, 인민폐 2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에 처할 수 있다.

3. 타인의 인신권리를 침범하는 행위 및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해 타인의 인신권리를 침해하여 치안처분을 받는 행위는 아래의 예에 준한다.

① 타인을 구타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②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행위

③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④ 가족을 학대하거나 학대를 받은 자가 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⑤ 공갈협박편지 혹은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정상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⑥ 만18세미만인 자를 협박하거나 유인하여 공포, 잔인한 프로그램을 공연하게 하여 그 신심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⑦ 타인의 우편물과 전보를 은닉, 파기 혹은 몰래 개봉하는 경우

이상의 타인의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나 형사처벌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5일이하의 구류, 인민폐 2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에 처한다.

4. 공사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및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해 치안처벌을 받는 공사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래의 예에 준한다.

① 소량의 공사재산을 절도, 사취, 강탈하는 행위

② 국가, 집단, 개인의 재산을 기만강탈하는 행위

③ 공사재산을 사기치는 행위

④ 공사재산을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

이상의 공사재물을 침해하는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나 형사처벌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15일이하의 구류 혹은 경고에 처하고 인민폐 2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또는 병과할 수 있다.

5. 사회관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및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해 치안처벌을 받는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12종이 있으며 3가지 상황으로 구분

하여 각기 다른 처벌을 부과한다.

① 장물임을 알고 구매하는 행위. 승차권과 승선권, 문예공연, 체육경기 등의 표를 암거래하나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지 않는 행위. 독극물을 주사, 투입하는 행위, 봉건적인 미신수단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재산을 사취하나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지 않는 행위. 타인의 원동차량을 절도하는 행위. 상술한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5일이하의 구류, 인민폐 200원이하의 벌금 혹은 경고에 처한다.

② 문물을 발견하고도 은닉하여 국가에 상납하지 아니하는 행위. 공인을 새기는 도장업이 관리규정을 위반하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행위. 국가보호의 문물, 명승고적을 고의로 손상시키고 공공장소의 조소물을 훼손하나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지 않는 행위. 상술한 행위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민폐 2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에 처한다.

③ 도로표지, 교통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임의로 이동하는 행위. 가로등, 우편함, 공중전화 등 공공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나 형사처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잔디, 화단, 수목을 위법으로 파괴하는 행위. 도시와 읍에서 음향기재를 위법사용하여 고성방가하여 타인의 업무와 휴식에 영향을 끼치고 제지해도 듣지 아니하는 행위. 상술한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민폐 50원이하의 벌금 혹은 경고에 처한다.

6. 교통관리를 위반한 행위 및 처벌

치안관리처벌조례규정에 의해 치안처벌을 받는 교통관리위반 행위는 15종이 있으며 3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처벌을 부과한다.

① 차량번호판 혹은 운전면허증을 전용, 차용하는 행위. 무면허인 자, 음주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을 무면허인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도시집회, 여행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지시를 듣지 아니하는 행위. 차량을 무리하게 막거나 승차를 강행하여 차량의 정상운행에 영향을 미치고 저지를 듣지 아니하는 행위. 현급이상의 공안기관이 통행을 법령으로 금지한 지구에서 통행을 강행하고 공안원의 제지를 듣지 아니하는 행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였으나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못하는 행위. 상술한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5일이하의 구류와 인민폐 200원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에 처한다.

② 교통부문의 통행검사와 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원동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부품이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동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음주후에 원동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차량운전기사를 사주하거나 협박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도로상에 천막을 치고 가옥을 짓고 노점을 개설하여 물건을 적재하거나 기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상술한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민폐 50원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에 처한다.

③ 원동차량을 운전하면서 적재와 속도 혹은 교통표지, 신호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비원동차량의 운전기사 혹은 행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교통기관이 차량의 주정차를 법령으로 금한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 원동차량에 특수음향경보기나 표지 등의 용구를 불법으로 부착, 사용하는 행위. 상술한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인민폐 5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에 처한다.

7.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치안관리 위반 행위 및 그 처벌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치안관리 위반행위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교적 엄중한 치안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① 매음, 매춘행위 및 매음과 매춘을 소개하거나 받아들이는 행위. 매음이라 함은 부녀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육체를 팔아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매춘행위라 함은 남성숙박자와 매음부녀자간에 발생하는 양성관계의 행위를 지칭한다. (여기에서 암창이라 함은 매음부녀자를 지칭한다. 중국은 매음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 매음부녀자의 매음활동이 비교적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암창이라 부른다:역자주) 매음, 매춘행위는 매춘녀와 매춘행위의 남성이 서로 인지하는 상태에서 매음과 매춘행위를 진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매음용인과 매춘을 위해 투숙하는 행위는 매음과 매음을 위해 투숙하는 행위를 위해 음란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상술한 행위중의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5일이하의 구류, 경고에 처하고 자인서를 쓰거나 혹은 규정에 의거 노동교육을 실행하며 인민폐 5000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14세미만인 미성년자와의 매춘행위는 형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강간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

② 정부 규정을 위반하여 양귀비 등 독극물의 원식물을 재배하는 행위. 마취약품의 생산, 공급, 사용과 원식물의 재배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지정기관에서 의료, 과학연구와 교육 등 사회에 유익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만 행한다. 기타의 어떤 기관 혹은 개인에게도 재배, 제조, 판매, 보관,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재배한 아편 등의 독극물 원식물을 제거하는 것 이외의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인민폐 3000원이하의 벌금을 추징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③ 도박이나 도박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는 치안관리 처벌조건의 규정에 근거하여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인민폐 3000원이하의 벌금을 추징하거나 병과할 수 있으며, 또는 규정에 의거 노동교육을 실시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 음란서적, 음화, 음란테이프 혹은 기타 음란물품을 제작, 복제, 출판판매, 대여 혹은 전파하는 행위. 소위 음란서적, 음화

그리고 음란테이프 혹은 기타 음란물이라 함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색정적인 음란한 형상을 노골적으로 알리는 녹화테이프, 녹음테이프, 영화, TV영화, 슬라이드, 사진, 그림, 서적, 신문 그리고 이러한 류의 그림이 새겨진 장난감과 일용품 및 음란약품, 음란도구를 지칭한다. 제작이라 함은 편저, 그림, 인쇄 등의 행위를 지칭한다. 복제라 함은 촬영, 인화, 해적판 제작 등의 행위를 지칭한다. 출판판매라 함은 발행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대여라 함은 음란서적, 음화와 음란비디오 등의 음란물품을 타인이 보도록 대여하고 중간에서 소량의 비용을 갈취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전파라 함은 각종 방식으로 음란서적, 음화, 음란비디오와 기타 음란물품의 내용과 영향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치안관리처벌조례는 음란서적, 음화, 음란비디오 혹은 기타 음란물품을 제작, 복제, 출판판매, 대여 혹은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상술한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인민폐 3000원이하의 벌금을 추징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노동교육을 실시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치안관리처벌의 절차

1. 치안관리처벌의 판결기관

중화인민공화국의公安기관은 국가치안관리기관으로서 치안처벌을 판결하는 기관이다. 판결해야 하는 치안처벌의 경중의 상위에 근거하여 치안관리처벌조례는 각기 다른 판결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치안처벌은 일반적으로 현·시公安국,公安분국 혹은 현1급에 해당하는公安기관에서 판결한다. 경고, 인민폐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처벌에 대해서는公安파출소에서 판결할 수 있다. 농촌과公安파출소가 없는 곳에서는公安기관이 위탁한 향(진)인민정부에서 판결할 수 있다.

2. 치안처벌판결절차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에게 경고 혹은 50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벌금액수가 50원을 초과하고 피처벌인의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公安원이 현장에서 처벌할 수 있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기타 처벌은 아래의 판결절차를 적용한다.

① 소환.公安기관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에 대해 소환할 필요가 있으면 소환장을 사용한다. 현장에서 발각된 치안관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피하는 자에 대해서는公安기관이 강제로 소환할 수 있다.

② 심문.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는 공안기관의 심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심문은 기록해야 한다. 피심문인은 대조를 통해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기록상에 서명을 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심문인도 기록상에 서명해야 한다.

③ 증거채택. 공안기관이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증인은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심문은 기록해야 한다. 증인은 대조를 통해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기록상에 서명 혹은 날인한다.

④ 판결. 심문을 통해 증거를 조사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명확하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판결한다. 판결은 판결문에 기입해야 하고 즉각 본인에게 선포한다. 판결문은 동일 양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피판결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피판결인의 소재기관에 교부하며, 1부는 피판결인의 상주지 공안파출소에 교부한다.

⑤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소환 후에 제때에 심문하여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류처벌을 적용하며 심문·증거조사의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치안처벌집행절차

치안처벌 판결의 집행은 아래를 포함한다.

① 구류의 집행. 구류처벌을 받은 자는 한정된 시간내에 지정한 구류의 처벌에 응한다. 집행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

제집행한다. 구류기간에 피구류인의 식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② 벌금의 집행. 벌금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을 현장에서 공안원에게 납부하거나 벌금통지나 판결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지정한 공안기관에 송부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을 어기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1일에 인민폐 1원에서 5원까지 벌금이 증가한다. 벌금납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도 집행한다. 공안기관이나 공안원은 벌금을 납부받은 후에 피벌금인에게 벌금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③ 재산몰수의 집행. 판결기관은 재물을 몰수하면 피몰수인에게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④ 손해배상과 의료비 부담의 집행. 손해배상 혹은 의료비 부담 피판결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비용을 송부하고 판결기관에서 대리·납부한다. 액수가 크면 분기 납부할 수 있다.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는 판결기관에서 그 소재기관으로 통지하여 본인의 임금중에서 공제하거나 차압재산중에서 저당한다.

4. 치안처벌 불복의 제소와 기소

당사자가 치안관리 처벌에 불복하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① 공안기관 혹은 향(진)인민정부가 치안관리의 위반을 인정한 사실에 오차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② 상술 기관이 처벌시에 적용한 법률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존에 인정한 위법사실에 착오가 있고 처벌중에 적용한 법률에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술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제소 혹은 소송을 통해 치안관리 처벌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의 제소는 치안처벌 판결문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상1급 공안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어기면 무효이다. 상1급 공안기관은 상고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기한을 어긴 경우는 위법이 된다.

당사자가 상고를 거친 후 상1급 공안기관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판결문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안관리처벌판결을 내린 원공안기관 혹은 향(진)인민정부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송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고 안전 심리의 종결을 기다리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일방이 부담한다. 당사자가 만일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이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이 정한 기한내에 상1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XIII. 刑 法

중국형법의 기본 원칙

1979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이 통과되었으며, 현행 중국의 형법은 총칙과 분칙으로 양분된 192조로 되어 있다. 이 형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죄형법정의 기초원칙

현행 형법은 무엇이 범죄이고 각종 범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이고 형의 종류 및 각 형의 종류는 어떻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각종 죄의 구체적인 형량의 정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원칙을 전면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토면적이 광활하고 인구가 많아 상황이 복잡하여 단일 방면의 경험만을 총결한 첫번째 형법은 자세한 규정이 어려웠다. 동시에 중국은 개혁방안의 신시기에 처해있어 수시로 새로운 범죄형식이 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은 죄형법정정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형법중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사회에 대한 위해성이 매우 커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의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통제적인 유추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형법 제79조는 “본 법의 분칙에 명문규정이 없는 범죄는 본 법 분칙과 가장 유사한 조문에 의거 죄형을 판정할 수 있으나 최고인민법원에 심사비준을 신청해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하에서 적용한 유추는 죄형법정의 필요 보충이다.

2. 죄형의 상호적용원칙

죄형의 대소에 근거하여 형벌의 경중을 결정한다. 중범죄는 중벌로, 경범죄는 경벌로 판정하여 벌이 그 죄에 상응하여야 한다. 형량이 편중되고 벌이 죄와 상응하지 않는 것은 반대한다.

모든 범죄자가 공평하고 합리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여 형벌의 가장 합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3. 주객관이 일치된 형사책임원칙

범죄의 확정과 형사책임의 추궁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관과 객관이 상호 일치된 표준을 견지한다. 행위가 사회에 대해 비교적 커다란 위해를 끼치고 주객관상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에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량부과시에 객관적으로 사회에 끼치는 위해정도를 참작하고 범죄자의 주관적 악성의 대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죄의 자기책임과 연루반대의 원칙

죄를 범한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죄는 죄가 있는 개인에 한정해 처벌하며 범죄인과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의 관계에 있지만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연루하지 아니한다.

5. 징벌과 교육의 상호결합원칙

형법은 범죄를 징벌할 뿐아니라 교육작용도 부담한다. 형벌은 그 적용을 통해 범죄인을 사회의 유용한 자로 개조한다. 소위

징벌이라 함은 독재적인 직능을 강력하게 사용하여 형사법률에 저촉한 각종 범죄자에 대해서 단호한 의법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칭한다. 형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판정한 형의 종류 및 기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범죄자가 형집행 기간에 대담하게 범죄활동을 계속했을 때는 그들이 행한 새로운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에 의거 엄격히 처벌한다. 소위 교육이라 함은 징벌의 전제하에 생산노동과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범죄자를 근본적으로 회개시켜 진정으로 악에서 선으로 바꾸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형법의 효력범위

대만동포가 본토에 오면 중국 형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간적 효력, 시간적 효력, 대인 효력을 포함한 중국형법의 효력범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형법의 공간적 효력

현행 형법은 공간효력에 관해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기초로 기타 원칙을 보완하는 절충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형법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모든 범죄는 법률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체현한 것이다. 소위 “영역”이라 함은 국제공인의 원칙에 의거 다음을 포괄한다.

① 영토

② 내수를 포함한 영수(내하, 내호, 내해와 국가간의 경계수 일부)와 영해(중화인민공화국이 1958년 9월 4일 선포한 영해의 폭은 12해리이다.)

③ 영공(영륙, 영수위의 공간)

공해나 그 상공을 항해하거나 비행하고 혹은 외국항구나 외국의 공항에 정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과 비행기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국제관례에 따라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으로 간주한다.

국가주권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도 범죄의 행위나 결과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에서 발생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범죄로 인정한다.

2. 형법의 시간적 효력

1979년 7월 6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판결이 미확정된 경우의 이전에 발생한 범죄활동에 대한 형법의 적용여부에 관해 즉, 형법의 소급효력문제는 형법 제9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본법을 시행하기 이전의 행위는 만약 당시의 법률, 법령, 정책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범죄는 당시의 법률, 법령, 정책을 적용한다. 만약 당시의 법률, 법령, 정책이 인정한 범죄는 본법 총칙 제8장 제8절의 규정에 따라 공소하고 당시의 법률, 법령, 정책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러나 본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범죄나 처벌이 비교적 경미한 것은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1949년 10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의 범죄행위는 이하의 방법에 따라 해결한다.

① 행위시의 법률, 법령, 정책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범죄는 형법의 여하한 규정을 불문하고 모두 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행위시의 법률, 법령, 정책이 범죄를 인정했으나 본 형법이 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안은 그 행위가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판결이 미확정된 것만 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행위시의 법률, 법령, 정책과 형법이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형법이 규정한 공소시효 내에 있으면, 당시의 법률, 법령, 정책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러나 만약 형법의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면 형법을 적용한다. 형법은 소급력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과거참작과 경벌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형법 소급문제상의 기본 원칙은 전문형사법률의 어떤 예외적 규정을 배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형법 공포이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1983년 9월 2일 《사회치안을 파괴하는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데 관한 결정》을 내려 기존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량죄, 고의상해죄, 인신유괴매매, 불법 제조·매매, 총기·탄약·폭발물 탈취죄, 봉건적인 미신을 이용·조직하는 죄, 반체제집단의 반혁명활동, 부녀를 협박하여 매춘을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죄, 부녀를 매음케 하는 죄의 법정형에 범죄방법 방조죄를 추가하였다. 이 〈결정〉의 소급력문제에 대해서 “본 결정공포후 상술 범죄안건을 심사하는 경우는 본 결정을 적용한다.”고 새로운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의 대인적 효력

형법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한 효력은 다음에 준한다.

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본국 영역내에서 범치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본국 영역외에서의 범치는 아래

예시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적용한다. 반혁명죄, 국가화폐위조죄, 횡령죄, 뇌물수수죄, 국가기밀누설죄, 국가공무원을 사칭한 사기죄, 공문서·증명서·도장 위조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본국 영역외에서 범한 상기 예 이외의 각종 범죄는 최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법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범죄지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국외 범죄는 외국의 재판을 거치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이미 형벌을 받은 경우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형법의 외국인에 대한 효력은 아래에 준한다.

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외국인 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과 사면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형사책임문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규정한 최저 3년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형법의 공소시효

소위 공소시효라 함은 형법의 규정에 의거 범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유효기간을 지칭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범죄자에게 형사 책임을 다시 추궁할 수 없다.

공소시효에 관한 기한은 범죄행위의 사회에 대한 위해수준과 상응되어야 한다. 사회에 대한 위해가 적은 경우는 비교적 가벼운 죄로 처벌하고 공소기한도 짧아야 한다. 사회에 대한 위해성이 큰 경우는 중범으로 처벌하고 공소기한도 길어야 한다. 현행 중국형법 제76조는 다음과 같이 공소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① 법정 최고형이 5년미만인 유기징역은 5년을 경과한다.

② 법정 최고형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유기징역은 10년을 경과한다.

③ 법정 최고형이 10년이상인 유기징역은 15년을 경과한다.

④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 사형인 경우는 20년을 경과한다. 만약 20년이후 공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공소시효 기한에 관한 계산방법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다.

① 죄인이 행한 범죄의 경중에 근거하여 형법이 규정한 상응하는 법정최고형을 표준으로 한다.

② 공소기한은 범죄일로부터 계산한다. 범죄행위가 연속하

거나 계속하는 상태인 경우는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③ 범죄자가 공소기한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는 새로운 죄의 성격과 형벌의 경중 여하를 불문하고 전 죄가 경과한 시효를 무효로 하고 그 공소기한은 새로운 범죄일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그러나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강제조치를 취한 이후에 수사나 재판을 회피하는 경우는 공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대만으로 간 인원의 범죄행위 재소급에 관한 문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애국일가족’ 및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정책을 관철시켜 해협양안의 ‘三通’을 추진하고 조국 평화통일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1988년 3월 14일 《대만으로 간 인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범죄행위를 재공소하지 않는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선포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전에 본토에서의 범죄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6조의 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의 정신에 근거하여 당시의 범죄행위에 대해 재공소하지 아니함을 결정했다. 본토에 온 대만동포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친척방문, 관광, 무역, 투자 등의 정당한 활동은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다음해 9월 7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해당지역 인민정권의 수립이전에 대만으로 간자의 범죄행위를 재공소하지 않는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의 선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만으로 간 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후, 범죄지의 지방인민정권 수립이전에 범한 역사적 죄행에 대해서는 재공소하지 아니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성립후 범죄지 지방인민정권 수립 이전에 대만으로 간 자가 범한 죄행이 현지 인민정권 수립후까지 연속하거나 계속되는 경우의 공소기한은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공소하지 아니한다. 그중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 사형은 20년을 경과하면 재공소하지 아니한다. 만약 공소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심사준비한다.

③ 해외의 기타 지방으로 간 인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범죄지 지방인민정권 수립 전에 범한 죄행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전 대만으로 간 자의 범죄행위를 재공소하지 않는데 관한 공고》의 정신과 본 공고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상술한 2개의 〈공고〉 범위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대만으로 간 자의 범죄행위는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범죄지 지방인민민주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대만으로 반역도피한 경우, 중국에서 형사 범죄후에 대만으로 도피한 경우, 중국 연해어민이 대만으로 밀항한 경우, 중국에서 대만특무범죄활동을 행한 경우 등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들이 중국에 돌아오는 경우, 그들의 법정형 공소기한이 경과하였으면 재공소하지 아니하며 만약 법정형 공소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공소한다.

본토에서 대만동포범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

본토에서의 대만동포 범죄는 범죄행위지나 범죄결과지가 본토경내에서 발생한 사안은 모두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과 기타 보완적인 형법의 규범에 따라 범죄인에 대한 죄와 형량을 결정한다.

1. 형법규범중의 범죄주체

범죄는 사회에 대한 위해행위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회에 대한 위해행위를 실시했다고 모두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조에서 16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법정형사책임년령에 도달하여야 하고 형사책임능력을 지녀야 하며 사회에 대한 위해행위를 한 자연인이어야만 범죄주체로 성립되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범죄주체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조건은 다음에 준한다.

첫째, 범죄주체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출생에서 시작되어 사망으로 마친다. 태아와 시체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

둘째, 범죄주체는 반드시 법정년령에 도달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① 만14세미만인 자는 형사책임을 완전히 질 수 없으므로 그들이 행한 사회에 대한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② 만14세에서 만16세미만인 자는 살인, 중상, 강탈, 방화하고 상습절도죄나 기타 심각한 사회질서 파괴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③ 이미 만16세가 된 자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

④ 만14세에서 만18세미만인 자의 범죄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시켜 준다. 이밖에 형법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시기가 만18세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사형의 즉각 집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16세에서 만18세미만인 자가 범한 죄행이 특히 심각하다면 사형을 2년 유예하여 집행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만16세미만인 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의 가장이나 감호인이 관리교육을 가하도록 명령하고 필요시에는 정부에서 교육을 수용할 수 있다.

세째, 범죄주체는 반드시 형사책임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정책임년령에 이른다는 것은 그가 필수적인 자기행위의 분별과 통제능력을 지닌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병환자는 법정책임년령에 도달해도 자기행위의 분별과 통제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는 자가 된다. 따라서 형법은 정신병자가 자신의 행위를 분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조성한 위해의 결과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문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나 감호인에게 보호관리와 치료를 명령해야 한다. 간헐성 정신병자가 정신

이 정상인 상태에서 범한 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밖에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취중인 자, 농아와 맹인은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 속하지 아니하나, 취중인 자가 술취한 상태하에서는 행위인은 결코 자신의 행위를 분별하고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만 약화된다. 그리고 술에 취하기 전에 행위자는 자신이 술에 취한 후에 사회에 대한 위해행위를 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농아나 맹인도 자신의 행위를 분별하고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그들이 생리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에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주위 사물에 대한 이해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착오도 판단해 낼 수 있으므로 형법은 농아나 맹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형법규정중의 범죄행위

중국의 현행 형법규정이 지칭하는 범죄행위는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회에 위해한 형법이 금지한 행위이다. 범죄행위의 객관적인 표현은 다양하여 형법이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9가지 유형이 있다. 반혁명죄, 공공안전위해죄, 사회주의경제질서 파괴죄, 공민인신권리·민주권리침해죄, 재산침해죄, 사회관리질서방해죄, 혼인·가정방해죄, 매직죄, 군인직책위반죄 등 각각의 범죄행위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범죄행

위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현행 형법이 규정한 몇가지 범죄행위를 소개한다.

(1) 간첩·특무죄, 이적죄. 간첩죄는 외국의 간첩조직에 참가하거나 간첩기관의 지시를 받아 적을 위해 정보를 수집, 절취, 정탐, 제공하는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에 위해한 행위를 지칭한다. 특무죄는 특무조직에 참가하거나 특무조직의 파견을 받아 정보의 절취, 정탐이나 제공에 종사하고 암살, 폭발, 반혁명선동 등의 파괴행위를 지칭하며, 간첩과 특무는 반혁명활동에 치중하는 행위이다. 이적죄는 국내외 적의 반혁명목적을 위해 정보를 절취, 정탐, 수집, 제공하거나 적에게 병기나 기타 군용물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간첩과 특무죄에 대해서는 반혁명을 목적으로 하여 간첩, 특무조직에 참가하거나 이들 조직의 파견임무를 받아들였는지를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을 이미 진행했는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본죄가 성립된다. 이적죄에 대해서는 반혁명이적을 목적으로 이적행위를 행하면 간첩, 특무조직에 참가여부와 정보, 병기군용물자를 적에게 이미 넘겼는지를 막론하고 모두 본죄에 해당한다. 형법규정에 근거하여 간첩이나 이적행위를 행하는 것은 10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내용이 경미한 것은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와 인민에 대한 위해가 특히 심각하고 내용이 특히 악랄한 것은 사형을 판결할 수 있다.

(2) 밀수죄. 밀수죄는 세관법규를 위반하여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 제한한 외국의 화물을 불법으로 국외로부터 수입하거나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한 화물을 국외로 반출하고, 세관의 감독, 검사를 도피하며, 관세도피, 외환도피, 국가대외무역관리제도를 파괴하는 등의 내용이 심각한 행위를 지칭한다. 형법의 규정에 따라 밀수죄를 범한 자에게는 세관 법규에 의거하여 밀수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외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금)에 처하며 재산을 몰수한다. 밀수로 영업을 하며 밀수액이 큰 경우나 밀수집단의 중요 인물에 대해서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국가공무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밀수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1982년 3월 8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경제를 파괴하는 범죄를 엄중히 징계하는데 관한 결정》이 통과되어, 밀수·외환도피 등 내용이 특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할 수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3) 탈세, 납세거부죄. 이는 세수법규를 위반하여 탈세, 납세거부의 내용이 심각한 행위를 지칭한다. 소위 세수법규라 함은 국가의 각종 세수 법령과 징수방법을 지칭한다. 소위 탈세라 함은 세수법규를 위반하고 사기, 기만의 방식을 이용하여 납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소위 납세거부라 함은 세법이 규정한 납세실천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탈세나 납세거부 행위중의 하나를 행하고 내용이 심각하면 본죄가 성립된다. 형

법규정에 근거하여 탈세·납세거부죄를 범한자는 세수법규에 따라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이외에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인신매매죄.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여 매매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사회생활중에 사람을 유괴 매매하는 대상의 다수는 부녀자와 아동이다. 소위 ‘유괴’라 함은 날조한 허위상황을 피유괴인이 사실로 믿게 만들어 그 지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지칭한다. 소위 ‘판매’라 함은 유괴자의 수중에서 저가로 피유괴자를 수매하고 다시 고가로 팔아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지칭한다. 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람을 유괴 매매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내용이 심각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사회치안을 위해하는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데 관한 결정》은 인신매매 집단의 중요한 자나 인신유괴의 내용이 특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법이 규정한 최고형이상으로 형을 처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형을 판결할 수 있다.

(5) 사기죄. 이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이나 진상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공사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사기는 범죄자가 불법으로 공사재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사실과 진상을 기만하고 허위상황을 날조하여 피해인으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하여 자동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이다. 사기의 방식은 구두로 하는 방식이 있고 문자의 방식도 있으며 범죄자가 직접

진행하는 방식과 제3자를 통해 행하는 방식이 있다. 사기의 방법은 예를 들면 증서위조, 신분사칭, 명의를 도용하여 어떤 물자를 대리구입하거나 어떤 상품의 판매 확대를 명목으로 금전과 재물을 갈취하는 것 등이 있다.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기죄를 범한 액수가 비교적 큰 사안은 5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나 감호에 처한다. 상습사기나 사기한 공사재물의 액수가 큰 사안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내용이 특히 심각한 사안은 10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6) 도박죄.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군중도박이나 도박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소위 군중도박이란 도박장을 제공하여 타인을 도박에 참가하도록 조장하고 유인하여 본인은 중간에서 구전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지칭하며 이러한 사람을 속칭 ‘도두’(賭頭)라 한다. 소위 ‘도박을 업으로 삼는다’ 함은 도박이 습관이 되어 도박을 영업으로 하거나 혹은 도박으로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사람을 속칭 ‘노름꾼’이라 부른다. 형법규정에 근거하여 도박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감호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7) 음란서적, 음화의 제작판매죄.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서적, 음화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소위 ‘음란서적, 음화’라 함은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음란생활과 사상을 선전하는 소설, 간행물, 가극대본, 그림책, 사진, 녹화, 녹음

등을 지칭한다. 소위 ‘제작’이라 함은 직접 편저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촬영·복사하거나 음란서적과 음화를 번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판매’라 함은 본인이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음란서적, 음화를 타인에게 전매함을 말한다. 제작이나 판매 행위중의 하나를 행하면 본죄에 해당한다.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음란서적, 음화의 제작, 판매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혹은 감호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8) 독극물의 제조, 판매, 운반죄. 이는 아편, 헤로인, 몰핀이나 기타 독극물을 제조, 판매, 운반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극물’이란 사람을 순간적이나 단시간내에 치사시킬 수 있는 비상, 시안화물 등의 독극물이 아니고 마취성을 지니고 장기적으로 흡입, 주사후에 사람을 습관에 물들게 하고 서서히 중독시키는 독극물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아편, 헤로인, 몰핀, 돌란틴, 대마, 금단, 코카인 등이다. 소위 ‘제조’라 함은 원료를 가공하여 양귀비로 아편을 제조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흡입이나 주사할 수 있는 독극물을 만드는 것을 지칭한다. 소위 ‘판매’라 함은 불법으로 독극물을 판매함을 지칭한다. 소위 ‘운반’이라 함은 교통수단이나 사람의 등, 손, 어깨 등으로 운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독극물을 운반하는 것을 지칭한다. 상술한 제조, 판매, 운수행위중의 하나를 행하면 본 죄에 해당된다. 형법규정에 근거하여 독극물의 제조, 판매, 운반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

다. 독극물을 일관적이나 대량으로 제조, 판매, 운반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경제를 심각히 파괴하는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데 관한 결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극물 판매죄의 내용이 특히 심각한 사안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상술한 죄행을 범하고 내용이 특히 심각한 사안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9) 진귀한 문물의 반출죄. 진귀한 문물의 반출죄는 문물보호법규를 위반하고 진귀한 문물을 몰래 반출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소위 ‘진귀한 문물’이라 함은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각종 중요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소위 ‘반출’이라 함은 진귀한 문물을 몰래 국경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절도·운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진귀한 문물이 팔리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것도 진귀한 문물의 반출죄로 처리한다. 형법규정에 근거하여 진귀한 문물을 반출시키는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경제를 심각히 파괴하는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데 관한 결정》은 진귀한 문물의 반출죄를 범하고 내용이 특히 심각한 사안에 대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상술한 죄행

을 범하고 내용이 특히 심각한 사안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규범중의 형벌방법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의 두 부분으로 대별한다.

(1) 주형 : 감호, 구류, 유기징역,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이 있다. 주형은 독립 적용할 수 있으며 한 가지 범죄에는 한 가지 주형만을 판결할 수 있다. 감호는 범죄자에 대해 수감을 실시하지 아니하나 일정한 자유를 제한하고 인민법원에서 판결한 후 공안기관의 통제와 군중의 감독하에 노동개조를 진행하는 일종의 형벌방법이다. 감호의 기한은 3개월이상에서 2년이하이고 누범이라도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구류는 단기적으로 범죄자의 신체자유를 박탈하여 노동개조를 진행하는 형벌방법이다. 구류의 기한은 15일이상에서 6개월이하이고 누죄도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유기징역은 일정기간 동안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여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고 감금시켜 노동개조를 진행하는 형벌방법이다. 이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형벌방법으로 형기는 6개월이상에서 15년이하이며 누죄의 경우에도 최고 형벌기간이 20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무기징역은 범죄자의 종신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노동개조를 실시하는 형벌방법이며,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방법으로 극악무도한 죄에만 적용한다. 사형을 판정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서 만약 즉각 집행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아니하면 사형판정과 동시에 그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개조를 실행하여 관찰한 후에 최종 실행한다.

(2) 부가형 : 벌금, 정치권리 박탈과 재산몰수가 있다. 부가형은 부가적용할 수도 있으며 독립적용할 수도 있다. 벌금은 인민법원이 범죄자가 국가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납부하도록 판결하는 형벌방법이다. 벌금 판결은 범죄의 내용에 근거하여 벌금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리의 박탈은 범죄자가 국가관리와 정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박탈하는 형벌방법을 지칭한다. 반혁명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권리의 박탈을 부가해야 하며,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정치권리의 박탈을 부가할 수 있다. 사형과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치권리의 종신박탈외에 정치권리의 박탈기한을 1년이상 5년이하로 한다.

재산몰수는 범죄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일부나 전부를 강제로 무보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방법이다.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범죄는 원칙상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규범을 적용한다. 그러나 대만동포의 거주지가 중국이 아니라는 실제상황을 참작하여 죄가 선고된 후에 형벌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감호와 구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대만동포가 기한을 어기고 대만으로 귀국하지 아니하고 금후에도 대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죄가 선고된후 징역의 적용을 신중

히 결정해야 한다. 사법실천에 근거하여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범죄는 만약 내용이 일반적이면 경제적 처벌을 부여하며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거나 경제적 중벌로 인신자유형을 대체한다. 만약 내용이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하면 죄를 따져 형벌을 가한다.

본토에서의 대만경찰 수배범 처리문제

위 ‘정치범’의 인도문제외에 현재 대만경찰측의 지명수배범 문제는, 입국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아는 경우 중국 그의 입국을 불허한다. 입국후에 알게되면 대책을 세워 그를 추방한다. 만약 대만측이 협조할 수 있으면 기타의 방식으로 그 인도를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경찰에 지명수배된 살인범 양명종이 죄를 범하고 본토에 잠입해 왔을 때 중국 공안기관에 의해 상해의 홍교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대만 경찰은 즉시 싱가포르경찰을 통해 중국과 협상하여 그를 대만으로 압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1989년 4월 21일 중국의 공안경찰은 범인 양을 싱가포르 압송하였다. 이후 대만 형사경찰국에서 국제 담당원이 그를 대만으로 압송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현재 도주범의 압송문제에 대해 쌍방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측의 선의의 행동은 금후 해협양안에서 공동으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모델’을 제공하였다.

XIV. 訴訟節次

중국의 법원조직 체계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중국의 법원 조직체계는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해사, 철도운수, 군사법원 등 전문 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그리고 기층인민법원으로 분류된다. 전체 법원체계는 4급 2심제이다.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국가최고 심판기관이며, 제1심과 제2심의 판결과 처분은 모두 종심의 판결과 처분이 된다. 전국적인 중대 민사와 형사 안건은 모두 최고인민법원이 제1심을 진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심판업무의 최고감독기관이며, 최고인민법원은 제2심 절차에 따라 고급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나 항소 안건을 수리하는 이외에 모든 하급인민법원의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처분에 대해 확실한 착오를 발견하면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안건을 재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며, 최고 인민검찰원이 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항소 안건을 심리하는 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고급인민법원이 서면으로 비준을 요

청한 사형안건도 사형 재심리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하는 책임을 지며 또한 유추제도에 따라 죄를 확정하여 형을 판정한 안건을 심사·비준하는 책임도 진다. 법률은 최고인민법원이 심판 중인 어떤 구체적인 법률 응용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고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은 성 고급인민법원, 자치구 고급인민법원 및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을 포함하여 전체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민사와 형사 안전에 대해 제1심을 진행하는 책임을 진다. 중급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나 항소 안전을 수리하며 인민검찰원이 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항소안전을 심리하고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집행을 2년유예하는 판결을 심사·비준하는 책임을 진다.

3. 중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은 성 자치구내의 각 지역에 따라 설립된 중급인민법원,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성할시나 자치구할시 중급인민법원과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중급인민법원은 관할하는 제1심 안전의 법률규정을 심리하는 책임을 진다. 형사안전에는 반혁명안전, 무기징역, 사형을 판결하는 보통형사안전과 외국인 범죄나 중국 공민이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안전이 있다. 민사안전에는 대외안전과 본 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안전이 있다. 중급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이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나 항소 안전을 수리하고 인민검찰원이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의 재판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안전을 수리한다.

4. 기층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은 현인민법원이나 시인민법원, 자치현 인민법원과 시할구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지구·인구 및 안전의 상황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약간의 인민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인민법정은 기층인민법원의 일부이며 이 곳의 판결과 처분은 인민법원의 판결과 처분이 된다. 기층인민법원은 상급인민법원이나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하는 법률규정 이외의 모든 민사안전과 형사안전에 대해서 제1심의 진행을 책임지며, 공개심판이 불필요한 민사분규와 경미한 형사안건을 처리하고 인민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의 민사나 형사안건을 심판할 수 있으며, 자기관할의 제1심 민사나 형사안건을 하급인민법원이 심판하도록 넘길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1급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판할 수 있다.

중국의 소송 종류

1.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국가사법기관이 당사자 및 기타 소송관계자의 참가하에 법정절차에 의거, 범죄를 폭로하고 실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고, 법에 의거하여 범죄자에게 응당한 징벌을 부여하는 활동이다.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의 절차를 비교적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사법기관이 법에 의거 직권을 행사하는 원칙
- (2) 전문기관과 군중이 상호 결합하는 원칙
- (3)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
- (4) 공민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한 원칙
- (5) 사법기관의 책임분담, 상호협력, 상호계약의 원칙
- (6) 민족언어와 문자로 소송을 진행하는 원칙
- (7) 공개심판의 원칙
- (8) 변호제원칙
- (9) 배심제원칙
- (10) 소송참여자가 법에 의거 소송의 권리를 향유할 것을 보장하는 원칙

2.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자의 참가하에 민사안건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활동 및 이 활동에서 나타나는 소송관계이다. 1982년 3월 8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시행)》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비교적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는

- (1) 인민법원이 법률규정에 따라 민사안건에 대해 독립심판하는 원칙
- (2)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로 기준을 삼는 원칙
- (3) 소송당사자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등한 원칙
- (4) 양심중심의 원칙
- (5) 공개심판의 원칙
- (6) 합의의 원칙
- (7) 회피의 원칙
- (8) 민족언어문자의 원칙
- (9) 소송당사자가 평등하게 소송권리를 행사할 것을 보장하는 원칙
- (10) 조사중시원칙
- (11) 순회심리, 현장처리의 원칙
- (12) 변론원칙
- (13) 처분원칙 등의 기본원칙이 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민이나 법인이 국가행정기관의 행정처벌이나 행정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 수리하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1989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법의 절차를 비교적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만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관할

1. 대만동포나 대만의 법인이 원고가 되는 대만관련 민사소송
대만동포나 대만의 법인이 원고가 되고 본토의 공민이 피고가 되는 대만관련 민사소송은 피고 호적소재지에서 관할하며, 피고의 호적소재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본토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피소 단위의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동일 소송의 경우에 있어 여러 피고의 호적소재지,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각 해당 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으며 원고는 그중 하나의 법원을 선택하여 기소할 수 있다.

2. 대만동포나 대만법인이 피고가 되는 대만관련 민사소송
대만동포나 대만법인이 피고가 되고 본토 공민이나 법인이 원고가 되는 대만관련 민사소송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만일 대만동포가 이미 노동교육이나 감금에 처해진 경우는 원고 호적소재지나 거주지 법원에서 관할하여야 한다.

② 침권행위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침권행위지의 법원에서 관할한다. 그러나 침권행위지가 중국영내에 있지 아니하여 현지 법률에 의해 관할할 수 없거나, 원고가 되는 중국공민이나 법인

이 사후 중국에서 기소하거나 현지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없을 때에는 쌍방이 모두 중국 법률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원고 호적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계약으로 인해 제기하는 소송은 계약이행지나 계약서명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명지 및 계약이행지가 중국영내에 있지 아니하고, 만일 현지 법률에 의해 관할할 수 없거나 원고인 중국 공민이나 법인이 사후 중국내에서 기소하거나 현지 법원에 가서 기소할 수 없을 때에는 쌍방이 모두 중국 법률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원고 호적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④ 부동산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서 관할한다.

⑤ 유산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상속인 생전의 호적소재지나 주요 유산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다. 만약 피상속인의 생전 호적소재지가 대만이거나 주요 유산이 대만에 있는 경우는 대만지방법원의 관할을 승인하고 원고측인 대륙공민은 홍콩·마카오·대만지역 변호사의 법률협조를 얻어 대만에서 기소할 수 있다.

대만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시효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은 국민의 민사권익을 침해받은 소송의 시효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상해를 당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양과 질이 불합격한 상품을 밝히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연체나 납세거부의 경우, 보관재물을 유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소송 시효기간은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알거나 당연히 아는 때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 당한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는 인민법원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그 소송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역사적인 원인으로 해협양안의 관계가 장기간 중단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는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대만동포가 중국내에서 권리를 손상당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당연히 만족스럽지 아니하며 급히 소송을 제기하면 송사가 잘못될까 걱정되고 증거와 변론의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는데 친척방문 기간이 만료되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대만동포의 중국에서의 소송권리는 소송 시효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특수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은 특수보호의 규정을 제정했고 역사적 원인에 의하여 20년을 초과한 민사안건에 대해서는 각급 인민법원이 대만동포에 대해 특수상황으로 간주하여 소송시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다.

본토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대만동포의 소송권리와 의무

1. 대만동포의 민사소송 당사자로서의 소송권리

대만동포가 중국 민사소송의 소송당사자가 되면 법에 의해 본토거주민과 동등한 소송권리를 누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진행과 인민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요구할 권리

이 소송권리는 사법보호, 위탁대리인 청구와 기피신청 등이 있다. 사법보호의 청구는 소송당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송권리이다. 모든 기소조건에 부합하는 자(원고)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송에 제기된 상대방(피고)는 인민법원에 응소(소송과정에 있어서 반대소송을 제기할 권리)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그 민사권익의 보호를 인민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소송중에 일련의 기타 소송권리를 누린다. 위탁대리인 청구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도 다른 사람의 법률상 협조를 필요로 할 때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기피신청은 소송당사자가 심판원이나 기타 인원의 변경을 요구하여 안전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게 하는 소송권리이다. 심판인원, 서기원, 통역원이나 감정인이 본 안전 당사자나

당사자의 근친속인 경우·본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본 안전 당사자와 기타 관계에 있는 경우·안전에 대한 공정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관련 심판원과 서기, 번역원이나 감정인은 스스로 기피하여야 하며 소송당사자도 구두나 서면방식으로 그들의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소송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안전의 심리를 개시할 때 제기한다. 심리개시 이후에 기피사유를 알게 되거나 그 기피가 심리개시 이후에 발생하여도 법정변론 종결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2) 자신의 실체권리를 보호하는 청구와 주장의 소송권리

이 소송권리는 증거제공, 변론진행과 법정 심리자료의 검열 등을 포함한다. 증거제공은 원고가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송청구를 증명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대증거를 제기하여 원고의 소송청구를 반박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제1심 절차, 제2심 절차와 재심절차중에 이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변론 진행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여 자신의 소송청구를 논증하고 상대방 소송청구를 반박할 수 있고, 사실상의 이유와 법률상의 이유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답변, 질의심문 등의 방식을 통하여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정심리자료의 검열은 당사자가 소송진행중에 있거나 소송종결 후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안전의 소송자료를 검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자비로 본 안전의 자료와 법률문서의 복

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국가기밀이나 개인비밀에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3) 실제 권리를 처리하는 소송권리

이 소송권리는 중재청구, 상소제기, 쌍방합의 및 반대소송 제기 등을 포함한다. 중재청구는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방식으로서 소송종결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의 중재청구는 소송단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뿐아니라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중재방식으로서 안건종결을 실현하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 상소제기는 당사자가 하급법원 재판의 변경을 상층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부여한 것으로 자신의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소송권리이다. 법률 규정상 상소할 수 없는 재판을 제외하고는 상소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상소기간내에 상소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결에 대해 제기하는 상소기한은 15일이며 처분에 대한 상소제기의 기한은 10일이다. 쌍방의 합의는 소송과정중에 원고가 소송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행사하고 피고는 소송청구를 승인할 권리를 행사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실제권리에 대한 처분행위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인민법원이 보장하여 준다.

(4) 민사권익을 실현하는 소송권리

이는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하는 소송권리를 말한다. 집행신청은 당사자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재판에 대해서 인민법원이 사

법의 강제수단으로서 집행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대만동포의 민사소송 당사자로서의 소송의무

대만동포는 중국 민사소송의 소송당사자가 되면 법에 의거 본토 주민과 동등한 소송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드시 법에 의거 소송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법률이 부여하는 소송권리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전체 소송과정에서 소송절차를 준수하고 법정의 지휘에 복종하고 상대측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의 소송권리를 존중하여 소송이 법정절차와 방식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3)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처분, 합의중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송상에서 발생한 법적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대만동포의 본토에서의 민사소송제기시 증거제시 책임문제

1. 보통민사소송의 증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본인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제공의 책임이 있다. 대만동포가 원고가 되어 본토에서 제1심 민사안건을 기소할때 제공해야 하는 일반 증명,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성명, 성별, 출생년월, 신분증명

(2) 피고성명, 성별, 연령, 업무기관·가정주소(호적소재지, 거주지와 거주기간을 포함)

(3) 쟁의의 민사법률 관계사실, 증거 및 증인의 성명, 기관, 주소, 본인과의 관계

(4)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 참여하는 소송은 법인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위탁대리인이 참여한 소송의 경우는 법정대표인의 위탁서가 있어야 한다. 위탁수권서는 위탁 대리사항과 대리권한을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 대만동포 본인이 기소하는 경우는 대만주민 신분증이나 귀향증, 선원증,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법원에 우편으로 기소하는 경우 그 기소장, 위탁서는 관련 기관의 증명이 있어야만 효력을 지닌다.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원고가 제1심 민사안건을 기소할 때는 일반적인 증명과 증거

제공 이외에 소송청구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1) 혼인가정방면

이혼분규는 혼인관계의 증명, 결혼후 감정상황, 이혼원인의 사실이나 증거, 자녀상황의 증명, 재산경제상황의 증명, 주택의 상황, 호주명, 면적, 칸수, 상주인구 등의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양육비, 부양비 분규는 부양, 양육관계의 증명, 매월 경제수입 및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비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래 처리한 중재서, 판결문이나 기타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 부동산방면

부동산분규는 주택의 소유권이나 임대차권의 증명, 주택에 대한 점유사용, 수익관리상황 및 증거, 그리고 쟁의 쌍방의 거주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3) 재산상속·분배방면

상속분규는 피상속인의 사망증명, 피상속인의 생전의 호적소재지, 거주지, 사망지와 주요 유산 소재지의 주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목록과 피상속인의 신분증거, 상속인의 신분증거, 피상속인의 유언, 양육인도합의 및 관련 증인, 유언집행인의 성명, 주소 등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재산분배분규는 재산권증명, 공유재산형성의 증거와 분배를 주장하는 재산에 대한 장기적인 사용, 관리, 수익상황 및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4) 채무방면

임대차분규는 차용증을 제시해야 한다. 차용증이 없으면 이해

관계가 없는 증인의 성명, 주소, 기관이나 채무인이 승인한 채무관계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재물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재산분류는 재산증명 및 재산이 언제, 어디에서 점유당했는가의 상황과 현재 어디에 있다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5) 손해배상방면

손해배상분류는 분류의 원인, 피고의 과오, 손해사실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요구배상액 및 그 계산근거, 손해받은 현장, 실물의 사진, 관련 부문의 감정 및 증명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경제소송의 증거제시

대만동포가 원고로서 중국에서 제1심의 경제안건을 기소할 시에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일반증명·증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업법인, 개인동업의 자격증명, 개설은행과 통장번호, 기소장의 원, 피고명칭은 영업허가증, 계약 규약과 상호부합하여야 하고 만일 불일치하거나 피고주체가 변경, 합병, 도산했다면 설명을 부가해야 하고 피고의 현재 정확한 소재지를 제시해야 한다.

(2) 법인의 법정대표인, 위탁대리인의 신분증명, 수권위탁서에는 반드시 대리사항과 대리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3) 계약서 및 계약과 관련있는 문서, 전보, 서신, 도표, 변경·보충된 합의계약서, 계약과 기타 부대조건, 계약체결지 및

그 증명자료. 이는 원본을 제공해야 하며, 사본은 반드시 확인 대조를 거쳐야 한다.

(4) 송화(送貨), 제화, 탁송, 검수, 영수증 등의 증명서

(5) 대부금, 건설대금, 운수비, 보관비, 임대비, 양도비, 노무비, 임금 등의 결산과 관련된 증명서와 재무대조표의 사본

(6) 손해배상의 요구 근거 및 관련 증명

(7) 지불위약금의 요구 근거, 계산방법 및 관련 증명

(8) 기소전에 자진 합의하거나 상급 주관부문, 중재위원회를 통해 처리한 관련 증명서

(9) 기타 소송과 관련있는 근거

이밖에 소송청구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대만동포가 본토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방법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자·법정대리인과 법인의 법정대표인은 모두 타인을 위탁하여 대리로 소송할 수 있다. 위탁대리소송을 받아들인 자는 위탁대리인이 된다. 법에 의거 소송행위 능력을 지닌 당사자의 근친(배우자, 부모, 성년의 자녀, 성년의 형제자매), 변호사, 사회단체와 당사자 소재기관의 추천인 그리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기타 공민은 모두 위탁대리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대만과 중국이 아직 통일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만일 대만동포가 변호사를 위탁하여 중국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참여하려면, 본토의 변호사를 위탁하여야만 한다. 대만동포가 본토의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대리로 본토에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관련 신분증명 및 관련 소송자료를 가지고 본토의 법률사무소에 와서 위탁 변호사의 대리소송 수속을 처리한 후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그 수속은 통상 먼저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사건의 상황을 실제같이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변호사의 심문에 답변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초빙 계약서에 서명하고, 위탁변호사의 대리소송 수권위탁서에 서명한 후 변호사비를 지불한다.

수권위탁서는 위탁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고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대리는 대리권한의 차이에 의해 일반위탁대리와 특별위탁대리의 2종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위탁대리는 대리인이 피대리인이 진행되는 소송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지만 실제권리를 처리할 권한은 없으며, 특별위탁대리는 피대리인이 진행되는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이외에 피대리인의 특별수권에 근거하여 피대리인의 소송청구를 승락, 포기나 변경을 대신하며 화해, 반대소송이나 상소의 제기를 진행한다. 대리사항과 권한은 일반적으로 위탁인이 결정하나 법률이 별도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령, 이혼안건의 당사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위탁대리인을 내세우더라도 본인은 출정해야 하며, 출정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예를 들면, 대만당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본토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혼하느냐 이혼을 안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대만동포가 위탁한 대륙변호사의 대리 소송은 반드시 수권위탁서상에 위탁권한과 범위가 일반위탁대리인가 아니면 특별위탁대리인가를 명시해야 하며 특별위탁대리인 경우 몇가지 특별수권을 명시해야지 막연하게 ‘전권대리’라고 쓰면 아니된다.

본토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대만동포의 소송권리와 의무

대만동포가 본토의 형사소송에 참여하면 본토거주민과 동등한 소송권리와 의무를 진다. 그러나 당사자,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그리고 통역인 등 다른 소송참여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사소송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체적인 소송권리와 의무는 같지 않다.

(1) 당사자는 소송인, 피고인, 부대민사소송의 원고인과 피고인을 포함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견지하며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보호법률이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예를 들면, 당사자는 합의재판부, 서기, 공소인, 감정인과 통역인에 대해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새로운 증인을 법정으로 내세우고 새로운 물증을 채택하자는 통지를 신청할 권한과 새로운 감정이나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개정 3일 이전에 법정출두의 소환장을 접수할 권한이 있다. 또 불복하는 재판에 대해 법에 의거 상소를 제기하는 권한 등이 있다. 그중 피고인도 불복하는 기소면제 결정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소송을 신청하는 권한이 있으며, 자기 변호나 위탁변호인(예를 들어 변호사)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게 할 권한이 있으며, 법정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할 권한이 있으며, 구류처분을 받은 이후 24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의 심문을 받을 권한이 있고 피구류이후 3일 이내에(특수 상황하에서는 7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아니한 결정을 접수할 권한 등이 있다.

(2) 피해자. 만약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기소면제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받은 물질적 손실의 보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3)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감호의무를 진다. 피고인의 범죄가 고소되었을 때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에 참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책임과 감호의무를 이행한다.

(4) 변호인.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무죄, 죄의 경감 및 형사책임을 면하도록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여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변호사는 본안의 자료를 열람하여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이해하여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을 면회하고 통신할 수 있다. 기타의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이해하고 압류되어 있는 피고인과 면회하고 통신할 수 있다. 변호인은 개정 3일 이전에 인민법원의 개정통지서를 접수할 권한이 있다.

(5) 증인. 증인은 공안, 검찰과 심판기관의 요구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증거, 증언을 제시할 의무가 있고 의도적으로 위증이나 죄의 증거를 은닉하면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증인의 법정출두가 필요하면 증인은 개정 3일 이전에 인민법원의 법정출두통지서를 접수할 권한이 있다.

모든 소송참여인은 사법원이 국민의 소송권리를 침해하고 인신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소송참여인은 소송권리를 행사할 때 시간에 맞추어 출정하고 법정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등 소송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附 錄

국무원의 대만동포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1988년 7월 3일 국무원 제7호령 공포)

제 1 조 중국본토와 대만지구간의 경제기술교류를 촉진하여 협양안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만의 회사·기업과 개인(이하 ‘대만투자자라’ 통칭한다)의 본토투자를 장려하는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대만투자자는 중국의 각 성·자치구·직할시·경제특구에 투자할 수 있다.

대만투자자가 해남성 및 복건·광둥·절강성 등 연해지대로 계획된 도서와 지구에서 토지의 개발·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3 조 대만투자자는 본토에서 아래의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1. 대만투자자가 모든 자본을 갖는 기업의 개설
2. 합자경영기업과 합작경영기업 개설
3. 보상무역·원료가공·조립·합작생산
4. 기업의 주식과 채권매입
5. 부동산 매입
6.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의 취득과 개발경영
7. 법률·법규가 허가하는 기타투자형식

제 4 조 대만투자자는 본토에서 공업·농업·서비스업 및 기타 사회와 경제발전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에 투자할 수 있다. 대만투자자는 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기관이 공포한 항목중 투자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스로 투자분야의 의향을 투자계획지구의 대외경제무역 부문이나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의비준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장려하여 대만투자자가 산업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특혜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제 5 조 대만투자자가 본토에서 전부 자기자본기업·합자경영기업·합작경영기업(이하 ‘대만동포투자기업’이라 통칭한다)을 개설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에도 관련대외경제법률·법규의 규정과 이에 상응하는 외상투자기업대우규정 등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대만투자자는 본토에 영업기구를 설립하지 않고도 본토의 주식배당·이자·임대료·특허권사용료와 기타소득을 얻는 기타형식의 투자를 행할 수 있다. 이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에도 관련대외경제법률·법규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6 조 대만투자자는 자유태환화폐·기계설비 또는 기타실물·공업재산권·독점기술 등을 투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대만투자자의 본토에서의 투자·자산구매·공업재산권·자본소득이윤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규정에 따라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있다.

대만투자자는 본토에서의 활동에 있어 반드시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대만투자자의 투자와 기타 자산에 대해서 국유화를 실행하지 않는다.

제 9 조 국가는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의거하여 대만동포투자기업에 대해 징세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률절차에 따라 실행하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준다.

제 10 조 대만투자자가 획득한 합법적인 이윤과 기타 합법적 수입 및 결산후의 자금은 규정에 의해 밖으로 송출할 수 있다.

제 11 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이 그 총투자액 범위내에서 본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생산용 차량과 사무설비를 수입하며 대만동포개인이 기업에서의 업무기간동안 합리적인 수량의 개인생활용품과 교통도구를 반입할 경우, 수입관세·공상통일세가 면세되며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수출생산품의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연료·부속·부품·기계원품·부착재료의 수입에는 수입관세·공상통일세가 면세되며 수입허가증없이 세관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상술한 수출품자재가 만약 본토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사용되면 반드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보충처리해야 하며 세금도 보충납부한다.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생산한 수출생산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세한다.

제12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본토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국외의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며, 본 기업의 자산과 권익을 저당·담보할 수 있다.

제13조 대만투자자가 독자기업인 경우 경영기한은 투자자 자신이 확정하며, 합자경영기업과 합작경영기업의 경영기한은 합자 또는 합작한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하며, 경영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4조 합자경영기업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의 위임과건·합작경영기업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의 구성과 이사장 또는 연합관리기구주임의 위임과건은 출자비율 또는 합작조건 등을 참조하여 합자 또는 합작한 쌍방이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15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은 비준을 거친 계약·약관에 의거해 경영관리활동을 한다. 기업의 경영관리 자주권은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본토에 투자하는 대만동포개인 및 대만동포투자기업이 국외에서 초빙하는 기술자와 관리자는 복수출입국증명서의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대만투자자는 본토에서의 투자를 본토의 친우에게 위탁하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그 대리인은 반드시 법률효력을 가지는 위탁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18조 대만동포투자기업이 집중된 지구에서 대만투자자는 현지 인민정부에 대만상인협회의 성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대만투자자가 본토에서 합자·합작경영기업에 투자하는 때에는 본토의 합자·합작측이 신청을 책임진다. 대만투자자가 모든 자본을 갖는 기업의 창설은 대만투자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본토의 친우·자문서비스기관 등에 위탁하여 신청한다. 대만투자자가 투자기업의 개설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대외경제무역부문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의비준기관에서 동일적으로 수리한다.

대만동포투자기업의 심사비준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각급 대외경제무역부문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심의비준기관은 일체의 신청서류를 받은지 45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비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등록관리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제20조 대만투자자가 본토에서의 투자에 있어 계약의 이행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관련 쟁의는 당사자가 최대한으로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협상·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협상·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달성한 서면중재협의를 본토나 홍콩의 중재기구에 제출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지 않은 경우, 또 사후에

도 서면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21조 본 규정은 대외경제무역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22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의 중국 에 오는 대만동포의 친지방문여행응대 방법에 관한 통지

(1987년 10월 6일 국무원판공청공포)

1. 중국정부는 대만동포가 본토에 친지방문과 여행을 하러오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며 왕래의 자유를 보장한다.

2. 대만동포가 본토로 친지방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증명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홍콩지구에서는 중국외교부 주 홍콩비자사무처가 처리하거나 또는 홍콩중국여행사가 대리 처리한다. 미국·일본이나 기타 국가에서는 중국주외대사관·영사관이 여행증명을 처리한다.

3. 대만동포가 본토에 오는 때에 세관은 상술한 여행증명에 근거하여 그 휴대하는 수하물품을 개인의 합리적인 사용수량범위내에서는 관대하게 통관시킨다.

4. 대만동포는 본토에서의 비행기표·기차표·승선표 구입 및 호텔투숙에 있어 본토 여행객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5. 국가외환관리국이 공인한 자유태환외환을 대만동포가 전입·휴대반입하거나 태환할 경우에는 액수의 제한이 없다. 중국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기타 은행 및 공항·호텔·상점의 태환소에서는 태환업무를 처리하며,

대만동포는 상술한 은행에 외환예금통장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외환이자를 받고, 출납의 자유가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자유롭게 송출할 수 있다.

6. 대만동포는 본토 동포와 마찬가지로 각지를 자유롭게 참관·여행할 수 있다.

7. 본토로 돌아와 친지방문·여행하는 대만동포는 중국정부의 각 항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사회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中國·臺灣間 交流關係 資料集
— 法律과 政策解說 —

發行處 統一院 交流協力局 ☎ 720-2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印刷處 진 명 인 쇄 공 사
印刷日 1994년 1월 14일
發行日 1994년 1월 21일

통협 94-1-2

